

면지

면지

연구보고서 2001-10

警察의 地域間 協力 및 아태폴 創設을 위한
基盤 造成 方案

Creation of International Police Organization
and its Cooperation in Asia and Pacific Regions

《研究陣》

연구위원 문규석(법학박사(국제법)) / 치안연구소 연구위원·외대강사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일반적 고찰	7
제1절 의의	7
제2절 법적 근거	10
I. 인터폴	10
II. 유럽폴	11
III. Schengen 경찰협력	13
IV. ASEANAPOL	15
제3절 필요성과 장애요소	16
I. 필요성	16
II. 장애요소	18
제4절 협력의 단계 및 평가	19
I. 협력의 단계	19
1. 大協力の 段階	19
2. 中間協力の 段階	20
3. 小協力の 段階	20
II. 평 가	21
1. 인터폴	21
2. 유럽폴	22
3. Schengen 경찰협력	23
4. ASEANAPOL	23

제5절	형사사법공조와의 비교	24
	I. 의미상의 차이점	24
	II. 주체상의 차이점	25
	III. 객체상의 차이점	25
	IV. 절차상의 차이점	27
	V. 소요기간상의 차이점	27
	VI. 법적근거상의 차이점	28
제3장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메카니즘에 관한 고찰	31
제1절	인터폴에 의한 전세계적 국제경찰협력	31
	I. 연 혁	31
	1. 1914년 제1회 국제형사경찰회의	31
	2. 제2회 국제형사경찰회의와 국제형사경찰위원회의 탄생	32
	3.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탄생	33
	4. 비정부간기구에서 준정부간기구로 발전	35
	II. 목적 및 협력의 원칙	36
	1. 목 적	36
	2. 협력의 원칙	38
	III. 법적 지위	39
	IV. 조직구성	41
	1. 총 회	41
	2. 집행위원회	43
	3. 사무총국	44
	4. 국가중앙사무국(NCB)	47
	5. 고 문	47
	V. 사무총국과 회원국 및 회원국간의 국제경찰협력	47
	1. 국제수배제도	47
	2. 통신제도	51

VI. 인터폴과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53
1. UN과의 관계	53
2. 기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54
제2절 지역적 협력 메카니즘	55
I. 유 럽	55
1. 유럽폴	55
(1) 연혁 및 성립배경	55
(2) 목 적	59
(3) 법적 지위	60
(4) 임 무	61
(5) 조직구성	62
(6) 유럽폴 본부 및 회원국간의 협력	65
(7) 범죄정보시스템	67
(8) EU 비회원국 및 EU기구가 아닌 국제조직체와의 협력	69
2. Schengen 경찰협력	70
(1) 연혁 및 성립배경	70
(2) 목 적	71
(3) 법적 지위	71
(4) 내 용	72
(5) 쉐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	79
(6) Schengen 경찰협력과 EU와의 관계	85
(7) 제3국 및 국제조직체와의 관계	86
3.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의 비교	87
II. 동남아시아 - ASEANAPOL	89
1. 연혁 및 성립배경	89
2. 목 적	90
3. 법적 지위	91
4. 조직 및 기타	92

제3절	국가간 협력 메카니즘	92
	I.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을 활용하는 경우	92
	II.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93
	1. 영·독 교환각서	93
	2. 프·독 협정	94
	III. 신사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95
	1. 한·중 합의서	96
	2. 한·일 협의문	97
	3. 한·러 약정서	98
제4절	비교 및 평가	100
	I. 비 교	100
	1. 인터폴, 유럽폴, Schengen 경찰협력 및 ASEANAPOL간의 협력 비교	100
	2. 국가간 협력 비교	102
	II. 평 가	104
제4장	아·태폴 창설에 대한 기반 조성 및 기본 모델	107
제1절	아·태폴 창설의 필요성	107
	I. 국제화·지구촌화에 따른 국제보통범죄 피해의 심각성	107
	II. 인터넷에 의한 국제보통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109
	III. 인터폴 개혁의 한계성	111
	IV. 유럽폴 및 Schengen 경찰협력의 지역성	111
	V. 외교채널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의 비효율성의 보완	112
제2절	아·태폴 창설에 대한 기본적 전제	113
	I. 아·태지역에서 대협력 단계의 국제경찰협력	113
	II. 국제법상 법인격 향유	114
	III.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에 대한 구속력	114
	IV. 신속성	115
	V. 협력절차의 간소화	115
	VI. 최첨단의 통신수단, 범죄정보시스템 및 수배제도	116

제3절	아·태폴 창설에 대한 유형적 모델	117
	I. 미국의 FBI 모델	117
	II.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이 결합된 모델	117
	III. 유럽폴과 인터폴의 모델	118
	IV. ASEANAPOL의 모델	118
	V. 아·태경제협력체와 비슷한 유형의 모델	119
제4절	아·태폴이 창설되기 위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	120
	I. 국제경찰협력의 범주	120
	1. 사무총국의 임무	120
	2. 회원국간의 협력 관계	120
	3. 회원국과 사무총국간의 협력 관계	121
	II. 조직구성	121
	III. 관할범죄	122
	IV. 재 정	122
	V. 회원국간 및 아·태폴 사무총국과 사무총국 소재지국간의 분쟁해결	123
	VI. 아·태폴 사무총국 및 요원에 대한 특권과 면제권	123
	VII. 소재지 문제	124
	VIII. 기 타	124
제5절	평 가	125
제5장	아·태폴 창설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및 문제점	129
제1절	과 제	129
	I. 국제적 측면	129
	1. 아·태경제협력체의 발전	129
	2. 인터폴의 개혁에 대한 연구	129
	3. 국제경찰협력 범주에 대한 국제적 합의	130
	4. 국제경찰협력의 국제적 이행	131
	II. 국내적 측면	131

1. 국제경찰협력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문제 - 관련 법률의 제·개정	131
2. 국제보통범죄 관련 전문가의 양성·채용 및 보직 순환제 예외 검토	132
3. 국제형사법 및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강좌 개설	133
제2절 문제점	134
I. 아·태폴의 지역적 범주의 문제	134
II. 아·태폴과 UN 및 타 기구와의 관계상의 문제	134
1. UN과의 관계	134
2. 국제사법재판소와의 관계	135
3. 인터폴 및 유럽폴과의 관계	135
4. ASEANAPOL과의 관계	136
III. 국제경찰협력 이행의 법적 의무화의 한계성	136
 제6장 결 론	 137
 <부 록>	 141
I. 인터폴의 국제 수배서	143
1. 적색 수배서	143
2. 청색 수배서	145
3. 녹색 수배서	147
4. 황색 수배서	149
5. 흑색 수배서	150
II. 인터폴 헌장	151
III. Schengen Implementation Convention(excerpts)	161
IV. Europol Convention	195
 ※ 參 考 文 獻	 244

표 차례

<표 1> 刑事司法共助와 國際警察協力の 比較	29
<표 2> 인터폴 사무총국 조직구성	45
<표 3> 유럽폴의 발전과정	58
<표 4>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과의 비교	89
<표 5> 인터폴, 유럽폴, Schengen 경찰협력 및 ASEANAPOL간의 장·단점 비교	102
<표 6> 국가간 경찰협력의 장·단점 비교	103
<표 7> 아·태폴 창설에 대한 유형적 모델의 비교표	119

그림 차례

<그림 1> 인터폴 통신망	52
----------------------	----

略語表

AMSS	:Automated Message Switch System
ARQ	:Automatic Request for repetition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NANPOL	:Asean Chiefs of National Police
ASF	:Automated Search Facility
EDU	:Eurpol Drugs Units
EC	:European Community
ECJ	:European Court of Justice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U	:European Union
Eurpol	:European Police Office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GNP	:Gross National Product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T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IG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NCB	:National Central Bureau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OJ	:Official Journal
SARPPCO	:Southern African Regional Police Chiefs Cooperation
SIS	:Schengen Information System
UN	:United Nations
UNDCP	:United Nations Drug Control Programme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탈냉전 이후 국가간의 관계는 그 국가의 이념에 근거한 정치적·군사적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협력에 근거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로 전환·발전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국의 神聖不可侵한 제도이고 군대와 세관에 의해서 보호되는 영토관할권의 경계인 국경은 점차 그의 의미가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국경이 개방화된 국제사회로 진입했다는 의미이고, 그 협력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긴밀한 협력체제로 인하여 사람, 상품, 서비스 및 각종 정보의 흐름을 방해할 주된 장애요소가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에 그에 대한 역기능으로 국경을 넘는 범죄의 흐름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이다. 즉 마약밀매, 총기류 밀반입, 각종 상품에 대한 밀수, 국제인신매매, 화폐·여권 위·변조, 신용카드 위·변조 및 사기, 돈세탁, 국제테러, 국제조직범죄집단의 유입, 국제사이버범죄 등이 각국의 치안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또 다국적의 불법외국인, 조직범죄집단의 조직원 등에 의한 범죄행위가 A국에서 행해지고 그 범죄행위자는 B국 또는 C국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자는 그 국가 내에서의 격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특별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국가간의 치안유지를 위한 협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더군다나 국제조직범죄집단은¹⁾ 국제적인 광역화를 추구하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수법과 범죄행위의 첨단화, 지능화, 다양화, 전문화 및 과학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탈냉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국제사회는 국가간의 이념에 의한 대결의 양상이 아니라 범죄집단과 국가라는 조직체간의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²⁾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각 국가는 범죄 및 범죄자를

1)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국제조직범죄집단으로 러시아 마피아, 남미 마약카르텔, 이탈리아·미국·러시아 마피아,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일명 419사기단), 카리브 돈 세탁관련 범죄조직, 홍콩의 삼합회, 대만 죽련방, 중국의 흑사회·흑방, 일본 야쿠자 및 군사 마약조직 등이 있다.

2) 이장희,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방안』, 치안연구소, 1997, p. 115.

그 국가 및 국제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점과 자국의 치안유지의 확립을 위해서 타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문제에 있어서 관할권은 주권이라는 이름하에 그 국가의 국경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각국의 법집행기관은 국제범죄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국가간 또는 지역국가간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해서 조약의 당사국과 긴밀한 상호협력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와는 상호주의에 의하여 협력을 하고 있어도 조약상의 의무가 없는 외교적 차원의 국가의 禮讓 내지는 협조이고, 협력의 범위와 내용면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다. 즉 主權이라는 장벽이 있어서 신속한 國際搜查共助를 통한 법집행을 행할 수가 없다. 또한 외교채널에 의한 형사사법공조는 장기간의 기일이 소요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경우에 외교경로를 통한 국제수사공조는 사법경찰관이 담당검사에게 신청하면 담당검사는 외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고,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여부를 결정한 뒤 그 요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외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며, 외무부장관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피요청국에게 공조요청을 한다.³⁾ 그러면 피요청국도 대한민국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비슷한 절차를 통하여 협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치고 도망가는(hit and run)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비록 각 국가간의 법집행기관은 그 나라의 법률제도에 따라서 다를지라도 대체로 경찰과 검찰로 나누어진다. 경찰은 주로 범죄예방과 범죄진압 및 사회봉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검찰은 범죄자를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서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찰은 일국의 법집행기관으로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활동을 하고 경찰상호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범죄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자국의 해외공관에 경찰주재관을 파견하기도 한다.⁴⁾ 또 경찰간의 협력 및 공조를 위한 국제조직체로 전세계적인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3) 형사사법공조법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참조.

4) 해외에 파견되는 경찰주재관의 임무는 ① 국제성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활동, ② 국내 치안에 관련되는 자료수집, ③ 국내 경찰 현대화를 위한 자료수집, ④ 마약, 테러 및 국제범죄 관련 자료수집, ⑤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⑥ 기타 경찰업무관련 하명사항 조사 등이다(해외주재관업무처리규칙 제6조(경찰청예규 제277호(2000. 10. 20))); 경찰주재관은 유럽폴 및 센겐경찰협력에서 나타나는 연락관(liaison)과 동일한 의미이다.

Police Organization: ICPO-INTERPOL, 이하 인터폴)가 있고 유럽지역에는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경찰협력을 위한 Europol(European Police Office: 이하 유럽폴)과 Schengen acquis에⁵⁾ 의한 경찰협력(이하 Schengen 경찰협력), 동남아시아에 ASEANAPOL(Asean Chiefs of National Police) 및 남아프리카에 SARPCCO(Southern African Regional Police Chiefs Cooperation Organization)가 있다. 반면에 검찰은 각국의 법률제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범죄수사에서부터 재판 및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 관여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도 국가간의 관계에서 볼 때 경찰과 마찬가지로 그 국가의 주권성이 강한 법집행기관이지만 주로 범죄자의 법집행을 위한 訴追에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간의 협력의 차원에서는 범죄인인도조약이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근거로 한, 즉 주로 외교채널에 의하여 협력하고 있고 검찰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정부간국제기구도 없다. 다만 범무당국간의 협력강화의 차원에서 지역국가간의 협의와 유엔의 범죄방지프로그램 등에 참석하여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보통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경찰당국간의 국제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국가간, 지역간 인적·물적 자원,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이 光速化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국제경찰협력체제를 확고히 구축하여 범죄의 超 國境化 현상을 방지하고, 국제보통범죄의⁶⁾ 예방과 진압 및 해외도피사범의 100% 검거를 추진

5) Schengen acquis는 1985년 6월 14일에 서명된 일명 셴겐협정,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1990년 6월 19일에 서명된 셴겐이행협약,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이 위의 양 조약에 대한 가입의정서 및 1990년 셴겐이행협정에 의해서 설치된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채택된 결정을 의미한다. “Portocol integration the Schengen acquis into the framework of the European Union”의 부속서 참조.

6) 모든 국제범죄자는 일정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형벌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범죄의 개념도 형벌의 집행력이 행사되는 재판소를 근거로 국내재판소의 재판을 통해서 형벌이 집행될 수 있는 범죄(국제보통범죄)와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사실상 형벌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국제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보충적 관할권을 행사하여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범죄로 이원화하여 ICC의 물적 관할에 속하는 범죄 및 ICC의 물적 관할권의 확대를 통하여 ICC의 관할권에 포함될 수 있는 기타 범죄를 국제형사범죄라고 하였다. 문규석, “국제범죄 개념의 이론적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센터·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7집(1999.12), pp. 537-586 참조;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국제보통범죄는 범죄의 실행행위

한다는 목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국제경찰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의 창설(Creation of International Police Organization in Asia and Pacific Regions: 이하 아태·폴)을 위한 기초적 이론을 제공함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국제보통범죄자에 대한 집행력 행사의 방법이 외교적 채널에 의한 기존의 형사사법공조가 소요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효용성의 한계와 인터폴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자국의 국내법적 범주의 제한성 등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경찰협력을 주도하여 선진 경찰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를 기원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국제보통범죄의 예방 및 진압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길 바란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롭게 창출된 의사소통이 가능한 假想空間(cyberspace)의 출현, 컴퓨터로 범죄행위가 가능한 인터넷 시대의 도래, 지구촌의 一日生活圈化를 촉진하는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국가간의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의 상호 의존성 심화, 지역국가간에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별 블럭화 현상, 자국에서 발행한 여권만 있으면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無國境化 현상 등은 21세기 국제사회의 모습들이다. 이러한 국제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리적 거리는 短縮되어 가고, 상호의존성은 더욱 심화되며, 국가간 국경은 사실상 경계를 확정하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역국가간에는 통합현상이 활성화되고 전세계적으로 국제기구에 의한 국가간 조직화·동질화·통합화, 국가간 협력체제의 조직화·긴밀화 현상 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순기능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제사회는 정치적으로 각국의 안전과 평화의 유지, 침략방지, 상호이해의 촉진 및 국제협력의 강화로 국제평화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로 인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관점은 국제보통범죄의 유입으로 인하여 각국의 치안환경이 위협

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과정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받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보통범죄의 진압을 위한 형사사법공조제도가 각국의 법무부와 외무부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소요기간의 장기화, 여러 기관을 경유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 국가간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이 적어도 동시에 있어야 하는데,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체결되어 있는데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와 반대인 경우에 제기되는 현실성이 없는 형사사법공조의 한계성, 양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수가 몇몇에 불과하다는 소수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장에서 국제경찰협력의 의의, 법적 근거, 필요성과 장애요소, 협력의 단계, 평가 및 형사사법공조와의 비교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국제경찰협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제3장에서 실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국제경찰협력에 대한 메카니즘에 관한 고찰은 전세계적인 측면(인터폴), 지역적인 측면(유럽폴, Schengen 경찰협력,⁷⁾ ASEANAPOL) 및 개별 국가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⁸⁾ 제4장에서는 아·태폴 창설에 대한 기반조성 및 기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아·태폴 창설의 필요성, 아·태폴 창설에 대한 기본적 전제, 유형적 모델 및 아·태폴이 창설되기 위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연구하고, 제5장에서는 아·태폴 창설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하고자 한다.

7) Schengen acquis는 단지 경찰협력만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이동(역내 국경통제의 폐지, 역외 국경통제의 강화, 외국인 입국에 대한 통일된 범규,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행·입국거절 및 망명자에 처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집행력 강화, 총기에 대한 범규의 통일, 사법공조, 통신 및 정보교환 체제 등 역내 국경통제의 폐지와 역외 국경통제의 강화에 따라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안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chengen 경찰협력에서는 경찰의 감시권, 추적권, 통신 및 정보협력 등에 한정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8) 남아프리카의 12개국으로 조직된 SARPPCO(Southern African Regional Police Chiefs Cooperation Organization)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차기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Dilip K. Das and Peter C. Kratcoski,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 World Perspective", in Daniel J. Koenig and Dilip K. Das(ed.),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 World Perspective, (Lanham·Boulder·New York·Oxford : Lexington Books, 2001), p. 9 참조.

본 연구는 국내외 각종 문헌을 기초로 행하고자 한다. 이와 병행해서 대한민국 경찰청 외사업무 담당자, 인터폴과 유럽폴에서 국제경찰협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원과 면담 및 ASEAN의 법률 담당관과의 E-Mail을 통한 정보수집 등을 통해서 실증적인 연구가 되도록 시도하였다.

제2장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의 의

독일 베를린 대학의 리스트(Franz von List) 교수는 1893년 그의 법학교과서 서문에 어느 한 국가에서 범죄행위를 한 후에 범죄발생지 국가의 법집행기관이 수사할 수 없는 타국으로 도피하고, 도피한 국가에서 자국의 영역내에서 처럼 아무런 불편이 없이 살 수 있다는 불합리성, 즉 형사사범의 정의가 침해받고 있는 현상을 이미 언급하였다.⁹⁾ 국제화의 역기능으로 나타난 현상은 이미 철도와 증기선이 도래한 19세기 중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찰이 타국의 영역 내에서 범죄인에 대한 수사, 체포 등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범죄자가 체류하고 있는 영토국의 동의가 있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타국의 영토 내에서 형사관할권의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동의는 조약상의 합의나 국가의 禮讓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는 특별선언의 방법이 이용될 때도 있다. 즉 형사관할권의 행사 목적은 피청구국이 청구국의 관리로 하여금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나 피청구국 스스로가 대신하여 필요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줌으로써 달성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범죄진압이라는 국제적인 공통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¹⁰⁾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행위,¹¹⁾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를¹²⁾ 國際刑事司法共助 또는 刑事司法共助(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의 형사사범공조는 네가지 종류, 즉 ① 협의의 형사법법공조(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② 범죄인인도

9) Fenton Bresler, *Interpol*(London : Sinclair-Stevenson, 1992), p. 11.

10) 박한철, “국제형사사범공조제도 -독일 국제형사사범공조법을 중심으로-”, 『해외과건검사연구 논문집』, 제6집(법무자료 제85집), 법무부, 1987, p. 431.

11) 백충현, “형사사건에 관한 국제사범공조”, 『현대국제법론』 (이한기 박사 화갑논문집), 박영사, 1978, p. 197.

12) 김주덕, 『국제형법』, 도서출판 육서당, 1998, p. 82.

(extradition), ③ 형사소추의 이송(transfer 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및 ④ 외국형사판결의 집행(execution of foreign sentences) 등이 있다.¹³⁾ 형사사법공조는 각국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외무부(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와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식적인 외교채널을 통한 협력체제이다.

국가간 경찰제도에 대하여 차이가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경찰의 임무는 어느 국가에서나 공통적으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내·외국인에 대한 봉사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범죄의 예방은 범죄의 발생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범죄의 발생원인이나 동기 및 기타 범죄가 발생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이 범죄에 의한 피해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범죄발생 이전에 행하는 일체의 활동이고, 범죄의 진압은 발생한 범죄사건의 수사과 범죄자의 체포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⁴⁾ 통상적으로 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은 범죄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서 관련된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체포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리고 만약 범죄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초동수사로 필요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가능한 빨리 그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그런데 우발적인 범죄자나 기타 범죄행위가 미미한 자는 별도로 하고, 마약·각종 무기·핵물질·臟器의 밀거래, 대규모의 돈 세탁, 인신매매, 신용카드 위·변조 및 사기, 화폐·여권의 위·변조와 같이 국제조직범죄집단이 관련된 조직범죄는 수 개국에 걸쳐서 발생하기 쉽고,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범죄행위가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경찰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주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의 국제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13)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 참조. 백진현·조근석,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6; 이훈규·신의기, 『범죄인인도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5; Geoff Gilbert, *Aspects of Extradition Law*(Dordrecht/Boston/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Lorna Harris and Christopher Murray,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London, Sweet Maxwell, 2000).

14) 이기현·임영철,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p. 19 참조.

國際警察協力은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국가간의 司法共助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협력으로서 警察當局이 주체가 되는 협력을 의미한다.¹⁵⁾ 이러한 국제경찰협력은 인터폴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국가 대 국가의 一對一의 관계가 아니라 인터폴의 사무총국과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구성된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 NCB)이란 기구를 통해서 협력을 행하고 있다. 즉 국제경찰협력은 국제수배제도, 통신제도, 각종 범죄정보관리 및 교환, 각국 경찰의 대외협력 창구 등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국제수사공조 등이 조직적·체계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위에서 설명한 형사사법공조의 범주, 즉 최광의 형사사법공조에 국제경찰협력을 포함시키고 있다.¹⁶⁾ 그 이유는 ①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국제경찰협력도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 ② 인터폴의 관점에서만 볼 때 국제경찰협력은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이고, 범죄인인도와는 그 의미,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범죄인 강제송환이 가능하다는 점, ③ Schengen acquis 등에서 경찰이 타국 영토의 일정 부분까지 추적할 수 있는 追跡權과 타국의 영역에서 범죄자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監視權이 인정되어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 타국의 영토까지 외연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국제경찰협력은 전세계적인 측면에서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 지역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유럽연합 회원국간에 실행되고 있는 유럽폴, 유럽연합 회원국 중 아일랜드가 제외된 14개국간에 실행되고 있는 Schengen 경찰협력, ASEAN의 회원국들 간에 행해지고 있는 ASEANAPOL에 의한 국제경찰협력, 남아프리카에서 행해지고 있는 SARPCCO에 의한 국제경찰협력, 서부아프리카 지역공동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터폴을 기초로 한 국제경찰협력, 국가간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의 경로를 활용하는 협력, 양자조약에 의한 협력 및 紳士協定(gentleman's agreement)에¹⁷⁾ 의한 협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5) 문규석, “인터폴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1999-II, 통권 제12호, 2000. 2, p. 46; Julian Schutte,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the netherlands*(Bert Swart & Andre Klip(ed.)), (Freibug: Freiburg im Breisgau, 1997), p. 145 참조.

16) 문규석,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연구(2) -인터폴을 중심으로-”, 『수사연구』, 2000. 11, p. 154.

제2절 법적 근거

I. 인터폴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의 근거는 인터폴 헌장을 비롯하여 인터폴이 제정한 여러 규정, 국제적인 문서, 국가간에 체결된 다자조약과 양자조약 및 각국의 국내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인터폴은 각국의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형사경찰당국간에 최대한 협조를 보장·증진시키고, 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설립하고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⁸⁾ 또 각국은 인터폴 및 각 회원국들과의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인터폴의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협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NCB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¹⁹⁾ 그외 인터폴이 제정한 규정들이 있다.²⁰⁾

둘째, 국제적인 문서를 찾아보면 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827호와 제955호에 의해서 설립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임시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이하 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임시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이하 ICTR)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 제39조 (iii), ②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규정) 제87조 1항 (b), ③ 2000년 12월에 채택된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제18조 13항 등이다.

셋째, 다자조약의 예는 범죄인인도조약에 관한 유럽협약 제16조 3항,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제15조 5항, 범죄자의 조건부 선고 또는 석방의 감독에 관한 유럽협약

17) 紳士協定이란 정치가나 외교관 사이에 체결되는 협정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협정을 말한다. 박희권, “국제관계에서의 신사협정”, 『고시계』, 1991. 9, p. 142.

18) 인터폴 헌장 제2조.

19) 인터폴 헌장 제31조 및 제32조.

20) 인터폴의 통신에 관한 규정, 재정에 관한 규정, 국제경찰협력과 인터폴 문서의 통제에 관한 규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제27조 3항, 교통사범의 처벌에 관한 유럽협약 제15조 3항, 국제형사판결의 유효성에 관한 유럽협약 제15조 2항, 형사소추이송에 관한 유럽협약 제13조 2항,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간의 범죄인인도협약 제22조 3항 및 기타 여러 조약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²¹⁾

넷째, 양자조약의 예는 미국과 이탈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 캐나다와 프랑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3조 1항,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b),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각국의 국내법적인 근거를 예를 들면, ①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사범공조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동조에 따르면 인터폴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인터폴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국제범죄의 동일 증명 및 자료조회,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확인 및 그 조사 등이 이에 속한다. ② 일본의 국제형사수사공조법 제17조, 스위스 국제형사사범공조법 제29조와 제44조 등이다.

II. 유럽폴

유럽폴의 법적 근거는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유럽폴협약, 암스테르담조약 및 EU이사회 결의·의정서·결의·권고·선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일명 마스트리트조약(Masstricht Treaty)인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 제6부 司法과 國內問題(Justice and Home affairs)의 협력에 관련된 규정 제K.1조 제9항과 이에 관련된 제K.3조 이다. 동 조항에서 EU는 전 회원국이 참여하여 테러리즘, 불법마약거래 및 기타 중대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협력이 유럽폴(European Police Office: Europol)에 의해서 수행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유럽폴 설치에 관한 결정,²²⁾ 유럽폴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유럽폴마약

21) 다자조약, 양자조약 등 여러 국제조약에서 인터폴이 자료전달의 경로로 언급되어 있는 자료는 다음의 web site 참조. <http://www.interpol.int/Public/icpo/LegalMaterials/conventions/default.asp> visited on 11 October 2001.

반(Europol Drugs Unit: EDU) 설치에 관한 장관 협정(Ministerial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ol Drugs Unit),²³⁾ 유럽폴마약반 설치에 관한 장관 협정을 개정한 1995년 3월의 공동조치(Joint Action)와 이를 개정한 1996년 12월의 공동조치가 있다.²⁴⁾

셋째, 유럽연합조약 제K.3조에 의해서 회원국들의 행동을 공동 조정할 목적으로 유럽 이사회에서 1995년 7월 26일 서명하고, 1998년 10월 1일에 발효된 유럽폴협약이다.²⁵⁾ 유럽폴협약은 제7부 47개 조문, 제2조(목적과 관련된 유럽폴의 관할 범죄)와 관련된 부속서 및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유럽연합조약을 개정한 암스테르담조약(Treaty of Amsterdam)에서 경찰협력에서의 공동조치, 유럽폴에 의한 협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30조를 비롯하여 제29조와 제32조, 암스테르담 조약의 부속서에서 유럽폴의 소재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한다는 의정서²⁶⁾ 및 유럽폴의 활동을 포함하여 경찰협력에 있어서의 조치는 각 회원국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상응하여 권능있는 국내당국에 의해서 사법적 심사를 받기로 하는 선언이 있다.²⁷⁾

다섯째, ① 유럽폴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선결적 판결에 관한 관할권을 유럽재판소에게 부여하는 의정서²⁸⁾ 및 유럽폴 협약 제2조와 동 부속서 개정에 관한 의정서,²⁹⁾ ② 데이터보호를 위한 공동 감독기관 설치에 관한 결정,³⁰⁾ 제3국 및 유럽연합과 관계없는 기구와의 합의서 체결에 관한 협의 권한을 유럽폴 사무총장에게 허가한 결정,³¹⁾ ③ 국제축

22) OJ C 042, 15/02/1993, p. 250.

23) 1993년 6월 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Trevi group 장관급 회담에서 서명되었다.

24) OJ L 062, 20/03/1995, pp. 1-3; OJ L 342, 13/12/1996, p. 4.

25) 정확한 협약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Convention based on Article K.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Police Office(Europol Convention).

26) Protocol on the location of the seats of the institutions and of certain bodies and department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of Europol, Sole Article (j) 참조; 동 의정서는 1993년 10월 29일에 각 회원국의 대표들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의정서이다. OJ C 323, 30/11/1993, pp. 1-5 참조.

27) Declaration on Article K.2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28) OJ C 299, 09/10/1996, pp. 2-14.

29) OJ C 358, 13/12/2000, pp. 2-7.

30) OJ L 271, 24/10/2000, pp. 1-3.

구경기와 관련하여 국제경찰협력을 위한 안내서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³²⁾ ④ 특수한 범죄사건에서 수사의 개시·수행·조정을 유럽폴이 회원국들에게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권고,³³⁾ ⑤ 유럽폴과 제3국 및 유럽연합과 관계없는 기구와의 관계에 관한 선언³⁴⁾ 등이 있다.

III. Schengen 경찰협력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 유럽연합 회원국간에 행해지고 있는 Schengen 경찰협력의 법적 근거는 1985년 6월 14일에 서명된 일명 셴겐협정(Schengen Agreement),³⁵⁾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1990년 6월 19일에 서명된 셴겐이행협약(Schengen Implementation Convention),³⁶⁾ 암스테르담조약, 유럽연합 이사회·집행위원회의 결정, 의정서 및 선언 등이 있다.

첫째,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및 프랑스는 국경에 대한 통제의 집진적 폐지와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범죄자의 자유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셴겐협정에서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규정이 있다. 동 협약 제18조에서 (a)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관한 경찰협력을 위한 약정(arrangements for police cooperation)을 체결하고, (b) 당사국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제도에 관한 협정을 적용하는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며, (c) 그 당시의 통신수단과 국제사법공조를 고려하여 경찰관의 추적권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31) OJ C 106, 13/04/2000, pp. 1-2.

32) OJ C 196, 13/07/1999, pp. 1-12.

33) OJ C 289, 12/10/2000, p. 8.

34) OJ C 106, 13/04/2000, p. 3.

35) 정확한 명칭은 다음과 같다: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of the Benelux Economic Unio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French Republic on the Gradual Abolition of Checks at Their Common Borders.

36) 정확한 명칭은 다음과 같다: Convention from 19 June 1990 Applying the Schengen Agreement of 14 June 1985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of the Benelux Economic Unio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French Republic, on the Gradual Abolition of Checks at Their Common Borders.

공동으로 범죄를 진압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는 국제 경찰협력의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경찰협력, 경찰관의 추적권, 통신수단 등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법공조의 범주로 경찰협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셴겐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체결된 셴겐이행협약의 Title III, Chapter I(제39조 - 제47조)에서 경찰협력에 관련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① 당사국의 경찰당국은 국내법을 준수하고, 그들의 책임의 범주 내에서 범죄의 예방과 탐지를 목적으로 상호 협력(제39조 1항), ② 국제경찰협력은 당사국의 대외 협력기관을 통해서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적절한 시간 내에 행해지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당국에게 직접 요청이 가능(제39조 3항), ③ 경찰관이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자에 대하여 타국 영토 내에서 동태파악에 대한 감시권과 추적권(제40·41조), ④ 타국 영토에서 감시와 추적을 행하는 경찰관이 업무중에 발생한 위반은 감시와 추적이 행해지고 있는 국가의 경찰관으로 간주(제42조), ⑤ 타국 영토에서 감시와 추적을 행하는 경찰관이 야기한 책임은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그 경찰관의 국가에게 책임이 있고, 그 손해는 그 경찰관 자신에 의해서 야기된 손해라는 조건으로, 즉 국가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손해를 국가가 보상한다는 조건으로 충분한 보상(제43조), ⑥ 국경 지역에서 적절한 시간 내에 당사국의 경찰 또는 관세당국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무선, 텔렉스 등 통신수단의 설치(제44조), ⑦ 범죄의 예방과 진압 또는 공공질서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정보의 교환(제46조), ⑧ 연락관 파견 등 경찰협력 등에 관련된 합의서의 체결(제4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셴겐이행협정은 국제화·지구촌화·정보화 시대에서 국제경찰협력의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 같다.

셋째, Schengen acquis가 유럽연합 체제로의 통합에 관련된 의정서(Protocol integrating the Schengen acquis into the framework of the European Union)이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Schengen acquis는 유럽연합조약의 제6부에 기초한 활동으로 간주하고, Schengen acquis에 따른 협력은 유럽연합의 제도적·법률적 체제 내로 편입된다.³⁷⁾ 따라서 셴겐이행협정에 의해서 설립된 집행위원회는 암스테르담조약이 발효되는

37) 동 의정서 제1조와 제2조.

날자로 유럽이사회로 대체되고, 암스테르담조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행해진 결정은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에게 암스테르담조약이 발효(1999. 5. 1)된 즉시 효력이 있다.³⁸⁾

넷째, 2000년 5월 29일 영국이 Schengen acquis의 일정 부분의 적용 및 2000년 12월 1일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이 Schengen acquis의 적용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이 있다.³⁹⁾

다섯째, 범죄예방과 탐지에 있어서 국경통과 및 범죄자의 예방과 탐지에 있어서 경찰협력의 개선,⁴⁰⁾ 통신,⁴¹⁾ 연락관⁴²⁾ 및 기타 등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있다.

여섯째, 쉐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의 구조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선언이 있다.⁴³⁾

IV. ASEANAPOL

1981년에 탄생된 ASEANAPOL은 인터폴, 유럽폴과 같이 사무총국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세안 회원국의 경찰 총수간에 매년 국제경찰협력을 위하여 회의·협약하는 회의체 또는 협의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있으므로 그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⁴⁴⁾ 다만 ASEAN이 발표한 선언과 성명서에서 ASEANAPOL에 관련된 규정은 찾아 볼 수 있다.

38) 동 의정서 제2조.

39) OJ L 131, 01/06/2000, pp. 43-47; OJ L 309, 09/12/2000, pp. 24-28.

40) OJ L 239, 22/09/2000, p. 407; OJ L 239, 22/09/2000, pp. 421-423.

41) OJ L 239, 22/09/2000, pp. 409-410.

42) OJ L 239, 22/09/2000, pp. 411-416.

43) OJ L 239, 22/09/2000, p. 459.

44) ASEANAPOL에 관한 자료가 캠브리지 대학의 여러 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Website 등에 없어서 ASEAN 사무국의 법률담당자,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ASEAN 회원국의 NCB 등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2001년 5월 23-25일에 개최된 제21회 ASEANAPOL 회의에 관한 언론보도자료를 라오스 NCB로부터 제공받은 외에 ASEANAPOL에 관한 자료는 신문보도와 Asean 사무국의 website(<http://www.asean.or.id>)에서 찾은 자료가 사실상 전부이다. 따라서 ASEANAPOL의 법적 근거, 조직구성, 활동 및 기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첫째, 1997년 12월 20일에 서명한 국제보통범죄에 관한 아세안선언(Asean Declaration on Transnational Crime) 제2항에서 아세안의 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적어도 매 2년마다 한번은 아세안장관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이들 기관의 예로 ASEANPOL을 언급하고 있고, 제6항에서 국제보통범죄를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수도에 연락관을 임명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규정이 있다.

둘째, 1998년 7월 25일 마약추방을 위한 아세안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for A Drug-free Asean)의 서문에서 제 기관간의 제도적 협력체제의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마약남용과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협력 메카니즘으로 ASEANAPOL를 예로 들고 있다.

세째, 1999년 6월 23일 국제보통범죄에 관한 제2차 아세안장관급 회담의 공동성명서(Joint Communiqué of the Second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의 제13항에서 실무자그룹으로 ASEANAPOL과 1996년에 구축된 범죄정보 및 형사법에 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언급되어 있다.

제3절 필요성과 장애요소

I. 필요성

국가의 영역이라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의 일부인 범죄수사는 그 국가의 법적인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수행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의 국제사회에서 일국에서의 범죄행위는 그 국가만의 관심사는 아니며 많은 국가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범죄인이 법익침해지의 형사관할을 피하기 위하여 쉽게 국외로 도피하거나 또는 법익침해지 외의 국가에서 체류함으로써 일국의 형사관할권을 피한다는 것은 형사사법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어느 국가의 법익을 침해한 자가 법익침해지 외의 국가에서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체류국에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각국은 사법정의를 위해서 국제형사사법공조 또는 국제경찰협력을 통하여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국의 경찰은 어느 국가에서나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경찰협력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범죄란 특정사회의 질서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人道主義에 대한 無法行爲이기 때문에 전인류는 범죄진압에 대한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⁴⁵⁾ 그런데 영토주의의 장벽에 부딪쳐 자국영역을 이탈한 범죄인에게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면 국제보통범죄행위는 고무될 것이므로 이 점을 방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양자 또는 다자조약의 체결에 의한 형사사법공조는 공식적인 외교채널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호주의에 의해서 협력할 수 있으나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 그 자체를 부정하는 국가도 있다. 즉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호주의에 의한 형사사법공조를 거부한 국가로의 도피는 범죄행위를 고무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토양(?)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진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국제경찰협력은 컴퓨터망, 경찰의 해외연락관, 전화, 무전, 텔렉스 등을 통하여 실무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는 협력의 절차 및 소요기간의 측면에서 볼 때 국제경찰협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장점이 있다. 이러한 예는 인터폴·유럽폴에 의한 통신체제와 유럽폴의 연락관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각국의 사법부와 외무부가 관장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조약의 체결 유무에 의해서 사실상 결정된다. 이에 반하여 국제경찰협력은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의 단점(조약체결국가의 소수성, 소요기간의 장기화, 번거로운 절차)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폴·유럽폴 및 Schengen 경찰협력과 같은 국제경찰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국제경찰협력은 범죄의 진압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경찰·범죄정보, 혐의의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의 강제송환, 타국 영토에서 범죄자에 대한 추적권과 감시권 등도 국제경찰협력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45) 백충현, 전계논문, p. 195.

II. 장애요소

국제경찰협력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몇 가지 장애요소가 있다.

첫째, 국내법상의 문제가 있다. 현재(2001. 11)의 우리 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기관간,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연방과 지방정부로 경찰제도가 이원화 또는 다원화된 국가에서는 경찰조직간 및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간의 권한배분과 역할분담에 따라서 효율적인 협력이 저해되는 각 조직간의 부조화나 갈등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 즉 국내법상 실무적인 측면에서 경찰기관간, 경찰조직간 및 범집행기관(경찰과 검찰)간의 부조화나 갈등 등이 신속한 협력에 대한 장애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⁴⁶⁾

둘째, 국가간의 문제가 있다. 국제적인 범죄활동에 대한 범죄인 수사에 있어서 타국의 형사관할권 존중의 문제, 즉 타국에 도망간 범죄인을 범죄행위지 국가의 경찰관들이 그들의 국내법에 따라서 마음대로 수사하거나 체포할 수 없는 장애에 부딪친다. 다시 말해서, 경찰이 국제적인 범죄활동에 대한 수사 또는 체포를 함에 있어서 타국의 주권존중의 문제로 타국의 영역에 막 진입한 도피사범 조차도 체포할 수 없거나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이다.⁴⁷⁾

셋째, 효율적인 국제경찰협력을 위해서 言語상의 問題가 있다.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공용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영어가 좀더 국제사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UN헌장은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영어 및 스페인어의 본문을 다같이 正本으로 규정하고 있다.⁴⁸⁾ 인터폴은 불어, 영어, 스페인어, 유럽폴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모든 공용어로 보고서와 문서 및 업무상 언어로 발행·사용하고, 번역은 유럽연합의 번역센터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규정하면서 언어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⁴⁹⁾ 마찬가지로 실무적인

46) Francis R. Monaco, "Europol: The culmination of the European Union's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Efforts", *Fordham International Journal*, Vol. 19, No. 1, October 1995, p. 253 참조.

47)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1962년 6월 27일에 서명되고, 1967년 12월 11일에 발효된 베네룩스 3국간의 형사문제에 있어서 범죄인인도와 사범공조에 관한 조약 제27조에서 경찰의 추적권을 도입하고 있다.

48) UN헌장 111조.

국제경찰협력을 행하는데 있어서 항상 통역가나 번역가 등의 해당 외국어 전문가가 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도 경찰통역센터를 19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⁵⁰⁾

제4절 협력의 단계 및 평가

I. 협력의 단계

국제경찰협력은 大協力の 段階(Macro Level), 中間協力の 段階(Meso Level) 및 小協力の 段階(Micro Level)가 있다.⁵¹⁾

1. 大協力の 段階

대협력의 단계는 어느 국가의 헌법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국제조약과 국내법과의 조화가 주로 관련된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는 정부의 고위관료가 토론하고 기초적인 이슈를 결의하는 단계로서 주로 장기적이고, 중요한 결정이 행해진다. 이 협력의 논점에는 비자협정, 망명정책, 범죄인인도절차 등이 포함된다. 즉 입국의 권리에 관한 기초적인 문제점과 출국에 관한 규칙, 체포, 감금 및 심문 등에 대해서 경찰권에 관한 법

49) 인터폴 헌장 제43조 및 유럽폴협약 제33조.

50) 경찰청, 『경찰백서』, 1999, p. 198.

51) 국제경찰협력의 단계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 참조. John Benyon, Lynne Turnbull, Andrew Wills, & Rachel Woodward, "Understanding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setting a framework for analysis", in Malcolm Anderson & Monica den Boer(ed.), *Policing Across National Boundaries*(London & New York : Pinter Publishers, 1994), pp. 49-55; John Benyon, Lynne Turnbull, Andrew Wills, Rachel Woodward, & Anrian Beck,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An Investigation*(Leicester : University of Leicester Centre for the Study of Public order, 1995), pp. 11-13; John Benyon, "The Politics of Police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Vol. 24, No. 4, 1996. 12, pp. 357-358; Michael Santiago, *Europol and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Criminology Studies, Vol. 11(Lewiston · Queenston · Lampeter : The Edwin Mellen Press, 200), pp. 7-8.

적 문제 등이다. 국제경찰협력에 있어서 국가간 균형적인 조화에 관한 진전은 오로지 최고의 단계에서 발생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조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정치적인 협정이나 합의가 일치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대협력의 정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개인간의 토대하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헌법적이고 법률적인 체계가 요구된다. 유럽폴협약과 Schengen acquis와 같이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과 그 조약에 따른 국내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단계를 의미한다.

2. 中間協力の 段階

중간협력의 단계는 경찰의 작전구조(operational structure), 관행, 절차 및 각국의 경찰당국간에 주로 관련된다. 이것은 날마다 경찰업무에서 발생하는 공식적인 체계이다. 즉 특수한 범죄수사 중에 공통적이고 전문적인 관심이 있는 다른 국가간의 중간급 관료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 단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 단계의 협력에서 중요한 관심은 각국의 경찰당국간의 통신이다. 중간협력을 위한 걸림돌은 경찰정보체계, 공동데이터베이스 및 이러한 범죄정보에 대한 공동조정과 접근이다.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급속한 발전과 경찰의 컴퓨터 이용은 이 분야를 더욱더 중요하게 만든다. 컴퓨터 체제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도 직접적인 관심대상이므로 호환성이 있는 통신체제의 사용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간에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기술적인 언어나 용어 등에 있어서 문제점은 여전히 있다.

3. 小協力の 段階

소협력의 단계는 특수한 범죄의 수사, 특별한 형태의 범죄의 방지와 통제에 관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공질서위반은 국가간 및 지역간에 매우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이한 문화나 전통은 다른 형태의 경찰작용을 필요로 하는 여러 유형의 형태를 차별화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단계의 협력은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1990년 이탈리아에서 월드컵 경기 동안에 다른 국가의 경찰이 이탈리아 경찰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했던 경우이다. 테러, 마약, 축구경기장의 폭력, 환경범죄 등의

분야에서 상대국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국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연락관은 이 단계의 국제경찰협력의 좋은 예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통신망은 중간협력의 단계에서 설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단계의 협력은 효과적인 중간단계의 협력에 의존한다.

II. 평 가

유럽에서의 국제경찰협력은 자본, 상품, 서비스, 정보 및 사람의 자유이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역내 국경폐지와 역외 국경통제에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고위 당국자간의 협의에 의한 결정과 이를 기초로 체결된 조약에 근거한 국제경찰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되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제경찰협력은 국가간의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협력으로서 大協力, 中間協力 및 小協力の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소단계의 협력으로서 마약, 테러, 축구경기장의 폭력, 환경범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국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연락관을 통해서 협력을 행할 수 있고, 중간단계의 협력에서 형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간급 간부간의 직접적인 접촉과 함께 호환성이 있는 통신수단에 의해서 신속한 협력을 행한다. 그리고 대협력의 단계는 소단계의 협력과 중간단계의 협력에서 야기되는 경찰제도, 비자, 범죄인인도절차 등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간 또는 고위당국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여 법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1. 인터폴

인터폴은 오랜 역사를 지닌 국제적 실체로서 국제경찰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사건에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비롯한 각종 국제경찰협력을 위하여 중간협력의 단계의 특징인 통신망을 전세계적으로 구축해 놓고 있다.⁵²⁾ 또 국제마약거래와 같은 국제보

52) 인터폴은 인터폴 사무총국이 소재하고 있는 프랑스 Lyons에 중앙무선국, 전 세계에 걸쳐 6개의 지역무선국(Puerto Rico, Buenos Aires, Abidjan, Nairobi, Tokyo 및 Canberra) 및 각 회원국의 NCB에 설치된 무선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하여 각국의 전문가들이 인터폴 총회, 아시아와 유럽 등의 지역회의를 통하여 범죄경향의 토론과 분석을 증진함으로써 소단계와 중간단계의 협력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대단계의 협력으로는 볼 수 없다.⁵³⁾ 그 이유는 인터폴의 국제법상 지위가 정부간기구인지 비정부간기구인지 애매하다는 점,⁵⁴⁾ 인터폴 현장도 국제조약적 성질이 있지만 국제조약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점,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이 국내법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이라는 점, 상호주의에 의한 협력이므로 그의 구속력에 의문이 있다는 점 및 회원국이 인터폴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테러집단 등에게 누출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인터폴 현장 및 일반규정(General Regulations)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2. 유럽폴

유럽폴이 유럽폴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것은 1999년 7월 1일이다. 인터폴처럼 그렇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 아니하나 인터폴과는 달리 국제법상 법인격을 지닌 국제기구로서⁵⁵⁾ 대협력의 단계의 경찰협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유럽폴은 유럽연합조약 제6부 司法과 國內問題의 협력에 관련된 규정 제 K.1조 제9항에서 경찰협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 조항을 근거로 유럽폴협약이 제정되어 국제조약과 국내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유럽폴에 관련된 중요 사항은 유럽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유럽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점, 네덜란드 헤이그에 상설 사무국이 있다는 점, 각 회원국에 유럽폴과 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National Unit)이 있다는 점,⁵⁶⁾ 유럽폴과 각 회원국의 National Unit간의 연락은 각 회원국에서 파견되어 유럽폴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락관을 통해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연락관을 통해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컴퓨터망, 전화,

53) John Benyon, *op. cit.*, p. 359.

54) 문규석, *supra note* 15, pp. 43-65 참조.

55) 유럽폴협약 제26조.

56) 유럽폴협약 제4조 참조.

Fax 및 기타 편리한 통신수단이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3. Schengen 경찰협력

1985년 6월 14일과 1990년 6월 19일에 각각 서명된 쉐겐협정과 쉐겐이행협약 등을 비롯한 Schengen acquis를 근거로 보면 Schengen 경찰협력은 대협력의 단계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범죄인을 추적하는 경찰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 사전에 상대국의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때에 의심이 가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어 감시를 계속할 수 있고, 체약국의 일정한 영역까지는 그 범죄인을 추적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고유한 형사관할권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타국 경찰에게 이양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서 범죄인을 추적 및 감시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에 관련된 조약의 체결이 전제가 된다는 점, 국경지역에서 적절한 시간 내에 당사국의 경찰당국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무전, 텔렉스 등 통신수단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관할당국에게 경찰협력의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 쉐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이라는 최첨단의 정보망을 통해서 경찰정보협력이 제도화되었다는 점 등이다.

4. ASEANAPOL

ASEANAPOL은 인터폴·유럽폴과 같이 사무국 및 유럽폴과 같은 설립 조약도 없이 동남아시아 10개국 경찰총수간의 회의체 또는 협의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실체이다. 다만 1996년 5월 27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범죄정보 및 형사법에 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ASEANAPOL은 전반적으로 고찰할 때 어느 단계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ASEANAPOL에 관련된 법적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점, 설립 조약 및 상설 사무국이 없다는 점, 각 회원국의 경찰총수간에 연례적으로 회의를 하지만 논의의 내용은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만 각 회원국간의 연락할 수 있는 대외창구가 인터폴의 NCB를 통해서 연락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경찰총수간의

회의를 통하여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협력의 단계이지만 각 회원국의 헌법적·법률적 조화를 도모하는 설립헌장이 없다는 점, 인터폴의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교환을 행하고 있다는 점, 상설적인 사무국이 없다는 점 등에서 보면 중간협력 단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제5절 형사사법공조와의 비교

각국은 자국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범죄인을 각 국가 영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그 범죄자를 규제하기 위한 국가간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의 형사사법공조는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형사소추의 이송 및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등의 네 종류가 있다. 반면에 국제경찰협력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국가간의 형사사법공조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협력으로서 경찰당국이 주체가 되는 협력의 의미로 각종 정보교환, 국제수사공조, 각종 자료조회, 범죄인 강제송환,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외국영토의 일정한 부분까지 범죄인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권 및 타국 영토내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범죄자의 동태파악을 위한 감시권 등이 있다. 따라서 외교경로를 통한 형사사법공조와 국제경찰협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I. 의미상의 차이점

형사사법공조는 앞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형사소추의 이송 및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등이 있다. 여기에서 광의의 형사사법공조는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를 의미하고, 최광의 형사사법공조는 광의의 형사사법공조(협의의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에다 형사소추의 이송 및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이 포함한다. 국제경찰협력도 형사사법공조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활동이므로 형사사법공조의 범주, 즉 최광의 형사사법공조의 의미속에 국제경찰협력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⁵⁷⁾ 이러한 국제경찰협력은 인터폴, 유럽폴, Schengen 경찰협력 등을

57) “경찰에 의한 수색 및 동일인 소재확인 등은 고유한 의미의 사법공조는 아니나 수사의 始發

근거로 볼 때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협력으로서 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범죄자의 동일인 증명 및 자료조회, 범죄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그 조사,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강제 송환, 추적권, 감시권 등이 포함된다.

II. 주체상의 차이점

형사사범공조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명칭에 차이가 있다할지라도 대부분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문제를 담당하는 외무부는 자료의 전달 및 형사사범공조의 대외적인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경찰협력은 각국의 경찰당국이 주체가 되어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터폴 헌장, 유럽폴협약, Schengen acquis 및 각국의 국내법에서 정한 경찰당국의 대외 채널의 역할을 한 기관이 수행한다. 예를 들면, 인터폴의 NCB, 유럽폴의 National Unit, Schengen 경찰협력의 Central Body 등이다.

III. 객체상의 차이점

형사사범공조의 객체는 각국의 국내재판소의 일정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국제보통범죄이다. 그 이유는 첫째, 협의의 형사사범공조를 의미하는 형사사범공조조약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일체의 범죄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의미하고 형사사건은 조세, 관세, 외환규제 또는 기타 재정문제 관련 범죄와 관계된 수사 또는 재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보통범죄라는 점이다.⁵⁸⁾ 둘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인도범죄는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서 미수범, 음모범 또는 공범 등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국제보통범죄

이 되고 형사소송절차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사범공조의 범주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백충현, 전계논문, p. 203; 이 견해는 국제경찰협력이 외교채널을 통한 사범공조는 아니어도, 즉 고유한 의미의 사범공조는 아니어도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범공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사범공조의 일 분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58)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형사사범공조조약 제1조 3·4항.

라는 점이다.⁵⁹⁾ 셋째, 형사소추의 이송은 범죄인인도가 거부되었을 때 소추를 보장하기 위한 보충적인 제도라는 점에서⁶⁰⁾ 어느 국가의 국내재판소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국제보통범죄라는 점이다. 넷째, 외국형사판결의 집행도 타국의 국내재판소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의 인수 또는 집행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국제보통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형사범죄자는 기존의 협의의 형사사범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한 형사사범공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형사범죄는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침략죄, 기타 등으로 범죄행위의 특성, 양태, 주체, 보호법익, 피해자의 숫자 및 처벌법규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제경찰협력의 객체는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범공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국제보통범죄이다. 즉 인터폴은 정치적·군사적·종교적·인종적 성격의 범죄가 제외된 국제보통범죄가 원칙이고, 유럽폴도 돈세탁, 마약·핵물질 불법거래, 인신매매, 자동차불법거래, 불법이민, 테러, 조직범죄 및 기타 주요 형사범죄 등이다.⁶¹⁾ Schengen 경찰협력도 역내 국경통제의 폐지에 따른 범죄자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시권과 추적권의 구체적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보통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터폴은 예외적으로 ICTY, ICTR의 증거와 절차규칙 및 ICC규정에 의하여 이들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국제형사범죄도 외교채널에 의한 형사사범공조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인터폴은 2000년 5월 16일까지 ICTY와 ICTR의 요청에 의해서 각각 총 73건과 10건의 적색수배서를 발행하여 각 회원국에게 전달하였다.⁶²⁾

59)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2조, 1989년 영국의 범죄인인도법 제2조.

60) 이병기·신의기, 『유럽의 형사사범공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p. 140.

61) 유럽폴협약 제2조와 동 부속서 및 유럽폴협약 제2조와 동 부속서 개정에 관한 의정서 참조;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모든 회원국에서 기소할 책임이 있고, 적어도 두 국가가 관련되어야 한다. Monica Den Boer, "Police Cooperation in the TEU: Tiger in A Trojan Horse?", *Common Market Law Review*, Vol. 32, 1995, p. 557.

62) 이 통계는 필자가 2001년 5월 16일에 프랑스 리옹(Lyons)에 있는 인터폴 사무총국을 직접 방문하여 수배서 담당자로부터 얻은 자료이다; Lyal S. Sunga, *The Emerging system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Developments in Codification and Implementation*—(The Hague/London/Boston :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p. 303 참조.

IV. 절차상의 차이점

형사사법공조는 타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위해서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를 의미하는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해서 그 조약에서 정한 절차로서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하고 있다.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相互主義에 의하여 협력한다.⁶³⁾ 이 상호주의에 의한 형사사법공조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국제경찰협력은 외교적인 공식통로가 아니라 각국의 경찰당국에 의해서 설립된 대외협력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하여 협력하고 있으므로 경찰당국과 경찰당국간의 직접적인 협력,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의 대외협력기관 대 관할 경찰당국간의 협력⁶⁴⁾ 및 경찰당국 대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기구가 개입된 형태의 협력이다.

V. 소요기간상의 차이점

형사사법공조는 수사기관(경찰·검찰), 법무부, 외무부 등 일정한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공조를 저해하고 있다. 즉 海外逃避犯이나 기타 국제보통범죄에 관련된 자의 자료 및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거나 요청받기 위해서 작게는(약식절차인 경우) 2-3개월에서 2-3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해외도피범 등 국제보통범죄에 관련된 자가 타국으로 도망간 경우 이를 체포하거나 송환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기록을 통해서 도피국가를 파악하고 법무부가 외무부를 통해서 해당국가에게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면, 다시 그 국가는 그 국가의 사법절차를 밟아서 범죄인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⁶⁵⁾

63)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4조 및 범죄인인도법 제4조 참조.

64) 예외적으로 적절한 시간 내에 대외협력기관을 통해서 국제경찰협력을 요청받을 수 없는 경우, 즉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당국에게 직접 요청이 가능하고, 관할경찰당국도 직접 대외협력기관에게 그 요청된 협력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국제경찰협력을 요청한 대외협력기관은 협력을 요청받은 대외협력기관에게 가능한 빨리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센젠이행협약 제39조 3항.

반면에 국제경찰협력은 인터폴의 경우에 각국의 NCB, 전세계에 걸친 6개의 지역무선국 및 인터폴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무선국을 통해서 근대적인 텔렉스, 팩시밀리, ARQ(Automatic Request for repetition) 및 ASF(Automatic Search Facility)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도 상설 사무국에 각각 범죄정보 시스템,⁶⁵⁾ Schengen Information System⁶⁷⁾ 및 각국에 지정된 National Unit과 Central Body를 통해서 각종 정보 및 자료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외교적인 통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동성이 있다.

VI. 법적근거상의 차이점

형사사법공조는 주로 양자조약이나 또는 지역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된 다자조약을 통해서 협력을 행하고 있고, 조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구속력이 있다. 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각국의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犯罪人引渡法에 규정된 상호주의를 근거로 협력을 행하고 있다.⁶⁸⁾

반면에 국제경찰협력은 첫째, 인터폴의 경우 인터폴 헌장, 일반규정 및 기타 규정, UN안보리의 결의, 다자조약 및 양자조약, 국내법 등을 근거로 협력을 하고 있다. 둘째,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도 유럽연합조약, 암스테르담조약, 유럽폴협약, Schengen acquis, 유럽이사회의 결정, 의정서, 결의, 권고, 선언 등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양자조약, 다자조약 및 국내법을 근거로 협력을 행하고 있고, 국제경찰협력은 인터폴 헌장, 범죄인인도에 관한 양자 및 다자조약, 유럽폴협약·Schengen acquis와 같은 국제조약, 국제재판소규정 및 국내법 규정 등을 근거로 협력을 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을 표로 그리면 <표 1>과 같다.

65) 이장희, 전제서, p. 49.

66) 유럽폴협약 제6조-제12조 참조.

67) 셴겐이행협약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참조.

68) 대한민국 국제형사공조법 제4조 및 범죄인인도법 제4조.

<표 1> 刑事司法共助와 國際警察協力の 比較

종류 사항	형사사법공조	국제경찰협력
의미	최광의의 의미	최광의 형사사법공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각종 정보교환,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범죄인 강제송환, 감시·추적권)
주체	국가(법무부 및 외무부)	국가(경찰당국), 인터폴, 유럽 폴, National Unit, Central Body 등
객체	국제보통범죄	국제보통범죄(인터폴은 정치적·군사적·종교적·인종적 성격의 범죄 제외하고 있으나 국제테러는 포함됨), 유럽폴과 셴겐경찰협력체제도 국제보통범죄임. 다만 인터폴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국제형사범죄도 포함됨
절차	외교적인 경로(법무부·외무부)	인터폴·유럽폴 사무국과 회원국의 NCBs·National Unit, Central Body,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당국
소요기간	장기간	컴퓨터망, 전화, 무전, Fax 등을 통한 신속성
법적근거	양자조약 또는 다자조약 및 국내법	인터폴 헌장, 국제재판소규정, 양자·다자조약, 국내법, 유럽폴협약, Schengen acquis, 유럽이사회의 결정 등

* 필자가 연구·분석하여 작성함

제3장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메카니즘에 관한 고찰

제1절 인터폴에 의한 전세계적 국제경찰협력

I. 연 혁

1. 1914년 제1회 국제형사경찰회의

1893년 Francis Galton이 지문에 관하여 그의 견해를 발표하던 해에⁶⁹⁾ 독일의 베를린 대학의 범죄학자인 Franz von Liszt는 그의 법률교과서의 서문에 사법정의를 침해 받고 있는 현상으로서 해외도피사범을 언급했다. 물론 이론상 범죄인인도도 가능했지만 범죄인인도는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리고 많은 외교문서들이 관련되었으므로 번거로운 과정이 늘 가로막았다. 또 당시에 주권절대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국제경찰협력이란 것을 생각해 볼 여지도 없었다.

인터폴의 기원은 1901년 영국 경시청의 총감 E. 헨리가 지문의 국제화를 각국에 호소하고 1905-1910년 부녀인신매매 및 외설출판물의 유포를 금지하는 파리협정이 체결된 이후 1905년부터 1913년 사이에 마드리드, 상파울로, 워싱턴 등에서 국제경찰회의가 개최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⁷⁰⁾ 끝이어 1914년 모나코 왕자 Albert I가 주최한 제1회 국제형사경찰회의(First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를 소집했다. 왜 그가 이런 국제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없으나 프랑스 작가 François Beauval에 따르면 설득력이 있는 사건이 있다.⁷¹⁾ 여하튼 Albert 왕자의 초청

69) Tom Tullett, *Inside Interpol*(New York : Walker and Company, 1965), p. 23 참조.

70) 최성호, “절실한 한국인터폴의 기능강화”, 『수사연구』, 1990. 1, p. 70; 무정부주의자들의 폭탄에 의한 폭력행위에 대비해서 국제적인 행동을 공동 조정하기 위하여 1898년 로마에서 개최된 비밀회의가 인터폴 최초의 회의라는 주장이 있어왔으나 이 회의는 1976년에 설립된 Trevi Group에 의해서 공동 조정된 반 테러조치와 훨씬 흡사하다. Malcolm Anderson, *Poling the world: Interpol and Politic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Oxford : Clarendon Press, 1989), p. 38.

으로 1914년 4월 14-20일까지 유럽과 아메리카 등 24개국으로 구성된 대표 188명이 참가한 회의는 프랑스 파리대학 법과대 학장인 Monsieur Linaurde의 주재로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국제경찰협력의 토대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즉 국제보통범죄의 진압을 위해서 모든 국가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범죄인 인도절차의 필요성과 표준화, 기록사무소(상설 사무국), 임시체포절차, 신속한 정보교환의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아울러 범죄의 진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각국 경찰당국간의 직접적인 연락체제는 좀더 표준화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⁷²⁾ 1916년 8월 루마니아의 수도 Bucharest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Franz Ferdinand 夫妻가 세르비아인에게 피살당한 후 동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제2회 국제형사경찰회의는 무산되게 되었다.

2. 제2회 국제형사경찰회의와 국제형사경찰위원회의 탄생

1920년 프랑스의 H. Donnedieu de Varbes 교수는 국제적 성격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하여 유럽회의를 개최하자고 호소했었다.⁷³⁾ 이 호소에 당시 비엔나 경시청장이었고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수상을 역임한 Dr. Johann Schober가⁷⁴⁾ 제2회 국제형사경찰회의를 개최하고자 각국의 대표를 초대했다. 당시의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쟁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고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간의 왕래도 빈번해지면서 국제보통범죄가 유럽대륙에서 다시 활개치기 시작하던 때였다.

1923년 9월 3-7일까지 20개국 131명의 대표가 참여한 제2회 국제형사경찰회의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⁷⁵⁾ 이 회의의 결과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헌장, 상임기관, 동 기구에서 근무할 사무요원, 동 위원회의 본부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결의에 의

71) Fenton Bresler, *op. cit.*, p. 13 참조; 경찰청, 『인터폴』, 인터폴 기획단, p. 9 참조.

72) Tom Tullett, *op. cit.*, pp. 23-24; Fenton Bresler, *Ibid.*, p. 13.

73) Tom Tullett, *Ibid.*, p. 24.

74) Dr. Johann Schober는 1921-1922 및 1929-1930년에 각각 오스트리아의 수상을 역임했다.

75) 이 회의에 참석한 국가와 국가 수에 대해서 자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 참조. Fenton Bresler, *op. cit.*, pp. 17-18; Michael Fooner, *op. cit.*, p. 7; Tom Tullett, *op. cit.*, p. 24.

해서 國際刑事警察委員會(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 ICPC)가 탄생하였다. 이때 총재는 Dr. Johan Schober이 선출되었고, 1939년까지 국제형사경찰위원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Dr. Oskar Dressler가 총재에 의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본부는 비엔나 경시청이 기여한 사무실로 정했다.⁷⁶⁾

국제형사경찰위원회의 목적은 첫째, 회원국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국가의 경찰당국간에 가능한 최대의 共助를 확인하고 증진하기 위함이고, 둘째, 보통범죄의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진압에 대해서 기여할 것 같은 모든 제도를 제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경비는 제5회 Antwerp의 총회에서 인구 10,000명당 1 스위스 프랑으로 분담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하기 이전까지 오스트리아가 부담했다.⁷⁷⁾ 따라서 총재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 이르기까지 사무국의 요원은 전적으로 오스트리아인 이었다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또 동위원회가 설립당시에 새로운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을 위한 가입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나의 관행으로 공적 문서를 제출하고 분담금을 지불함으로써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었다.⁷⁸⁾

3.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탄생

국제형사경찰위원회는 매년 총회를 통해서 현재의 인터폴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했다. 즉 1924년에 사무총장에 의해서 국제형사기록사무소의 설립,⁷⁹⁾ 1928년 제5회 총회 이후부터 분담금의 납부, 1930년 6차 총회에서 총재는 5년, 부총재는 2년의 임기로 다수결에 의한 선출,⁸⁰⁾ Oskar Dressler에 의해서 “International Public Safety”가 영어, 불어, 독어 및 이태리어로 발행,⁸¹⁾ 정확히 어느 해인지 몰라도 미국의 FBI가 수배서를 발표한 이후 곧 사무총장인 Oskar Dressler에 의해서 수배자의

76) Fenton Bresler, *Ibid.*, p. 18; Michael Fooner, *Ibid.*, p. 7; Tom Tullet, *Ibid.*, p. 25.

77) Fenton Bresler, *Ibid.*, p. 19.

78) Tom Tullett, *op. cit.*, pp. 25-26.

79) 이 사무소는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창설된 첫 해인 1924년부터 1933년까지 3,240명의 국제보통범죄자의 서류가 보관중이었다. Fenton Bresler, *op. cit.*, p. 36.

80) Tom Tullet, *op. cit.*, p. 26.

81) *Ibid.*, p. 27.

목록과 논문이 “International Public Safety”에 게재, 1934년 범죄의 정보나 수배서 등의 신속한 송수신을 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 개통 등이다.⁸²⁾

1934년 9월 제10회 비엔나 총회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경시청의 경시청장이 국제형사경찰위원회의 총재를 겸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 이 결의는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후 1938년 6월 오스트리아가 독일에게 병합되고 독일은 동 위원회를 지배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반발한 프랑스는 1938년 6월 Bucharest에서 열린 제14회 총회에서 동 위원회의 본부를 비엔나에서 국제연맹의 본부가 있는 스위스의 제네바로 옮기자고 주장했으나 좌절되었다.⁸³⁾ 동 위원회는 제14회 총회 이후부터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15개월 및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종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은 나찌 독일의 지배하에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의 본부에 있는 직원들 중에 독일인이건 오스트리아인이건 간에 나찌를 옹호하지 않는 자는 모두 쫓겨났고, 1939년 3월 위원회의 간행물 이름도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Internationale Kriminalpolizei)로 改名하기도 했다.⁸⁴⁾ 또한 1940년 8월 나찌주의자인 Heydrich가 동 위원회의 총재가 되어 본부를 베를린으로 이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은 인터폴의 역사에서 최악의 암흑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벨기에 경찰총수인 Florent Louwage는 인터폴의 재건에 착수했다. 그는 인터폴의 회원국이었던 국가의 경찰총수를 초대해서 1946년 6월 3일 17개국 43명의 대표가 브뤼셀에 모여서 제15회 총회를 개최했다. 그 총회에서 ① 총재(Florent Louwage)와 사무총장(Louis Ducloux)의 선출, ② 공식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결정, ③ 분담금은 인구 천 만명 이하인 국가에게 인구 10,000명당 2.50 스위스 프랑이고 이 보다 큰 국가는 順應定率制(sliding scale)에 따라서 지불하기로 결정, ④ 1923년에 작성된 헌장의 개정에 대한 동의, ⑤ 1934년 결의에 따라 오스트리아 비엔나

82) *Ibid.*, p. 27; 1935년 말에서야 무선통신망을 갖게 되었다고 기록도 있다. Fenton Bresler, *op. cit.*, p. 25.

83) 반대로 독일측 대표인 Reinhard Heydrich는 1934년 결의의 채택이후에 비엔나 경시청장은 동 위원회의 총재였으므로 오스트리아는 당시 독일의 한 부분이므로 제3제국의 내무경찰 총수가 동 위원회의 총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Fenton Bresler, *Ibid.*, p. 47; Tom Tullet, *Ibid.*, p. 28.

84) Fenton Bresler, *Ibid.*, p. 50.

경시청장이 자동으로 인터폴 총재가 되고 사무총장이 집행위원을 임명하던 제도를 선거로 선출하기로 결정 및 ⑥ 본부는 프랑스의 파리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인터폴(Interpol)이라는 명칭은 電信의 사용을 위해서 “International Police”의 약어로 1946년부터 사용되었고, 1949년 제18차 Berne 총회에서 인터폴의 旗章를 채택했다.⁸⁵⁾ 1956년 6월 제25회 비엔나 총회에서 마침내 헌장이 개정되어 國際刑事警察委員會는 國際刑事警察機構(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로 명칭을 변경해서 인터폴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4. 비정부간기구에서 준정부간기구로 발전

1956년 국제형사경찰기구로 개명한 인터폴은 국제화에 발맞추어 발전하기 시작했다. 주요 사항을 설명하면, 첫째, 인터폴은 1958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7회 총회에서 제정에 관한 규칙을 결의하였다. 과거의 인구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스위스 프랑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 1단위(budget unit)에서부터 최고 60단위로 분류하고서 이를 다시 11개그룹으로 구분한 뒤 회원국이 사무총장과 협의해서 이들 그룹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으며, budget unit는 매 3년마다 평가하도록 했다.⁸⁶⁾ 둘째,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집행위원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총재와 부총재 및 집행위원을 선출하는데 필요한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을 1964년에 체결하였다. 동 협정에 따라서 아프리카 3명, 아메리카 3명, 아시아 3명 및 유럽에서 4명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⁸⁷⁾ 셋째, 1966년에 인터폴 사무총국을 파리교외에 있는 St. Cloud로 옮

85) 인터폴은 기장에서 劍은 警察活動, 저울은 正義, 지구본은 인터폴의 활동이 세계적이라는 것, 지구본의 양측에 있는 올리브 가지는 모든 사회에서 경찰의 목적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86) 1973년 분담금은 단위당(budget unit) 4,850 스위스 프랑, 1985년 12,500 스위스 프랑, 1987년 15,000 스위스 프랑이었으나 1991년부터 프랑스 프랑으로 기준환율을 변경했다. 1996년 10월 터키에서 개최된 제65회 총회에서 1997년 예산의 단위당 가치를 74,200프랑스 프랑으로 정했고, 예산단위는 2단위에서 102단위로 나누어져 있다. 2000년 총회에서 2001년 회계연도의 예산 단위당 가치를 프랑스 프랑에서 유로화(euros)로 다시 변경했고, 단위당 가치는 12,240 유로화로 정했다. Resolution No AGN/69/Res/11 참조; 2001년 제70차 총회에서 새로운 분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Resolution No AG-2001-Res-02 참조.

기고 1989년 11월에 다시 현재의 인터폴 본부건물이 있는 리용(Lyons)으로 이전했다. 넷째, 1971년 UN경제사회이사회와 특별약정을 채택하여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을 가진 비정부간기구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⁸⁸⁾ 다섯째, 1972년 5월 프랑스정부와 인터폴간의 인터폴본부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인터폴이 법적 주체로서 조세면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인터폴의 본부, 기록 및 통신 등에 관한 특권과 면제권을 부여받았고, 이를 1984년에 개정하였다.⁸⁹⁾ 여섯째, 1949년에 문장과 기를 제정할 당시는 인터폴이 유럽지역 중심의 기구라는 지역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많은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세계적인 특성을 가진 旗章으로 1973년 제42회 비엔나 총회에서 바꾸었고, 인터폴의 이름과 旗章도 1980년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등록함으로써 법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일곱째, 1980년 5월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도입되었고, 현재는(2001. 11) Atlas project가 수행되어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통신망의 첨단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여덟째, 1984년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테러범죄도 관할하게 되었고, ICTY와 ICTR의 소송절차 및 증거규칙 제39조 (iii) 및 ICC규정 제87조 1항에 의해서 인터폴의 관할대상 범죄로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등이 포함되었다.⁹⁰⁾ 아홉째, 회원국 수는 1967년 100개국, 1991년 158개국, 현재(2001. 11)는 179개국으로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상호협력하고 있다.

II. 목적 및 협력의 원칙

1. 목 적

87) Michael Fooner, *op. cit.*, p. 83; Fenton Bresler, *op. cit.*, p. 124.

88) 1971년 5월 20일 UN과 인터폴간의 협력을 위한 특별약정(Special Arrang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제5조 및 제6조 참조.

89) 1972년에 체결된 본부협정은 일반국제기구의 본부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도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1982년 11월 개정되어 프랑스 의회에 의해서 1984년 2월 14일 비준되었다. Fenton Bresler, *op. cit.*, p. 131, 171.

90) 인터폴 총회 결의(Resolution No AGN/63/Res/9 and Resoulution No AGN/66/Res/10) 참조.

인터폴헌장 제2조에 따르면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하나는 각국의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형사경찰당국간에 최대한의 공조를 보장·증진하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 같은 모든 기관을 설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인터폴헌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간결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의 의미는 인터폴이 추구하는 기본목적은 다른 주권국가의 국내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이 가능하고, 자국의 국내법을 위반하면서 타국과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즉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란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의 협력을 의미한다.

둘째, “모든 형사경찰당국 간에 최대한 공조(mutual assistance)를 보장·증진한다”의 의미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있어서 자국의 국내법에 의한 경찰제도가 중앙집권적이거나 지방분권적이거나 간에 형사범죄자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형사경찰당국간의 협력을 말한다.

셋째, “世界人權宣言의⁹¹⁾ 精神에 입각하여”란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이 전 세계에 있어서 자유·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고,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을 초래하므로 모든 인류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권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폴도 이러한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장 광범위한 공조를 확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는 것”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모든 형태의 협력을 통해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기여하고, 이를 증진한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ordinary

91)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law crime)은 각국의 경찰당국이 인터폴의 사무총국 및 각 회원국의 NCB와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국제보통범죄에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체포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하고, 범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사전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섯째,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 같은 모든 기관을 설립하고 발전시킨다”의 의미는 국제보통범죄에 관련된 범죄자의 수사·체포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국의 영역을 벗어난 경찰의 활동이란 것은 주권의 침해로 인식하고 있고 인터폴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도 어느 회원국의 영역에서 수사·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따라서 차후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수사·체포할 수 있는 국내·국제적인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면 설립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2. 협력의 원칙

인터폴이 각국의 국내법의 범주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 경찰에 의해서 창설되고 경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각국은 형사관할권을 주권의 본질적 요소의 한 분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인권보호에 관련된 사항과 각국의 경찰조직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있다.

첫째,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다. 정치적·군사적·종교적·인종적 성격의 어떠한 간섭이나 활동에 관련되는 업무를 착수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⁹²⁾

둘째, 국내법 존중의 원칙이다. 각 회원국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국제경찰협력이 이행되고, 그 이행된 협력이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셋째, 형사범집행의 원칙이다. 인터폴이 관할하고 있는 범죄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보통범죄에 한정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테러범죄는 인터폴 총회,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살해죄 및 전쟁범죄 등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및 ICC규정에 의해서 인터폴 관할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넷째, 보편성의 원칙이다. 어느 회원국도 다른 회원국과 국제경찰협력을 행할 수 있고 또 그 협력은 국제정치·경제적 역량, 지리적, 언어적 요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아니한다.

92) 인터폴헌장 제3조 참조.

실제적으로 인터폴 회원국들은 민주국가, 독재국가, 군주국,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등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다.

다섯째, 평등성의 원칙이다. 인터폴의 모든 회원국은 영토의 크기, 가입한 연도, 재정적 기여도 및 기타 어떤 특별한 특혜에 대한 고려없이 똑같은 협력을 제공받고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 인터폴의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및 집행위원회의 위원 등을 선출할 때에 있어서도 어느 특정 국가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와 같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모든 국가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타 기관과의 협력의 원칙이다. 각국의 NCB를 통한 국제경찰협력은 회원국의 모든 법집행기관에게 확대된다. 이것은 각 국가마다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따른 경찰제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NCB가 설치되면 그 NCB를 통해서 그 회원국의 모든 경찰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법집행기관까지도 그 협력이 확대된다는 의미이다.

일곱째, 업무방식의 유연성의 원칙이다.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업무방식은 여러 국가에서 경찰제도의 다원성과 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연하다. 즉 매일 매일의 경찰협력의 과정과 메카니즘이 엄격하고 성문의 法源에 의한 엄격한 규범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국내법과 Soft law적인⁹³⁾ 인터폴의 헌장 및 규정, 각국의 경찰구조나 다양한 상황 등이 고려되어 국제경찰협력이 수행된다는 의미이다.

Ⅲ. 법적 지위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는 “국제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자신의 의사에 따른 기관이 적어도 하나 이상이 창설되어 있는 국제적 합의에 기초

93) Soft Law는 서면의 형식으로 규정된 규범이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재량적이므로 그 성립조건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가국의 의사에 달려 있는 성질을 지닌 법으로서 법이라는 흰면과 非法이라는 검은면 사이에 회색의 지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문규석, “국제환경법의 법원-Soft Law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12, pp. 436-437 참조; 김석현, “국제법에 있어서 Soft Law”, 『국제법평론』, 1997-1(통권 제8호), 국제법출판사, 1997, pp. 21-42 참조.

한 협력의 형태”⁹⁴⁾ 또는 “조약이라는 형태의 자발적 합의에 의하여 결합된 국제적 실체로서 국제법상 상설적인 기관을 갖고 일정한 자치능력과 국가간의 협조능력을 가진 국제법상 법인격자”를 말한다.⁹⁵⁾ 반면에 비정부간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는 국제적 공리를 위한 비영리 목적으로 어느 당사자의 국내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문서에 의해서 설립되어, 적어도 두 국가에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수행하며, 각 당사국의 영역에 지부와 어느 한 당사국의 본부에서 운영과 통제 등을 조건으로 하는 단체(association), 재단(foundation) 및 다른 사적 협회(private institution) 등을 의미한다.⁹⁶⁾ 그렇다면 인터폴은 정부간기구인가 비정부간기구인가?⁹⁷⁾

인터폴의 법적 지위는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를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 인터폴현장은 정부간에 합의한 조약이라고 볼 수 없지만 조약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 ② 회원자격이 국가이지만 각국의 외무부 당국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경찰당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 ③ 국제법상 명시적인 법인격에 관한 규정이 인터폴현장 등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법인격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점, ④ 국가가 지불한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⑤ ICJ에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지만 본부 소재지국인 프랑스와의 분쟁은 협의 및 중재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 ⑥ UN과의 관계 설정은 UN헌장 제71조를 근거로 Category I에 해당하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⁹⁸⁾ ⑦ 인터폴 사무총국이 있는 프랑스와 본부협정을 체결하여 인터폴 사무총국과 직원 등이 외교적인 특권과 면제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의 법적 지위를 모두 누리고 있다.⁹⁹⁾ 다시 말해서, 회원자격이 국가라는 점, 회원국

94) Henry G. Schermers & Niels M. Blokker,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3rd, ed., (The Hague/London/Boston : Martinus Nijhof Publishers, 1995), p. 23.

95)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박영사, 1996, p. 290.

96) 비정부간기구의 법인격 승인에 관한 유럽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the Legal Personality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제1조.

97)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간의 차이점은 필자의 논문 참조. 문규석, *supra note* 15, pp. 62-63.

98) UN헌장 제71조를 근거로 경제사회이사회와 체결한 협의약정에 의한 Category I의 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고, 잠정적 의제를 제출하거나 2000자 이내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반적 협의지위의 자격을 말한다. 문규석, 상계논문, p. 57 참조.

이 지불한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상설적인 사무국이 있다는 점, 본부협정을 체결하여 특권과 면제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 등은 외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간기구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반면에 인터폴은 비정부간기구로부터 발전되어 왔다는 점, 인터폴헌장은 명시적으로 회원국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국제경찰협력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조직된 NCB에 의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 국내법으로 조직된 NCB에 의해서 협력을 하고 있으므로 Soft Law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의 내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정부간지위를 누리고 있다.¹⁰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터폴은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의 지위를 모두 향유하고 있는 국제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준정부간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간기구와 준정부간기구, 준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간의 차이점과 분류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제법상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다.¹⁰¹⁾

IV. 조직구성

인터폴은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 각국의 대표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국가중앙사무국 및 고문단이 있다.

1. 총 회

총회는 인터폴 내에서 최고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며 회원국들에 의해서 임명된 대표로 구성된다.¹⁰²⁾ 각 회원국들은 한 명 혹은 여러 명에 의해서 대표할 수도 있으나 그 국가의 정부당국에 의해서 임명된 한 명의 수석대표이어야 한다. 인터폴의 특수한 특성으로 인하여 그 국가의 대표는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직 공무원, 통상업무가

99) 상계논문, p. 63.

100) 상계논문, pp. 63-64.

101) 상계논문, p. 64.

102) 인터폴헌장 제6조.

본 기구의 활동에 관계되는 공무원, 의제에 관련된 전문가 등이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¹⁰³⁾

총회의 결정은 결의(resolution)와 권고(recommendation)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총회의 대표로 참가한 자가 본국에 돌아가서 그들 국가 내에서 총회의 결정을 이행하기를 바란다. 즉 인터폴은 총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각국 대표나 그 소속 국가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총회결정의 자발적 수용의 본질은 주권이 항상 인터폴의 결의·권고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총회의 임무는 ① 인터폴헌장상에 규정된 의무의 수행, ② 인터폴헌장 제2조에 규정된 인터폴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원칙을 결의하고 일반적인 조치를 규정하는 것, ③ 사무총국에 의해서 작성된 차기연도의 활동계획을 조사하고 승인하는 것, ④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규칙들을 결의하는 것, ⑤ 인터폴헌장에서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선출하는 일, ⑥ 인터폴이 처리해야 할 權原이 있는 문제에 관하여 결의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권고를 행하는 것, ⑦ 인터폴의 재정정책을 결의하는 것, ⑧ 다른 국제기구와 함께 행하는 어떤 협의를 조사하거나 승인하는 것,¹⁰⁴⁾ ⑨ 총재와 부총재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일 등이다.¹⁰⁵⁾

총회는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집행위원회 또는 과반수의 회원국들에 의해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¹⁰⁶⁾ 총회가 개최되는 날자는 총회가 개최되는 국가의 당국자와 사무총장이 협의한 후에 총재가 정한다.¹⁰⁷⁾ 총회가 개최되는 회기 중에 차기총회의 개최지를 결정하고 차기 총회가 개최되는 날자는 사무총장과 협의한 후에 개최지국과 총재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¹⁰⁸⁾ 어느 회원국도 자국의 영역 내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초대할 수 있으나 만약 개최지가 결정되지 못하면 인터폴 사무총국이 소재하는 프랑스에서 개최되고, 차기총회지로 결정된 국가가 차기총회를 개최하기에 부적당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집행위원회는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¹⁰⁹⁾

103) 인터폴헌장 제7조.

104) 인터폴헌장 제8조.

105) 인터폴헌장 제16조, 제28조.

106) 인터폴헌장 제10조.

107) 일반규칙 제6조.

108) 인터폴헌장 제12조.

109) 일반규칙 제3조, 제5조.

2.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의 구성

집행위원회는 인터폴 총재, 세 명의 부총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13명의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지리적 배분에 의해서 각기 다른 국가의 출신이어야 한다.¹¹⁰⁾ 총재와 부총재도 각기 다른 대륙 출신이어야 한다.¹¹¹⁾ 만약 집행위원이 적절한 지리적 배분에 의해서 선출되지 아니하고, 총재와 부총재가 각기 다른 대륙의 출신이 아니라면 4개의 대륙이 모두 총재직 수준으로 대표되기 위해서 4번째 부총재가 선출되어야 한다.¹¹²⁾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집행위원은 잠정적인 기간동안 14명이 된다.¹¹³⁾ 집행위원이 지리적 배분에 의해서 혹은 총재와 부총재가 각각 다른 대륙의 출신으로 구성되면 잠정적 기간은 종결된다.

(2) 총 재

인터폴의 총재는 총회나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토론의 진행을 주도한다. 또한 인터폴의 활동이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능한 사무총장과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한다.

(3) 집행위원

집행위원은 ① 총회결정의 집행을 감독하고, ② 총회 회기중에 제출될 안건을 준비하며, ③ 유용하다고 고려되는 어떤 업무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총회에 제출한다. ④ 사무총장의 행정 및 업무를 감독하고, ⑤ 총회에 의해서 집행위원에게 위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¹¹⁴⁾ 따라서 집행위원 모두는 그들의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들 국가의

110) 인터폴헌장 제15조.

111) 인터폴헌장 제16조.

112) 인터폴헌장 제17조.

113) 인터폴헌장 제17조.

114) 인터폴헌장 제22조.

대표로서가 아니라 인터폴의 대표로서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¹¹⁵⁾

(4) 집행위원의 임기 및 선출

총재는 4년의 임기로, 부총재와 집행위원은 3년의 임기로 총회에 의해서 선출된다. 총재와 부총재는 임기만료 직후에 동일한 직위 또는 집행위원으로 즉시 재선될 수 없다.¹¹⁶⁾ 집행위원도 마찬가지로 임기만료 후에는 즉시 집행위원으로 재선될 수 없다.¹¹⁷⁾ 이것은 총재, 부총재 및 집행위원의 자리가 순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3. 사무총국

(1) 구성과 소재지

사무총국은 인터폴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과 기술 및 행정직원들로 구성된다.¹¹⁸⁾ 인터폴의 상설 부서는 사무총국으로 구성된다고 인터폴헌장 제25조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무총국의 특성, 구조 및 기능에 관해서 인터폴헌장이나 일반규정 등을 비롯해서 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새로운 사무총장(Ronald Kenneth Noble)의 주도로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2001년 제70차 인터폴총회(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승인한 사무총국의 조직 구성은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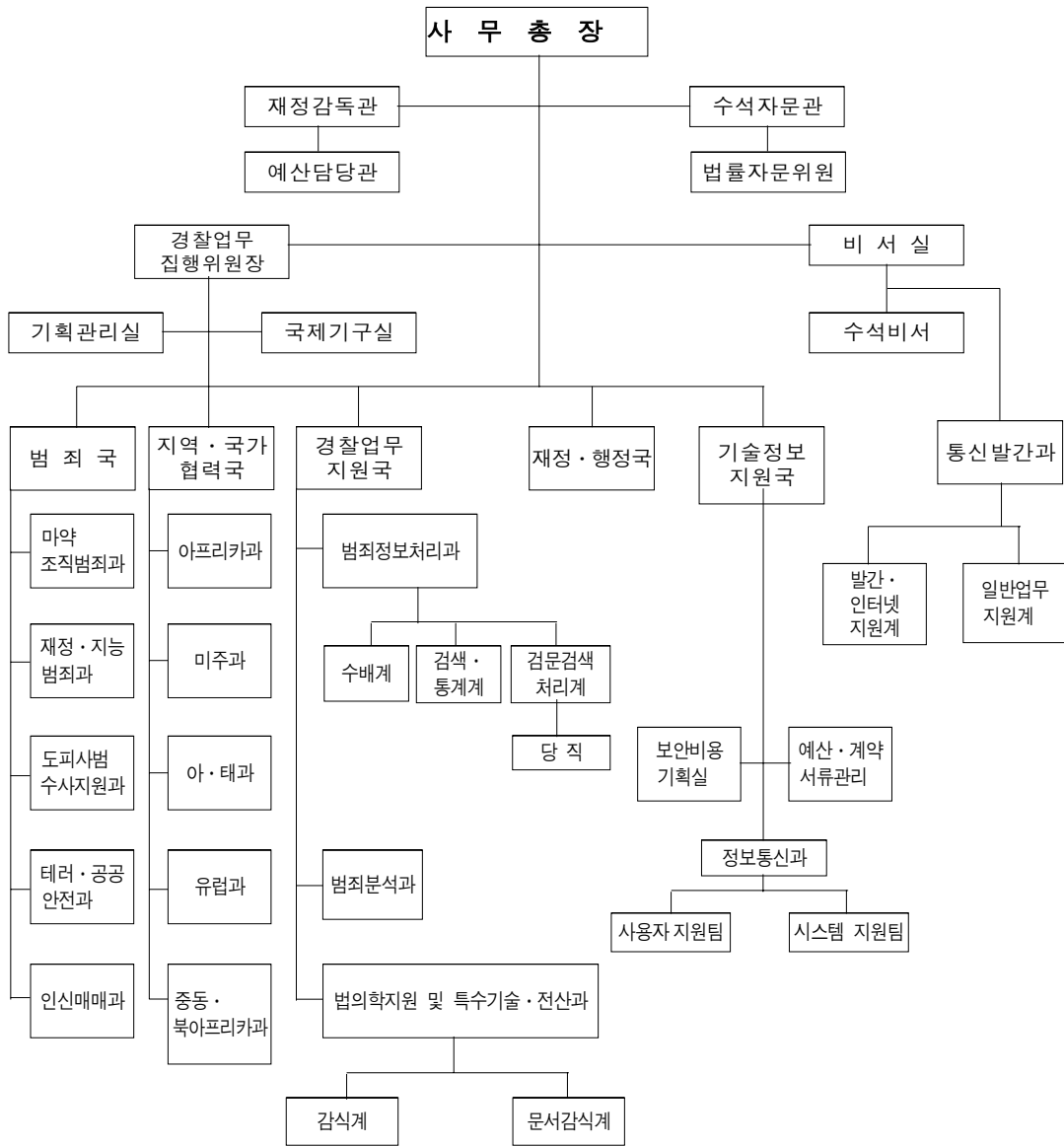
115) 인터폴헌장 제21조.

116) 인터폴헌장 제17조.

117) 인터폴헌장 제19조.

118) 인터폴헌장 제27조.

<표 2> 인터폴 사무총국 조직구성



* 자료 : 경찰청 제공

(2) 임 무

사무총국은 ①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결정의 집행, ② 보통범죄의 진압을 위해서 국제적 중심지로 활동, ③ 기술 및 정보중심지로 역할, ④ 인터폴의 효율적인 활동의 보장, ⑤ 각 회원국 및 국제범죄에 관련된 관련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관계의 유지, ⑥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출판물의 발간, ⑦ 총회, 집행위원회 및 기타 다른 기관의 회의에서 사무국 업무의 준비 및 이행, ⑧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요하는 차기 년도의 사업계획안의 작성 및 ⑨ 가능한 한 총재와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한다.¹¹⁹⁾

(3) 사무총장의 임무와 임기 및 자격

사무총장은 ① 인터폴의 요원의 고용·관리, 예산의 집행, ② 총회나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상설 부서의 조직·관리, ③ 인터폴의 업무에 관한 어떠한 제안이나 계획을 집행위원회 또는 총회에 제출하고, ④ 총회, 집행위원회 및 다른 모든 하부기관의 토론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사무총장은 경찰분야의 유능한 인재 중에서 발탁되어 집행위원회가 제안하고 총회에서 5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재선될 수 있다. 사무총장의 정년은 65세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집행위원회는 사무총장의 해임을 총회에 건의할 수 있다.¹²⁰⁾

(4) 직 원

사무총국의 직원은 3가지 유형으로 채용된다. 하나는 사무총국이 임금을 주는 일반시민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각 회원국의 정부가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는(seconded) 회원국의 경찰관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 직원 임금은 자국의 정부에서 지불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인터폴과 그 직원을 지원하는(detached) 회원국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임금을 주는 직원이 있다.

119) 인터폴헌장 제26조.

120) 인터폴헌장 제28조.

4. 국가중앙사무국(NCB)

NCB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회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회원국의 여러 기관, 다른 회원국의 NCB, 본부의 사무총국 등과 지속적인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하는 기관이다.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수배에 관련된 정보수집 및 각종 조회도 각국의 NCB를 통해서 수행된다.

5. 고 문

고문은 인터폴이 관련되는 분야(국제경찰협력 및 국제형사법)에서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집행위원회가 임명하고, 총회의 통고가 있는 다음에 그 임명은 확정되며 임기는 3년이다. 고문의 역할은 순수한 자문이며, 총회의 결정으로 해임될 수도 있다.

고문은 과학적인 문제에 관하여 건의권, 총회, 집행위원회 및 사무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과학적인 문제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의 제출권, 옵서버로 총회의 참석권, 총재의 초청으로 토론에 참여할 권리, 총재의 요청으로 회합할 권리 등이 있고, 수 명이 동일한 국적의 국민이라도 무방하다.¹²¹⁾

V. 사무총국과 회원국 및 회원국간의 국제경찰협력

1. 국제수배제도

(1) 의 의

수배전단을 공시함에 의해서 도피사범을 체포하려는 아이디어는 미국의 서부개척의 역사에서 친밀하게 볼 수 있었다. 포스터에 사진, 이름 및 도망자의 죄명이 나무나 건물 등에 못으로 붙여 있고, 때때로 체포에 따른 포상금을 고시하기도 한다. 표면상으로는 경찰관이 관할지역의 경계를 벗어난 도망자를 체포하고자 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제안되

121) 인터폴헌장 제34조-제37조; 일반규칙 제46조-50조.

있던 것 같지만 시간과 에너지의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인터폴의 국제수배서는 국외도피범, 실종자, 우범자, 장물, 수배 대상자의 인적·물적 사항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각 회원국에 통보하여 이를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사무총국 및 각 회원국간에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국제수사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수배대상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다.¹²²⁾ 현재의 수배제도는 1946년에 개발되었고, 몇 가지 형태의 수배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 수배서는 개인수배서, 장물수배서, modus operandi sheet, 회보(circular letter), 약식보도(summary report) 및 기술팜플렛(technical brochure) 등이 있다.

수배서 발행은 전적으로 사무총국의 권한이다. 이 수배서는 수배자의 약력, 신원, 혐의 등이 간략히 기록된 용지이고, 이 용지는 개인수배서의 경우 다섯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 색상은 일종의 코드이다(부록 참조). 녹색을 제외하고 개인수배서는 회원국의 요구에 의해서 발행된다.

(2) 사무총국에 의한 수배서

1) 적색수배서(red notice)

인터폴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적색수배서는 감금, 체포, 범죄인인도 중의 어느 하나를 요구하는 수배서이다. 이 수배서는 오른쪽 위 여백에 적색의 4각 마크가 있어서 적색수배서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회원국의 NCB의 요구에 따라서 사무총국만이 발행하고 발행된 수배서는 각 회원국의 NCB에 배포된다. 수배서에는 수배자의 이름, 가명, 출생지와 출생일, 육체적 특징묘사, 지문 및 사진 등을 제공해서 범죄자의 인적사항을 설명해 준다. 적색수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국가는 체포사유인 위반된 범죄 및 영장과 관련된 수사 등이 기록된 체포영장을 발행해야 한다. 적색수배자가 체포되자마자 적색수배를 요구하는 국가는 범죄인인도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서약이 있어야 한다.

122) 경찰청, 『국제성 범죄수사』, 외사관리관실, 1996, p. 161.

2) 청색수배서(blue notice)

청색수배서는 어느 개인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수배서이다. 즉 신원조사, 전과조회, 소재지 파악 등을 목적으로 수배서의 오른쪽 위 여백에 청색의 4각 마크가 있다. 사무총국은 긴급체포나 다른 어떤 조치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없이 수배서를 발행한다.

3) 녹색수배서(green notice)

녹색수배서는 위험성이 있고 상습범에 의해서 범죄행위가 진행 중에 있을 것 같거나 혹은 조직범죄집단의 일원에 의해서 범죄행위의 일 부분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라는 의미로 사무총국이 발행한다.¹²³⁾ 이 녹색수배서를 받은 경찰은 그 혐의자가 범죄행위를 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나 혹은 그들을 즉각 체포할 수 있도록 경계를 철저히 할 수 있다. 주로 이 수배서는 박람회, 올림픽·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 및 특별한 축하행사로 여러 국가로부터 방문객 및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여러 국가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적인 형사범(소매치기)에 대한 경계로 수배서 오른쪽 위 여백에 녹색의 4각 마크가 있다.

4) 흑색수배서(black notice)

흑색수배서는 발견된 사체에 대해서 신원확인애 필요한 어떠한 단서가 없거나 또는 신원확인이 잘못된 시신으로 판정된 경우에 사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 사무총국이 발행하는 수배서이다. 사체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사체에 대한 특징묘사, 지문 및 발견당시의 상황 등이 기록되며 오른쪽 위 여백에 흑색의 4각 마크가 있다.

5)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황색수배서는 행방불명된 자나 혹은 범죄의 피해로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사람에 대

123) 발행 조건은 Resolution No AGN/66/Res/11 참조; 경찰청, *supra note* 71, p. 38 참조.

해서 신체적인 특징을 기술한 수배서로 오른쪽 위 여백에 황색의 4각 마크가 있다.

(3) 회원국에 의한 수배서

사무총국의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원국의 NCB는 국제적인 혐의자, 도피 사범 및 수사공조를 요구하는 정보 수배서를 발행해서 배포할 수 있다. 이 수배서는 배포할 국가를 제한하거나 또는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배포할 것인지는 발행국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 수배서는 수배서의 발행에 대한 사무총국의 기준에 상응할 필요가 없다. 각국의 NCB는 신속하게 배포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사무총국이 수배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중간조치로서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NCB는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면 회원국이 스스로 수배서를 발행해서 다른 회원국에게 배포할 수 있다.

(4) 장물수배서(stolen art bulletins)

박물관, 화랑, 판매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가미술품, 조각,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품, 진귀한 책, 고대 엽전, 보석 등이 국제적인 절도범이나 밀수업자에게 도난 당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터폴은 각국의 범집행당국에게 도난당한 물품의 사진과 특징을 기록한 장물수배서를 월간 또는 연 2회로 발행해 했다. 인터폴은 어느 회원국의 NCB가 도난당한 미술품이 수송 중에 있거나 어느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인터폴은 그 물품을 되찾기 위해서 긴급전문을 보낸다. 이 수배서를 받은 각국의 NCB는 상인, 사설단체, 구매자, 판매자 및 미술품 관리인에게 이 수배서의 복사본을 배포한다.

(5) 기타 수배서

인터폴은 modus operandi reports(범죄수법 수배서), 수배치기, 마약상인, 사기꾼과 같은 특별한 유형의 범죄자, 범죄행위의 유형, 형사사건의 혐의자, 장물에 대한 목록 등에 관한 소책자를 발행한다. 이 수배서의 이용은 전적으로 각국의 NCB와 경찰당국의 재량이다.

2. 통신제도

(1) 목적 및 구성

인터폴 통신망의 목적은 신원확인에 관한 경찰정보, 수배자에 대한 추적과 체포, 장물의 수배, 국제조직범죄집단의 활동에 대한 긴급정보, 범죄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정보 등을 교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정보의 신속한 교환은 조직범죄집단의 기동성보다 우수한 통신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폴의 통신망은 중앙무선국(central station), 지역무선국(regional station) 및 각 회원국의 NCB의 무선국(national st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무선국은 인터폴 사무총국이 있는 프랑스 리옹에 설치되어 있고, 지역무선국은 전세계를 9개 지역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NCB의 무선국은 각 회원국들이 인터폴 중앙무선국과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동 무선국은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NCB의 무선국이 인터폴의 사무총국과 직접 연결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NCB의 무선국이 지역무선국을 통해서 사무총국과 연결하는 경우이다.

(2) 중앙무선국

인터폴의 사무총국이 있는 리옹에 설치된 중앙무선국은 1987년에 도입하여 1993년 12월부터 사용이 중단된 자동전문전송설비(Automated Message Switch System: AMSS), 유럽,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등 많은 국가의 NCB에 설치되어 있는 X-400 및 ASF가 있다. ASF는 선택된 영상, 사진, 지문, 범죄경력 자료, 수배사항, 도난당한 고미술품 및 기타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용되고 있는 장비로 각국의 NCB와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인터폴 사무총국이 있는 서버를 경유해서 자동적으로 검색하는 것이 허용된 컴퓨터시스템이다.¹²⁴⁾ 각국의 NCB에서 전송된 정보는 매일 매일 사무총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입력이 되고 입력된 정

124) ICPO-Interpol, *General Information*, General Reference Department, January 1995, pp. 15-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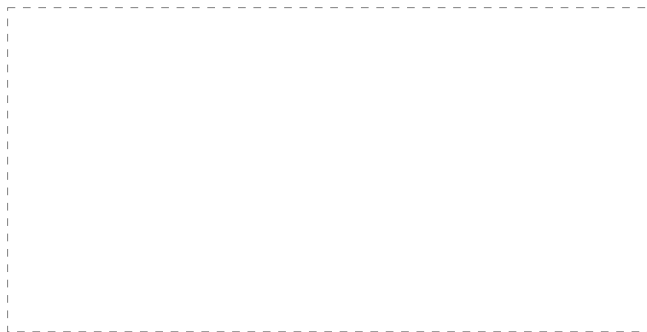
보를 찾는 방식도 성, 이름, 출생일, 국적, 가명 등과 같은 몇 가지 기준으로 관련된 정보의 검색이 가능한 키워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지역무선국

지역무선국은 통신장비, 운용비 및 통신요금의 절감으로 각 회원국의 NCB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면, 서울-동경간의 요금은 서울-리용간 요금의 1/3 수준이다. 지역무선국은 9개 지역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1·2·3지역은 유럽·지중해·북아프리카 지역으로 6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국의 NCB는 직접 프랑스 리용의 중앙무선국과 직접 연결하여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둘째, 제4지역은 남미지역에 있는 10개국으로 아르헨티나의 Buenos Aires에 지역무선국이 설치되어 있다. 셋째, 5지역은 아프리카를 동서로 구분하여 동쪽은 18개국으로 케냐의 Nairobi, 서쪽은 25개국으로 코트디부아르의 Abidjan에 지역무선국이 설치되어 있다. 넷째, 6지역은 미국과 캐나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의 워싱턴과 캐나다의 오타와에 설치된 NCB가 직접 중앙무선국과 연결하고 있다. 다섯째, 7지역은 아시아지역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22개국이고 동경에 지역무선국이 있다. 여섯째, 8지역은 중남미의 3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무선국은 Puerto Rico에 있다. 일곱째, 9지역은 호주를 비롯한 오세아니아지역으로 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무선국은 호주의 Canberra에 있다.

<그림 1>

인터폴 통신망



* 자료 : 경찰청 제공

(4) 회원국 NCB의 무선국

NCB의 무선국은 그 국가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인터폴 사무총국 및 회원국의 NCB와 메시지를 주고 받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우편에 의한 방법과 모르스 통신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좀더 근대적인 방법으로 텔렉스, 팩시밀리, 무선 ARQ(Automatic Request for repetition) 등이 있고, 비교적 첨단으로 X-400과 ASF가 있다. 제70차(2001. 9. 24-28) 인터폴총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터폴은 기존의 X-400 통신망을 대신할 Atlas project가 2001년 4/4분기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3년 1/4분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 Atlas project는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조회 설비로 범죄자 및 혐의자에 대한 정보, 사진, 지문, 3백만 이상의 도난당한 자동차, 도난당하거나 위조된 서류, 도난당한 예술품 및 기타 등을 검색할 수 있다.

VI. 인터폴과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1. UN과의 관계

인터폴과 UN과의 관계는 세 개의 문서를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1971년 5월 20일 UN경제사회이사회와 인터폴간의 협력을 위한 특별약정(Special Arrang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이고, 다른 하나는 UN총회가 인터폴에게 옵서버의 지위를 부여한 UN총회의 결의(Observer Status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n the General Assembly),¹²⁵⁾ 또 다른 하나는 UN과 인터폴간의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이다.¹²⁶⁾

125) UN총회 결의 A/Res/51/1.

126) 1997년 7월 8일 뉴욕에서 UN사무총장 Kofi Annan과 인터폴 총재 Toshinori Kanemoto간에 체결되었다.

첫째, UN과 인터폴간의 협력을 위한 특별약정에 의하면 ① 인터폴은 UN사무국과 적절하게 상호이익이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정보 및 자료 교환, ② 공동이익의 문제에 대한 협의, ③ 공동이익의 문제에 대한 연구, ⑤ 실질적인 계획에 있어서 기술적 협력, ⑥ UN사무국과 인터폴의 대표가 서로 상대방의 회의에 옵서버로 초대되고, 관련된 기관의 승인으로 투표권이 없이 중요한 문제의 토론에 참여, ⑦ 상대방의 회의에 서면 성명서 제출권 및 잠정적 의제 제출권이 있고, 이때 인터폴은 Category I에 적용되는 조건과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¹²⁷⁾

둘째, 인터폴이 UN총회의 정기총회 및 기타 회의에 옵서버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셋째, UN과 인터폴간의 협력협정에 의하면 ① 각각의 권능의 범위에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하여 의견교환, ② 공동이익의 문제에 대한 정규적인 협의 및 적절한 협의체 설치, ③ 공동이익의 문제에 관한 정보 및 문서 교환, ④ 기술적 협력 지원, ⑤ 프로젝트의 공동 이행, ⑥ 인터폴이 UN총회와 기타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 및 ⑦ UN사무국과 인터폴 사무총국간의 협력 등이다.¹²⁸⁾

2. 기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인터폴은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여러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협 의, 협력, 정보 및 문서교환, 기술적 협력(공동이익이 관련된 연구 등) 및 사무국간의 협 력 등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UN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NSCO), 미주기구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국제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UPU), 아랍내무장관이사회의 사무국(General

127) 동 특별약정 제2조-제6조.

128) 동 협력협정 제1조-제7조.

Secretariat of the Arab Interior Minister's Council: AIMC), 바젤협약의 사무국 (Secretariat of the Basel Convention), 중앙아프리카 경제 및 금융공동체(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 EMCCA) 및 국제박물관이사회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등이다.

제2절 지역적 협력 메카니즘

I. 유 럽

1. 유럽폴

(1) 연혁 및 성립배경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유럽에서 국제보통범죄의 심각성은 각국의 경찰 및 사법당국을 크게 긴장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중동과 서유럽 내에서 발생한 국제테러는 예외였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였다. 당시 서유럽의 국제경찰협력은 인터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인터폴이 국제테러를 관할하면 국제적인 공동 대응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 초반 EC(European Community)는 인터폴에게 국제테러를 관할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폴 총회의 안건에 국제테러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당시 인터폴 사무총장인 Nepote는 이를 거절하였다.¹²⁹⁾ 그 이유는 국제테러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종교적·인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인터폴이 정치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 및 인터폴 헌장 제3조에서 정치적·종교적·군사적·인종적 성격의 띠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¹³⁰⁾

129) Malcolm Anderson, Monica Den Boer, Peter Cullen, William Gilmore, and Neil Walker, *Policing the European Union*(Oxford : Clarendon press, 1995), p. 53.

130) Cyrille Fijnaut, "Policing Western Europe: Interpol, Trevi and Europol", *Police Studies: The International Review of Police Development*, Vol. 15, No. 3, Autumn 1992, p. 102
참조: 인터폴은 1984년 인터폴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국제테러도 관할하게 되었다. 인터폴

EC의 사법과 국내문제(justice and home affairs) 담당 장관들은 1975년 12월에 로마에 모여서 국제테러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Trevi Group를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그 첫 회의는 1976년 6월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었다. Trevi Group은 초창기에 국제테러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국제조직범죄, 마약 및 기타 중대한 범죄, 불법이민, 경기장 폭력, 공공질서, 경찰장비, 훈련 및 법의학 등으로 관할의 범위가 확대되었다.¹³¹⁾

국제경찰협력을 위한 기구로 유럽폴을 탄생하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는 1991년 6월 28-29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의 회의에서 독일의 대표(콜 수상)가 처음으로 유럽의 형사수사사무소(European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의 창설을 제기하였다.¹³²⁾ 1991년 12월 4일 Trevi Group 장관급회의에서 1990년 6월에 설치된 마약정보조직(European Drugs Unit)를 유럽폴마약조직(Europol Drugs Unit: EDU)으로 개칭하기로 동의하고, 1991년 12월 9-10일 유럽이사회 수상급회의에서 유럽연합조약 제6부의 사법과 국내문제의 한 분야로 경찰협력을 포함시키면서 그 경찰협력에 관련된 기구로 유럽폴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유럽폴이 유럽폴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활동한 것은 1995년 7월 26일에 유럽폴협약이 서명되고, 1998년 10월 1일 유럽폴협약이 발효된 후 1999년 7월 1일이다. 유럽폴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1993년 6월 1-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Trevi Group 장관급회의에서 서명된 장관협정(Ministerial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ol Drugs Unit)을 근거로 EDU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 협정은 EDU의 상설사무소의 위치가 결정되면 발효하기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EU는 1993년 10월

헌장 제3조의 적용에 관한 결의(Resolution No AGN/53/Res/7) 및 테러로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폭력범죄에 관한 결의(Resolution No AGN/53/Res/6) 참조; Michael Fooner, *Interpol: Issues in World Crime an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New York & London : Plenum Press, 1989), pp. 233-235 참조.

131) Trevi Group은 로마에 있는 유명한 분수인 Trevi와 초대 의장인 네덜란드 Mr. Fonteijn의 이름을 본따서 지었고, 국제기구가 아니라 治安에 관련된 공동협력을 논의하기 위하여 장관과 실무자 등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유럽의 정부간 포럼이다. Malcolm Anderson, Monica Den Boer, Peter Cullen, William Gilmore, and Neil Walker, *op. cit.*, p. 53; Bill Heberton and Terry Thomas, *op. cit.*, p. 70; John Benyon, Lynne Turnbull, Andrew Willis, Rachel Woodward, and Adrian Beck, *op. cit.*, p. 152 참조.

132) Michael Santiago, *op. cit.*, , p. 43.

29일에 EDU 상설사무국을 헤이그로 결정하고,¹³³⁾ 1994년 1월 3일부터 1993년 6월 2일의 장관협정을 근거로 EDU는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11월 1일에 유럽연합조약이 발효되면서 사법과 국내문제를 담당하였던 Trevi Group은 유럽연합의 사법과 국내문제에 관한 이사회로 대체되고, 유럽폴에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사법과 국내문제에 포함되었다.¹³⁴⁾

EDU의 초창기의 임무는 마약관련 범죄 및 특수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회원국간의 정보교환 및 회원국과 다른 정보원에서 제공한 私的 정보가 아닌(non-personal) 일반상황보고 및 범죄분석을 작성하는 것(to prepare general situation reports and crime analyses)이다.¹³⁵⁾ 1991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유럽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유럽폴과 그 이전의 EDU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확대되었다. 첫째, 1995년 3월 10일에 장관협정이 개정된 공동조치(Joint Action)로 불법적인 핵물질 거래, 불법이민 관련 범죄, 불법자동차 매매 및 이에 연관된 돈세탁(associated money-laundering operations), 둘째, 1996년 12월 16일의 공동조치로 인신매매,¹³⁶⁾ 셋째, 1998년 10월 1일 발효된 유럽폴협약 제2조 1항에서 기타 중대한 국제범죄의 유형에 불법적인 무기거래와 환경범죄, 넷째, 2000년 11월 30일 유럽폴협약 제2조와 그 부속서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에서 범죄활동에 연관된 돈세탁이 아니라 불법적인 돈세탁(illgal money-laundering activities)으로 확대되었다.¹³⁷⁾ 유럽폴의 연혁적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연대기적으로 작성하면 <표 3>와 같다.

133) Decision taken by Common Agreement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meeting at Head of State and Government level, on the location of the seats of certain bodies and department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of Europol(OJ C 323, 30/11/1993, p. 1-5) 제1조 (i).

134) Tony Bunyan, *op. cit.*, p. 1; Malcolm Anderson, Monica Den Boer, Peter Cullen, William C. Gilmore, Charles D. Raab & Neil Walker, *op. cit.*, p. 56.

135) 1993년 6월 2일의 유럽폴설립에 관한 장관협정 (a)와 (b).

136) 1993년 6월 2일에 서명된 EDU 설치에 관한 Ministerial Agreement이 개정된 1995년 3월 10일 공동조치(Joint Action) 제2조와 이를 개정한 1996년 12월 16일의 공동조치 제1조 참조.

137) Protocol drawn up on the basis of Article 43(1) of the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Police Office(Europol Convention) amending Article 2 and the Annex to that Convention 제1조 1항. OJ C 358, 13/12/2000, pp. 2-7.

<표 3>

유럽폴의 발전과정

년 도	내 용
1975. 12	Trevi Group 설치 합의
1976. 6	룩셈부르크에서 처음으로 Trevi회의를 개최함
1990. 6	유럽마약정보조직 설치
1991. 6. 28-29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 독일이 새로운 유럽의 형사수사사무소의 창설을 제안함.
1991. 12	마스트리트 정상회담에서 수정된 제안이 사법과 국내문제의 한 분야에 포함하기로 합의함.
1992. 2. 7	유럽연합조약 서명
1993. 6. 2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Trevi 장관급회담에서 EDU설치에 관한 장관협정 서명.
1993. 11. 1.	유럽연합조약 발효
1993. 10. 29	헤이그에 EDU 상설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함
1994. 1. 3	마약범죄의 진압과 관련된 제한적인 활동을 개시함.
1995. 3. 10	Joint Action에 의하여 불법적인 핵물질 거래, 불법이민 관련 범죄, 불법자동차 매매 및 이에 연관된 돈세탁 등으로 관할 범위가 확대됨.
1995. 7. 26	유럽폴협약 서명
1996. 3. 14	유럽폴 설치에 관한 결의
1996. 12. 16	인신매매도 EDU의 관할범위로 포함됨
1997. 10. 2	유럽연합조약을 개정한 암스테르담조약 서명
1998. 10. 1	유럽폴협약 발효
1999. 5. 1	암스테르담조약 발효
1999. 7. 1	유럽폴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활동 개시
2000. 11. 30	유럽폴협약 제2조와 그 부속서 개정(관할권이 확대됨)

* 필자가 작성함

유럽폴의 성립배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구 소련이 붕괴된 이후 마약밀거래, 불법이민 등에 의한 유럽연합시민들의 위협이 계속 증대되고 있고,¹³⁸⁾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회원국에서 유럽연합 전체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사법협력, 세관당국간의 협력, 경찰협력으로서 유럽폴 등이다. 둘째, 경제통합 및 하나의 유럽의 창설을 목적으로 역내 국경의 폐지에 따른 국제화의 역기능(마약밀거래, 국제조직범죄의 예방과 대책, 조직범죄자에 의한 돈세탁의 용이성, 해외도피사범의 급증 및 기타 등등)은 어느 한 회원국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의 문제로써 경찰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¹³⁹⁾ 셋째, 인터폴의 연성법적 성격이다. 예를 들면, 인터폴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각국의 NCB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이 자료는 몇몇 국가로부터 테러집단에게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¹⁴⁰⁾ 다시 말해서, 인터폴의 국제협력과 내부자료통제에 관한 규칙(Rul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n the Internal Control of Archives)으로 범죄정보에 관한 자료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¹⁴¹⁾

(2) 목 적

유럽폴의 목적은 국제테러, 불법마약거래, 핵물질 밀거래, 돈세탁, 불법이민, 장기와 자동차 밀거래,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관련된 범죄조직이 자행한 기타 중대범죄에 대한 예방과 진압에 있어서 회원국의 관계당국간의 효율성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¹⁴²⁾ 여기서 기타 중대한 범죄는 국제조직범죄집단이 관련되어 있고, 관련된 범죄의

138) Tony Bunyan, *The Europol Convention*(London : A Statewatch publication, 1995), p. 1 참조.

139) *Ibid.*, p. 1 참조.

140) John Benyon, Lynne Turnbull, Andrew Willis, Rachel Woodward & Adrian Beck, *op. cit.*, p. 129; Michael Santiago, *op. cit.*, p. 20 참조; Ilias Bantekas, Susan Nash, and Mark Mackarel, *International Criminal Law*(LondonSydney :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2001), p. 215 참조.

141) 인터폴의 자료보호에 관하여 한계성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Souheil EL Zeim, "Striving Towards Common Goals Can European Organizations work together?",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pp. 20-22 참조.

규모, 의미, 결과에 따라서 회원국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범죄의 형태로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에게 영향이 미칠 실제적 징후가 있는 범죄로 생명, 명예,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살인, 상해, 장기의 밀거래, 납치, 인질, 인종주의), 사유 및 공공 재산에 대한 범죄(사기, 절도, 문화재, 골동품 및 미술품 밀거래, 협박, 강탈, 상품의 위·변조, 공문서 위조 및 거래, 화폐의 위·변조, 컴퓨터범죄, 뇌물죄), 불법 거래와 환경에 대한 범죄(무기·탄약·폭발물의 밀거래, 멸종위기 동물·식물에 대한 밀거래, 환경범죄, 호르몬 및 기타 성장촉진제의 밀거래),¹⁴³⁾ 불법마약거래, 핵물질 밀거래, 불법이민, 장기와 자동차 밀거래 등을 의미한다. 유럽폴의 관할범죄의 범위는 유럽폴협약과 유럽이사회의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유럽폴은 미국의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과 같이 경찰이 기능적 활동 또는 집행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폴과 같이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정보제공, 기술적 권고, 특수 전문가에 의한 효과적인 자문 등을 지원하는 형태이다.¹⁴⁴⁾

(3) 법적 지위

유럽폴은 인터폴과 비슷하게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정보제공, 기술적 권고, 특수 전문가에 의한 효과적인 자문 등을 지원하는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인터폴의 전세계적인 측면과 달리 유럽폴은 지역적 성격을 지닌 국제경찰협력을 위한 정부간기구이다.

그 이유는 첫째, 유럽폴이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문서인 유럽폴협약은 국가간의 합의에 의해서 체결된 국제조약이라는 점이다. 둘째, 유럽폴의 각 회원국은 모두 국가라는 점이다. 셋째, 유럽폴조약 제26조 1항에서 유럽폴은 法人格을 향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네덜란드와 본부협정을 비롯하여 EU회원국이 아닌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국

142) 유럽폴협약 제2조 1항.

143) 유럽폴 협약 제2조 1항과 그 부속서.

144) Chantal Joubert & Hans Bevers, *Schengen Investigated: A Comparative Interpretation of the Schengen Provisions on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in the Light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The Hague · London · Boston :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 41 참조.

제조약을 체결할 권한,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가장 광범위한 법적·계약적 능력의 향유, 동산·부동산의 습득·처분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¹⁴⁵⁾ 넷째, 유럽폴은 각국이 국내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에 의해서 지불한 분담금과 부수적인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¹⁴⁶⁾ 다섯째, 유럽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회원국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¹⁴⁷⁾ 즉 UN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기구가 UN 총회의 허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¹⁴⁸⁾ 여섯째, 네덜란드와 본부협정을 체결하여 유럽폴 본부¹⁴⁹⁾ 및 유럽폴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에게 특권과 면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¹⁵⁰⁾ 다만, 여러 국제기구(예를 들면,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UN헌장 제57조와 제63조를 근거로 UN과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것과는 달리 유럽폴은 EU라는 지역성을 지닌 기구이므로 UNDCP(United Nations Drugs Control Programme)를 제외하고 UN과 특별한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4) 임 무

유럽폴의 임무는 국제적 성격을 지닌 범죄, 즉 ① 국제보통범죄에 관하여 회원국간의

145) 유럽폴협약 제26조 2·3항.

146) 유럽폴협약 제35조 2항.

147) Protocol drawn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interpretation, by way of preliminary rulings, b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f the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European Police Office 제1조.

148) UN헌장 제96조 2항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65조 참조.

149) 유럽폴 협약 제26조 3항 및 제37조.

150) 유럽폴 협약 제41조; Protocol drawn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Article 41(3) of the Europol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Europol, the members of its organs, the deputy directors and employees of Europol: OJ C 221, 19/07/1997, p. 2) 참조; 유럽폴 요원에게 적용되는 규칙(Council Act of 3 December 1998 laying down the staff regulations applicable to Europol employees: OJ C 026, 30/01/1999, pp. 23-81) 제19조 참조.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② 정보와 첩보의 수집·조회·분석하며, ③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설치된 National Unit를 경유하여 각 회원국의 관계당국에게 관련된 정보를 통보하며, ④ 각 회원국의 National Unit에게 관련된 정보를 전송하여 각 회원국에서의 수사를 지원하며, ⑤ 범죄를 행한 혐의자 또는 공범자의 이름, 가명, 출생일, 출생지, 국적, 성별, 관련된 범죄조직, 기타 특징 등 수집된 정보를 컴퓨터화하여 관리한다.¹⁵¹⁾

(5) 조직구성

유럽폴은 운영위원회, 사무총장, 재정감독관 및 재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¹⁵²⁾

1) 운영위원회(Management Board)

i) 구성

운영위원회는 EU의 각 회원국 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⁵³⁾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부재시 그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될 수 있고, 그 대리인이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다.¹⁵⁴⁾ 운영위원회는 유럽공동체의 위원회(Commission of the EC)가 투표권이 없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유럽공동체 위원회의 대표가 참여함이 없이 회의를 진행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¹⁵⁵⁾ 운영위원과 그의 대리인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각 회원국의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고, 그의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¹⁵⁶⁾ EU이사회의 의장직을 맡는 회원국의 대표가 운영위원회의 의장직을 담당한다.¹⁵⁷⁾

151) 유럽폴협약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참조.

152) 유럽폴협약 제27조.

153) 유럽폴협약 제28조 2항.

154) 유럽폴협약 제28조 3항.

155) 유럽폴협약 제28조 4항.

156) 유럽폴협약 제28조 5항.

157) 유럽폴협약 제28조 6항.

ii) 임무

유럽폴의 목적의 확대, 각국의 법집행기관에서 파견하여 유럽폴에 근무하는 연락관의 수, 연락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의, 자료관리를 규율하는 이행규칙의 입안, 유럽폴이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예를 들면, 미국·캐나다·콜롬비아) 또는 EU의 기구가 아닌 기타 기구(예를 들면, 인터폴 또는 UNDCP)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협정을 채택할 경우에 그 조약의 결정과정에 참여, 정보의 색인체제(index system)의 설계에 관하여 상세한 결정, 자료열람 승인, 공동감독기관의 논평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서 전달, 공동감독기관이 제기한 문제점 검토, 정보시스템에서 법적 수정의 검토를 위한 상세한 절차의 결정, 총장과 부총장의 임명과 해임의 결정에 참여, 사무총장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직원규정의 채택 과정에 참여, 기밀에 관한 협정의 입안과 기밀보호에 관한 규정의 채택에 참여, 예산안 작성에 참여, 5년 재정계획안의 작성, 재정감독관의 임명 및 그의 의무이행에 대한 감독, 재정규칙의 채택에 참여, 본부협정 체결의 승인, 기밀정보 사용허가에 대한 규칙의 채택, 회원국과 유럽폴간의 분쟁, 무인가 또는 부정확한 자료 생성과정의 책임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회원국간의 분쟁의 해결, 유럽폴협약의 개정에 참여, 유럽폴협약의 이행 규정에서 유럽이사회에 의하여 부여된 다른 임무에 대한 책임 등이다.¹⁵⁸⁾ 이외에 전년도 유럽폴 활동에 대한 일반 보고서의 채택, 회원국의 운영상 필요조건과 예산 및 예상된 요원 등을 고려한 앞으로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EU이사회에 제출한다.¹⁵⁹⁾

iii) 운영절차 규칙

Act of the Management Board of Europol of 1 October 1998 laying down Its Rule of Procedure에¹⁶⁰⁾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주요 절차규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각 의장은 적어도 한번은 회의를 개최한다.¹⁶¹⁾ 즉 의장의 임기는 6개월이므로 적어도 6개월에 한번은 회의가 개최된다.

158) 유럽폴협약 제28조 1항 1호-23호.

159) 유럽폴 제28조 10항.

160) OJ C 026, 30/01/1999, pp. 82-85.

- ② 적어도 회의가 시작되기 14일전(특별회의는 일주일 전)에 의장은 잠정적 의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그 의제를 각 회원국의 위원, EU위원회, 유럽폴 사무총장에게 배포한다. 관련된 서류가 적어도 회의가 시작되기 16일전에 유럽폴 본부에 도착한다면 위원, 위원회 또는 유럽폴 사무총장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잠정적 의제로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¹⁶²⁾
-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위원의 3/4이 출석해야 하고, 의결정족수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 그 회의는 종결되고, 차기회의는 가능한 빨리 소집된다. 그 차기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위원의 2/3이다.¹⁶³⁾
- ④ 운영위원회 의장, 위원 또는 과반수 위원이 동의하면 어느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투표를 행하고, 그 투표는 거수, 호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실행된다.¹⁶⁴⁾

2) 사무총장(Director)

유럽폴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유럽연합조약 제6부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상응하여 유럽이사회의 만장일치로 4년의 임기로 임명되고, 한번 재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을 임명한 절차에 상응하여 4년의 임기로 임명된 여러 명의 부총장에 의해서 보좌된다. 사무총장은 유럽폴에게 부여된 업무의 이행, 일상의 행정업무, 유럽폴 직원의 관리(직원의 임명과 해임),¹⁶⁵⁾ 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한 적절한 입안 및 이행, 예산안 작성, 5년 재정계획안 작성 및 예산의 운용, 유럽폴 협약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과한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한다.¹⁶⁶⁾

사무총장은 유럽폴의 법적 대표이고, 그의 임무의 이행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게 책임이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다. 사무총장과 부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회원국의 2/3의 다수결에 의해서 유럽연합조약 제6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상응하여 해임될 수 있다.¹⁶⁷⁾

161) 운영위원회 절차규칙 제4조 1항.

162) 운영위원회 절차규칙 제5조.

163) 운영위원회 절차규칙 제6조 1·2항.

164) 운영위원회 절차규칙 제7조.

165) 유럽폴협약 제30조 2항.

166) 유럽폴협약 제29조 3항.

3) 재정위원회(Financial Committee)와 재정감독관(Financial Controller)

재정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예산 관련 대표로 구성되고, 그 의장은 이사회의 의장국이 담당한다. 재정위원회의 임무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부여한 예산과 재정에 관한 사항, 즉 예산과 재정에 대한 토의, 예산과 재정문제에 관한 감독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보 또는 증거를 사무총장에게 제공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의 원칙, 경제성·효율성의 원칙으로 예산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¹⁶⁸⁾

재정감독관은 어느 한 회원국의 회계감사 출신자를 운영위원회가 임명하고, 그는 오로지 운영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그의 업무는 예산지출의 집행, 지급, 수익 등에 대하여 감시하고, 예산의 건전성, 시스템의 적정성과 응용성, 절차 및 이에 관련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 평가, 조사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총장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¹⁶⁹⁾

(6) 유럽폴 본부 및 회원국간의 협력

1) 연락관의 임무

유럽폴 본부 및 각 회원국간의 국제경찰협력은 연락관(liaison officers)이 수행하고 있다. 연락관은 본국의 National Unit 또는 다른 범집행기관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정보의 수집 및 그 수집된 정보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신속하게 행한다. 특히 조직범죄, 핵물질 밀거래, 국제테러, 마약밀거래 등을 포함한 주요 국제보통범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그 수집된 정보의 신속한 전달로 국제보통범죄의 진압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¹⁷⁰⁾

2) 연락관의 권리의무

167) 유럽폴협약 제29조 6항.

168) Council Act of 18 January 1999 adopting the Financial Regulation applicable to the budget of Europol(OJ C 025, 30/01/1999, pp. 1-16) 제12조.

169) 동 재정규칙 제20조.

170) Joint Action(OJ L 268, 19/10/1996, pp. 2-4) 제2조.

i) 연락관에 대한 유럽폴의 권리의무

유럽폴 사무총장은 연락관에게 필요한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하고,¹⁷¹⁾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들이 요구한 사항의 처리, 필요한 지원의 제공, 정상적인 의무행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 정보의 출처에 관계없이 연락관 및 그 연락관의 본국이 관심있는 정보에 대한 통보 등을 행한다.¹⁷²⁾

ii) 유럽폴에 대한 연락관의 권리의무

유럽폴협약 제5조 7항은 운영위원회가 연락관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정에 따르면, 연락관은 유럽폴의 직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럽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본국의 국내법을 침해함이 없이 유럽폴의 내부규칙에 따라야 하며, 유럽폴협약의 특수한 규정을 제외하고 자료보호에 관하여 본국의 국내법에 따른다.¹⁷³⁾ 아울러 연락관은 유럽폴 내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본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한 유럽폴 사무총장에게 그들이 수행한 업무를 통지하고, 특히, 유럽폴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항, 유럽폴이 본국에 대하여 행한 추가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 그들 활동 모두에 대한 간결한 월간통계 등을 제공한다.¹⁷⁴⁾ 반면에 연락관은 관련된 규정에 상응하여 연락관의 업무에 필요한 여러 자료에 대하여 협의할 권리가 있다.¹⁷⁵⁾

iii) 본국에 대한 연락관의 권리의무

유럽폴협약에서 연락관에 관한 특수한 규정을 제외하고, 연락관은 본국의 법령에 따른다. 연락관은 본국의 법령 및 유럽폴의 행정에 적용되는 규정에 상응하여 유럽폴내에서 본국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하여 본국의 National Unit의 지시에 따른다.¹⁷⁶⁾ 연락관은

171) 유럽폴협약 제5조 9항.

172) Act of the Management Board of Europol of 15 October 1998 concerning the right and the obligation of liaison officers 제5조. OJ C 026, 30/01/1999, pp. 86-88.

173) 연락관의 권리의무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규정 제6조.

174) 연락관의 권리의무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규정 제7조.

175) 유럽폴협약 제5조 5항.

176) 유럽폴협약 제5조 2항.

본국의 National Unit에서 유럽폴로, 유럽폴에서 본국의 National Unit로의 정보교환을 지원하고, 본국에 관한 정보를 유럽폴 요원에게 제공하며, 정보분석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¹⁷⁷⁾

3) 연락관의 파견 및 숫자

각 회원국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연락관을 유럽폴에 파견한다. 회원국에 의해서 유럽폴에 파견한 연락관의 숫자는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그 결정은 언제든지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¹⁷⁸⁾

4) 통 신

National Unit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설치하거나 지정되고, 이 National Unit가 유럽폴과 각 회원국의 법집행기관간의 연락기관이다. 유럽폴과 National Unit간의 통신은 National Unit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과 연락관간에 행해지고, 그 방법은 각 회원국이 유럽폴 본부의 연락관의 사무실에 설치한 장비에 의해서 수행되므로 전화, Fax, e-mail 및 기타 방법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¹⁷⁹⁾

5) 연락관의 특권과 면제

연락관은 가족을 포함하여 그들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권을 향유한다.¹⁸⁰⁾

(7) 범죄정보시스템

유럽폴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저장, 수정, 이용을 위해서 수집된 정보를 컴퓨터화 하여 관리하는 시스템(computerized system of collected information), 즉

177) 유럽폴협약 제5조 3항.

178) 유럽폴협약 제5조 1항.

179) 유럽폴협약 제5조 9항 참조.

180) 유럽폴협약 제5조 8항 및 제41조 2항.

범죄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⁸¹⁾ 이 범죄정보시스템은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¹⁸²⁾ 업무파일(work file)¹⁸³⁾ 및 색인시스템(index system)으로¹⁸⁴⁾ 구성되고,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각 회원국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유럽폴도 제3국, UN 및 인터폴과 같은 조직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및 분석 자료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각 회원국의 National Unit, 각 회원국이 유럽폴에 파견한 연락관, 사무총장, 부총장 및 정당하게 권한이 있는 유럽폴의 요원 등으로 제한되고,¹⁸⁵⁾ National Unit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처리시스템을 제외하고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다른 자동처리시스템에 접속되지 아니한다.¹⁸⁶⁾

데이터의 정정, 보충, 삭제는 그 데이터를 입력했던 Unit가 행하고, 어느 Unit가 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사람에 관한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그 자료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입력반에게 통지된다. 입력반은 지체없이 통지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즉시 정정, 보충, 수정 및 삭제한다. 입력된 데이터가 서로 모순될 때 관련된 Unit가 협의하여 수정한다.¹⁸⁷⁾

181) 유럽폴협약 제3조 1항 5호 및 제6조.

182) 정보시스템은 ① 유럽폴의 관할범죄를 자행한 혐의가 있거나 공범인 사람 또는 ② 그러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및 ③ 종교적인 이유로 범죄를 자행할 수 있는 사람 등에 관한 데이터로 姓, 결혼전 姓, 이름, 가명, 출생일과 출생지, 국적, 性, 변하지 아니할 특이한 신체적 특징, 자행한 범죄, 추정된 범죄, 그 범죄가 행해진 때와 장소, 그 범죄를 행할 때에 이용된 방법, 그 사건과 관련 참고 자료를 처리하는 부서, 범죄조직의 일원이라는 혐의 및 유럽폴이 관할하는 범죄에 대한 유죄 사실 등이 입력될 수 있다. 유럽폴협약 제8조 1·2·3항.

183) 업무파일은 ① 유럽폴의 관할범죄를 자행한 혐의가 있거나 공범인 사람 또는 ② 그러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③ 종교적인 이유로 범죄를 자행할 수 있는 사람, ④ 심리중이거나 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범죄와 관련된 수사에서 증언이 요청된 사람, ⑤ 심리중인 범죄의 피해자였던 사람, ⑥ 어떤 사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자가 그 범죄의 피해자였던 사람, ⑦ 중개자 또는 동료인 사람, ⑧ 심리중인 형사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 ⑨ 유럽폴 관할범죄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자행된 형사범죄, ⑩ 유럽폴 관할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수행하기 위해서 자행된 형사범죄 및 ⑪ 유럽폴 관할의 범죄행위에 대한 면제행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행된 형사범죄 등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유럽폴협약 제2조 3항 2호 2단, 제10조 1항.

184) 유럽폴이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데이터를 말한다. 유럽폴협약 제11조 1항 참조.

185) 유럽폴협약 제7조 1항, 제9조 1항, 11조 2항 및 제12조 2항 참조.

186) 유럽폴협약 제6조 및 제7조-제11조 참조.

187) 유럽폴협약 제9조 2항.

범죄정보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한 데이터인지 여부, 검색, 유럽폴과 개인정보를 주고 받은 내용 등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지정된 감독기관(National Supervisory Body)은 감시 및 데이터의 주체의 권리 침해 여부를 조사하며, 감독의 목적으로 National Unit, 유럽폴에 있는 연락관의 사무실 및 서류 등에 접근할 수 있다.¹⁸⁸⁾ 마찬가지로 유럽폴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저장, 처리 및 사용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럽폴이 전송하는 데이터가 전송가능한 데이터인지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유럽폴의 활동을 검토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공동감독기관(Joint Supervisory Body)이 설치되어 있다.¹⁸⁹⁾

(8) EU 비회원국 및 EU기구가 아닌 국제조직체와의 협력

유럽폴은 제3국(third states)과 EU기구가 아닌 기구(non-European Union-related bodies)와 일정한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정보교환 등을 할 것이다.¹⁹⁰⁾ 여기서 제3국은 EU회원국이 아닌 국가로 볼리비아,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모로코, 노르웨이,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미국 등이고, EU기구가 아닌 기구는¹⁹¹⁾ 인터폴, 유엔마약통제프로그램(UNDCP) 및 국제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를 말한다.¹⁹²⁾

188) 유럽폴협약 제23조.

189) 유럽폴협약 제24조; 데이터의 안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폴협약 제25조 참조.

190) 유럽폴은 EU회원국이 아닌 제3국과 EU의 기구가 아닌 제3의 국제기구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하고자 한다. 유럽폴협약 제10조 4항, 제18조, 제42조; OJ C 026, 30/01/1999, pp. 19-20; OJ C 106, 13/04/2000, pp. 1-2; OJ C 106, 13/04/2000, p. 3.

191) 공법(public law)에 의해서 규율되는 국제기구 또는 그의 부속기구,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한 협정에 기초하여 공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다른 기구 및 인터폴을 의미한다. 유럽폴협약 제10조 4항 5-7호.

192) Council Decision of 27 March 2000 authorising the Director of Europol to enter into negotiations on agreements with third States and non-EU related bodies(OJ C 106, 13/04/2000, p. 1-2) 제2조.

2. Schengen 경찰협력

(1) 연혁 및 성립배경

Schengen 경찰협력은 1984년 독일의 Sarrbrücken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그들 상호간에 접하고 있는 국경에서 사람과 물건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베네룩스 3국(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 이미 1960년 이후에 상호 접하고 있는 국경의 통제를 폐지하였던 지역이 독일과 프랑스까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1985년 6월 14일에 이들 다섯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근처에 있는 룩셈부르크 모젤(Mosel)시의 Schengen이라는 마을에서 단기적으로 국경통제를 철폐하고, 장기적으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 불법이민, 사법·경찰협력 및 역외 국경 통제의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셴겐협정을 서명하였고, 이 마을의 이름을 본떠서 셴겐협정이라고 한다. 이 협정에서 당사국간의 국제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그 당시의 통신수단과 사법공조를 고려하여 각국이 공동으로 범죄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서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는 추적권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등으로 당사국간의 법률과 행정적 규정의 조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1985년 셴겐협정이 장기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역내 국경통제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안조치로 역외 국경통제의 강화 및 역내 국가간에 자유로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범죄자의 이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과 진압 대책의 하나로 경찰협력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였다. 그 구체적인 이행협정은 1989년 12월에 서명하고, 1990년 1월 1일부터 국경통제를 폐지하고자 했으나 동서독 통일문제가 긴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어서 1990년 6월까지 독일의 요청으로 연기되었다.¹⁹³⁾

1990년 6월 19일 셴겐이행협약은 1985년 셴겐협정이 의도했던 목표들에 대하여 상세한 이행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감시권과 추적권 및 SIS 등이다. 아울러 다른 EU회원국이 셴겐협정 및 셴겐이행협정의 가입으로 Schengen acquis에 의하여 셴

193) John Benyon, Lynne Turnbull, Andrew Willis, Rachel Woodward & Adrian Beck, *op. cit.*, p. 134

겐지역이 확대되었다. 즉 1990년 11월 27일 이탈리아, 1991년 6월 25일 스페인과 포르투갈, 1992년 11월 6일 그리스(1999년 12월 13일 전면 적용), 1995년 4월 28일 오스트리아, 1996년 12월 19일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1999년 5월 17일 아이슬랜드와 노르웨이가 Schengen acquis의 이행, 적용 및 발전 등에 관련하여 체류관계 체결 및 2000년 5월 29일 영국이 Schengen acquis의 일정 부분만 적용하기로 함으로서¹⁹⁴⁾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모든 EU 회원국이 쉐겐 Schengen acquis가 적용되게 되었다.

1995년 3월 26일 쉐겐이행협약이 발효됨과 아울러 회원국간의 역내 국경은 사실상 지도상에서 표시된 경계에 불과하고 반면에 역외 국경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었다. Schengen acquis가 유럽연합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EU는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을 표방하는 하나의 걸림돌을 제거한 셈이다.

Schengen 경찰협력의 성립배경은 역내 국경통제가 폐지되고, 사람과 상품이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할 때 야기되는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탄생하였다. 즉 역내 국경의 폐지와 역외 국경통제의 강화, 공동 국경지역에서 경찰협력 및 정보협력의 강화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능력의 제고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2) 목 적

Schengen 경찰협력의 목적은 역내 국경의 폐지에 따른 범죄자의 자유이동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의 추적·감시권, 통신 및 SIS에 의한 정보협력으로 형사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대한 상호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¹⁹⁵⁾

(3) 법적 지위

EU회원국간의 국경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타난 Schengen

194) 쉐겐이행협약 중 경찰협력에 관련된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 감시권과 관련된 42조 및 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제47조 2항 (c)는 제외함) 및 기타 등등이다. Council Decision of 29 May 2000 concerning the reques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o take part in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Schengen acquis 제1조 참조; OJ L 131, 01/06/2000, pp. 43-47.

195) 쉐겐이행협약 제39조 1항 참조.

경찰협력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능력의 고양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협력 강화의 목적으로 탄생한 유럽폴과 같은 EU간의 정부간기구로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비정부간 기구는 더 더욱 아니다. 즉 각 당사국에 Schengen 경찰협력을 이행하는 Central Body, SIS의 국내부서, 회원국간의 양자협정을 통한 연락관의 상호교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SIS의 본부가 있고, 정확한 법적 지위 등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Schengen 경찰협력체제는 중앙기구로 센겐에 관련된 집행위원회와 센겐정보시스템, 각 회원국에 감시권과 추적권에 관한 대외 연락창구 및 센겐정보시스템의 국내부서가 각국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회원국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위한 EU체제내의 경찰협력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4) 내 용

유럽연합이 역내국경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당국간에 특정 및 불특정 기간동안 연락관의 파견, 범죄의 예방과 진압 또는 공공질서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정보의 교환, 형사문제에 있어서 경찰협력 및 사법공조, 역외국경 감시에 책임이 있는 당국에 의해서 수행되는 임무를 목적으로 당사국간에 경찰협력이 관련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¹⁹⁶⁾ Schengen 경찰협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監視權이고, 다른 하나는 追跡權이다.

1) 감시권

(i) 의 의

A국에서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를 행했다고 추정되는 자를 감시하고 있던 경찰관은 그 범죄자가 A국의 국경을 통과하여 B국의 영토로 진입하였을 때에도 B국의 영토에서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ii) 감시권의 행사조건

196) 센겐이행협약 제46조 및 제47조.

- ① 감시를 행하는 경찰관은 셴겐이행협약, 감시를 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준수 및 관할지방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¹⁹⁷⁾
- ② 각 체약국의 중앙기관(central body)에게 감시권의 행사에 대한 요청을 해야 관할권이 있다.¹⁹⁸⁾
- ③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시를 행하는 경찰관은 감시허가에 대한 서류를 휴대하여 항상 공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¹⁹⁹⁾
- ④ 사전허가를 승인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는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허용된다.²⁰⁰⁾ 여기서 일정한 범죄는 암살, 살인, 강간, 방화, 위조, 무장강도 및 장물수뢰, 금품강요, 납치 및 인질, 인신매매, 불법적인 마약물질 매매, 무기 및 폭발물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사용, 독극성 및 위험물질의 불법적 수송 등이다.²⁰¹⁾ 다만, 감시가 진행중에 국경을 통과했다는 것을 그 국가의 중앙기관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고, 긴급한 공조요청과 사전허가없이 국경을 통과한 개괄적인 근거 등을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²⁰²⁾
- ⑤ 감시를 행하는 경찰관은 감시하는 동안에 총기를 휴대할 수 있으나 합법적인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총기의 사용은 금지된다.²⁰³⁾ 다만, 어느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달리 결정하면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²⁰⁴⁾
- ⑥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개개인의 집과 사유지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된다.²⁰⁵⁾
- ⑦ 감시를 행하는 경찰관은 감시하에 있는 자를 체포하거나 체포를 시도하지 않는다.²⁰⁶⁾
- ⑧ 감시를 행하는 경찰관의 모든 활동은 감시가 행해지고 있는 국가의 당국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 경찰관 자신이 직접 출두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⁰⁷⁾

197) 셴겐이행협약 제40조 3항 (a).

198) 셴겐이행협약 제40조 1·5항.

199) 셴겐이행협약 제40조 3항 (b)와 (c).

200) 셴겐이행협약 제40조 2항.

201) 셴겐이행협약 제40조 7항.

202) 셴겐이행협약 제40조 2항.

203) 셴겐이행협약 제40조 3항 (d).

204) 셴겐이행협약 제40조 3항 (d).

205) 셴겐이행협약 제40조 3항 (e).

206) 셴겐이행협약 제40조 3항 (f).

⑨ 감시가 수행된 국가의 관계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범죄자를 감시한 그 경찰관은 형사소송절차를 포함하여 그가 참여한 감시활동에 속한 심문 등을 지원한다.²⁰⁸⁾

(iii) 감시권의 객체에 해당하는 범죄

감시가 가능한 범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이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셴겐이행협약 제40조 7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이어야 한다.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는 범죄인인도의 요청국과 피요청국의 국내법이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적어도 최고 1년 기간의 구금명령(detention order) 또는 그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고, 유죄의 판결과 감옥형이 선고되거나 또는 형벌이 부여된 요청국에서 구금명령이 행해졌을 때 적어도 그 기간은 4개월이어야 한다.²⁰⁹⁾

(iv) 감시권의 행사자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셴겐이행협약 제41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국의 경찰관과 세관원이다.²¹⁰⁾ 다만 세관원은 셴겐이행협약 제40조 7항 (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감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셴겐이행협약 제40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 중 세관당국의 물적 관할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v) 감시권의 범주

감시의 대상자가 국경을 통과한 후에 국경을 통과한 사실에 대하여 통지하고, 그에 대한 공조요청 등을 했으나 5시간 동안 감시의 계속 여부에 대한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에 그 감시는 중단된다.²¹¹⁾

207) 셴겐이행협약 제40조 3항 (g).

208) 셴겐이행협약 제40조 3항 (h).

209)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2조 1항 및 셴겐이행협약 제40조 1항 참조; 베네룩스 3국간에는 적어도 3개월이어도 감시권의 객체에 해당된다. 셴겐이행협약 제59조 및 1962년 6월 27일 서명되고, 1967년 12월 11일에 발효된 베네룩스 3국간의 형사문제에 있어서 범죄인인도 및 사범공조에 관한 조약 제2조 1항.

210) 셴겐이행협약 제40조 4항 (a)-(e) 참조.

2) 추적권

(i) 의 의

A국에서 일정한 유형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현행범, 그 범죄의 공범 및 구금, 구류 또는 형을 복역중인 자가 B국의 영역으로 도망중이고, 그 도망중인 사실을 무선, 전화, 텔렉스 및 기타 통신수단으로 B국의 관할당국에게 가능한 빨리 통지할 수 없거나 또는 적절한 시간내에 B국의 경찰에게 그 추적을 인계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B국의 사전 허가 없이도 B국 영토내에서 그 추적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²¹²⁾

(ii) 추적권의 행사조건

- ① 추적을 행하고 있는 경찰관은 센겐이행협약 제41조의 규정, 추적이 수행중인 국가의 국내법을 준수하고, 추적이 행해지고 있는 관할지방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²¹³⁾
- ② 추적은 오로지 육지의 국경에 한정된다.²¹⁴⁾ 추적이 육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라인강, 모젤강 및 북해에서 배, 보트 및 헬기로 추적할 수 없다.
- ③ 추적을 행하고 있는 경찰관은 유니폼, 완장, 자동차에 부착된 스티커 등에 의해서 쉽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고, 자동차에 경찰신분을 표시해 주는 부착물도 없이 일반인의 복장으로 추적하는 것은 금지되고, 언제든지 공적활동을 수행 중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²¹⁵⁾
- ④ 추적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나 그 무기는 합법적인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이 금지된다.²¹⁶⁾
- 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개개인의 집과 사유지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된다.²¹⁷⁾

211) 센겐이행협약 제40조 2항.

212) 센겐이행협약 제41조 1항.

213) 센겐이행협약 제41조 5항 (a).

214) 센겐이행협약 제41조 5항 (b).

215) 센겐이행협약 제41조 5항 (d).

216) 센겐이행협약 제41조 5항 (e).

217) 센겐이행협약 제41조 5항 (c).

- ⑥ 추적경찰관은 그 도망자를 체포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추적의 중지예 대한 요청이 없고, 지방관할당국이 충분히 신속하게 인계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도망자를 일단 체포하면, 지방관할당국에 그를 인계하기 위하여 보안수색이 가능하고, 인계되는 동안 수갑을 채울 수 있으며, 휴대한 물건은 압수될 수도 있다.²¹⁸⁾
- ⑦ 추적활동이 끝난 후에 추적경찰관은 추적이 행해진 국가의 지방관할당국에 출두하여 그의 임무를 설명해야 한다. 즉 추적경찰관의 활동 상황이 적절하게 해명이 될 때까지 지방관할당국의 처분에 따르고, 추적은 했지만 그 도망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²¹⁹⁾
- ⑧ 추적이 행해진 국가의 관계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그 추적경찰관은 법적 소송절차를 포함하여 추적경찰관이 참여한 추적활동에 속한 심문 등을 지원한다.²²⁰⁾

(iii) 추적의 객체에 해당하는 범죄

추적이 가능한 범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범죄인인도가 가능하여야 한다.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는 감시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동일하다. 다른 하나는 일정한 유형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현행범 또는 그 공범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정한 유형의 범죄는 암살, 살인, 강간, 방화, 위조, 무장강도 및 장물수뢰, 금품강요, 납치 및 인질, 인신매매, 불법적인 마약물질 매매, 무기 및 폭발물에 관한 법률위반, 폭발물 사용, 독극성 및 위험물질의 불법적 수송, 사망 또는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사고 후의 뺑소니 등이다.²²¹⁾

(iv) 추적권의 행사자

추적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셴겐이행협약 제41조 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국의 경찰관과 세관원이다.²²²⁾ 세관원은 셴겐이행협약 제41조 4항 (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218) 셴겐이행협약 제41조 2항 (a) 및 5항 (f).

219) 셴겐이행협약 제41조 5항 (g).

220) 셴겐이행협약 제41조 5항 (h).

221) 감시권의 대상 범죄와 동일하나 추적권에서 사망 또는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사고 후의 뺑소니가 첨가되었을 뿐이다. 셴겐이행협약 제41조 4항.

222) 셴겐이행협약 제41조 7항 (a)-(e) 참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추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조 (b)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 중 세관당국의 물적 관할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v) 추적의 범위 및 추적자의 체포권 여부

추적의 범위는 국경을 통과한 지점에서부터 일정한 공간적 범위 또는 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고, 추적자가 도피자에 대한 체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²²³⁾ 각 당사국은 추적의 범위 및 체포권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국이 선언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선언은 수정이 가능하다.²²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① 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는 각 국가의 국경을 통과한 후에 10km 이내에 추적 및 체포가 가능하다.²²⁵⁾ ② 벨기에 영토에서 프랑스와 독일 경찰은 육지에서 일정한 시간과 지역의 제한없이 추적이 가능하고, 독일 경찰은 30분 이내에 체포도 가능하나 프랑스 경찰은 체포권이 없다.²²⁶⁾ ③ 독일은 자국영토에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및 프랑스 경찰이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현행범에 대하여 추적과 체포에 대하여 시간과 거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²²⁷⁾ ④ 독일 경찰은 네덜란드 국경통과 지점에서 10km 이내에서, 룩셈부르크에서는 셴겐이행협약 제41조 7항 범죄의 현행범에 대해서 체포가 가능하다.²²⁸⁾ ⑤ 프랑스 영역에서 타국 경찰관이 추적은 가능하지만 체포 권한은 배제하고 있고, 프랑스 경찰은 룩셈부르크에서 추적은 가능하지만 체포권은 없고, 벨기에서도 추적은 가능하지만 체포권의 여부는 결정되지 아니하였다.²²⁹⁾

223) 셴겐이행협약 제41조 2항 (a) 및 3항.

224) 셴겐이행협약 제41조 제9항.

225) 베네룩스 3국간의 형사문제에 있어서 범죄인인도 및 사범공조에 관한 조약 제27조 1·2·4항; 네덜란드는 국경에서 20km까지 추적은 가능하다. Julian Schutte, *op. cit.*, p. 147.

226) Chantal Joubert & Hans Bevers, *op. cit.*, p. 254.

227) *Ibid.*, p. 307; Michael Santiago, *op. cit.*, p. 35 참조.

228) *Ibid.*, p. 304.

229) *Ibid.*, pp. 305-306; 현재(2001. 11)을 기준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당사국이 셴겐이행협약 제41조 9항에 의한 선언을 참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3) 감시 및 추적의 협력기관 및 통신수단

Schengen 경찰협력은 당사국의 대외 협력기관, 즉 중앙기관(central body)을 통해서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적절한 시간 내에 경찰협력이 행해질 수 없다면 지방관할당국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²³⁰⁾ 각 당사국의 중앙기관은 다음과 같다. 원 가입국인 벨기에 Commissariat général de la Police judiciaire, 독일 Bundeskriminalamt, 프랑스 Direction centrale de la Police judiciaire, 룩셈부르크 Procureur général, 네덜란드 Landelijk Officer van Justitie 등이다.²³¹⁾ 셴겐이행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가입한 국가로 이탈리아는 Central Directorate of the Criminal Police, 스페인 Directorate-General of Police, 포르투갈 Directorate-General of the Criminal Police, 그리스 Directorate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Order, 오스트리아 Directorate-General for Public Security, 덴마크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Police, 핀란드 the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스웨덴 Swedish National Police Board 등이다. 영국의 중앙기관은 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이지만 추적권은 육지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 감시권은 적용된다.²³²⁾

통신수단은 국제협정, 주어진 지방적 상황 및 기술적 능력을 고려하여 국경지역에서 적절한 시간 내에 각 당사국의 경찰 또는 관세당국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무선, 텔렉스 및 기타 다른 통신수단에 의해서 통신이 가능하다.²³³⁾

4) 감시 및 추적 경찰관의 책임 및 보상(배상) 문제

A국의 경찰관이 B국의 영토에서 감시와 추적 중에 발생한 손해는 감시와 추적이 행해지고 있는 B국의 경찰관으로 간주하고 B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책임이 있다.²³⁴⁾ B

230) 셴겐이행협약 제39조 3항.

231) 셴겐이행협약 제40조 5항 (a)-(e).

232) Council Decision of 29 May 2000 concerning the reques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o take part in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Schengen acquis 제1조 (a) (i). OJ L 131, 01/06/2000, p. 43-47.

233) 셴겐이행협약 제44조.

234) 셴겐이행협약 제42조 및 제43조 1항.

국 영토에서 감시와 추적을 행하는 경찰관이 야기한 책임은 B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그 경찰관의 국가에게 책임이 있고, 그 손해는 그 경찰관 자신에 의해서 야기된 손해라는 조건으로, 즉 국가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손해를 국가가 보상한다는 조건으로 A국은 B국의 희생자 또는 보상·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충분히 총액으로 변제해야 한다.²³⁵⁾

5) 기 타

감시·추적의 객체에 해당하는 범죄, 그의 내용, 범위 및 연락관의 파견 등에 대해서 당사국간의 협정 및 추가적 조치로 국제경찰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²³⁶⁾

(5) 셴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

1) 의의 및 목적

SIS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당사국이 지정한 당국이 회원국내에서 수행된 국경에서 조사와 통제, 경찰 및 세관 조사 등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과 물건에 관한 보고, 비자발행 목적, 거주허가서, 사람의 자유이동과 관련된 이 협약 규정 적용의 맥락에서 외국인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동검색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이다.²³⁷⁾ SIS는 당사국의 국가안보를 포함하여 공공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전송된 정보를 이용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람의 자유이동에 관련된 셴겐이행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2) 구 성

셴겐정보시스템은 각 당사국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내부서(national section)와 당사국들이 공동위험부담(joint liability for risks)으로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그 운영 책임은 프랑스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술지원부(technical support function)로 구성되어 있다.²³⁸⁾

235) 셴겐이행협약 제43조.

236) 셴겐이행협약 제40조 6항, 제41조 9·10항 및 제47조.

237) 셴겐이행협약 제92조 1항 및 제93조.

3) 데이터의 내용

(i) 사용 목적 및 동일성

SIS의 자료는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자료조사도 오로지 업무 이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²³⁹⁾ 자료의 복사도 SIS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당국에 의해서 직접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개개의 자료가 지니고 있는 일정한 유형 이외의 목적(즉, 감시 목적의 자료가 범죄인인도 목적의 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다만, 급박하고 중대한 공공 질서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필요성 또는 중대한 범죄를 방지할 목적이 있다면 사전에 보고당사국의 허가를 얻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위의 목적 이외의 자료 사용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과 관련하여 오용한 것으로 간주된다.²⁴⁰⁾

국내부서는 자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설치한 기술지원부의 의정서와 절차를 준수하여 창설되었으므로 각 당사국의 국내부서의 자료는 다른 당사국의 국내부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²⁴¹⁾

(ii) 종 류

i) 사람에 관련된 데이터

사람에 관련된 자료는 범죄인인도의 목적으로 수배된 사람,²⁴²⁾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추방된 자, 공공정책 또는 국가안보를 침해한 자,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 또는 혐의가

238) 셴겐이행협약 제92조; 기술지원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에 소재하고 있다; 각 당사국이 설치한 국내부서와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기술지원부의 구체적 조직구조는 비밀자료로 분류되어 있어서 소개할 수 없다. OJ L 239, 22/09/2000, p. 459 참조.

239) 셴겐이행협약 제101조 3항 및 102조 4항.

240) 셴겐이행협약 제102조.

241) 셴겐이행협약 제92조 2항.

242) 수배된 사람의 경우 (a) 체포요구서를 발행한 당국, (b) 동일한 효력이 있는 체포영장 또는 문서, 또는 집행적 판결 여부, (c) 범죄의 성질과 법적 유형, (d) 시간, 장소, 보고된 사람에 의해서 그 범죄에 참여한 정도를 포함해서 그 범죄가 행해졌던 상황 묘사, (e) 그 범죄의 가능한 결과 등에 관한 본질적인 정보를 가장 빠른 방법으로 피요청국에게 보내야 한다. 셴겐이행협약 제95조 2항.

있는 자, 적어도 1년 이상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은 자, 마약사범), 실종자, 잠정적으로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 목격자, 국제사법공조 및 기타 목적으로 소환된 사람, 형사절차 또는 공공정책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이다.²⁴³⁾ 그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a) 이름과 성, 따로 기재가 가능하면 가명, (b) 어느 특정한 객관적이고 영구적인 신체적 특징, (c) 두 번째 姓의 첫 글자, (d) 출생일과 출생지, (e) 性, (f) 국적, (g) 무장 여부, (h) 폭력성 여부, (j) 보고한 목적, (j) 취해야 할 조치 등이다.²⁴⁴⁾ 따라서 건강과 성생활을 뿐만 아니라 인종, 정치적 견해, 종교적 또는 기타 다른 신념을 드러내는 개인 자료 등은 '1981년 1월 28일 개인자료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 보호에 관한 유럽이사회의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f 28 January 1981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제6조에 따라서 참고로 언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ii) 목적물에 관한 데이터

형사소송절차에서 체포와 증거의 목적으로 획득한 목적물에 관한 데이터는 도난, 횡령 또는 분실된 50cc를 초과한 자동차(오토바이가 포함됨), 750kg를 초과한 트레일러와 이동주택, 총기, 서명이 없는 문서,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 증명서, 유가증권 등이다.²⁴⁵⁾

iii) 보유 기간 및 보고의 효력

243) 형사범죄자를 기소할 목적과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목적으로 신중한 감시(discreet surveillance) 또는 상세한 조사(specific check)가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자가 극도로 중대한 범죄를 자행할 고의 또는 범행중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실질적 징후가 있거나, 전체적인 평가가 장차 극도로 중대한 범죄를 자행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공한 경우 및 역내·역외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시하는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 국경에서 조사하는 경찰은 (a) 보고된 사람 또는 자동차가 발견된 사실, (b) 조사된 장소, 시간 또는 이유, (c) 여행의 경로와 목적 (d) 관계가 된 자가 동반한 사람 또는 자동차의 점유자, (e) 사용된 자동차, (f) 수행된 목적 (g) 사람 또는 자동차가 발견된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수집되어 보고당사국에게 전송된다. 셴겐이행협약 제99조.

244) 셴겐이행협약 제94조 3항

245) 셴겐이행협약 제100조 3항.

개인의 소재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자료는 그 자료가 제공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간이다. 개인자료가 SIS에 포함된 이후 3년 이내에 보고당사국에 의해서 검토되고,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기술지원부에 연락하여 그 보유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사람 또는 자동차에 관한 연장 기간은 1년이고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상응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²⁴⁶⁾ 위에서 언급된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최고 10년간 보유할 수 있으나 신분증에 관련된 데이터 및 은행수표는 최고 5년, 트레일러와 자동차는 최고 3년이다.²⁴⁷⁾

셴겐이행협약 제95조에 상응하여 SIS에 보고된 사람은 1957년 유럽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 또는 베네룩스 3국간의 형사문제에 있어서 범죄인인도 및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 제15와 1974년에 수정된 동 조약의 의정서에 규정된 긴급체포의 요구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²⁴⁸⁾ 따라서 보고를 행하기 전에 보고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피요청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체포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보고당사국이 의심이 간다면 관련 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²⁴⁹⁾

iv) 데이터의 수정·첨가·삭제 등

각 당사국이 SIS의 국내부서에 주된 책임이 있는 당국을 지정하고, 그 당국을 경유하여 보고를 하고, 보고당사국이 그 자료에 대한 訂正, 보충, 수정, 삭제 등의 권한이 있다.²⁵⁰⁾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로 부정확한 자료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당사국은 보고당사국에게 가능한 빨리 그 사실을 알리고, 보고당사국은 그 보고를 검토한 후에 지체없이 수정 또는 삭제한다.²⁵¹⁾ 보고된 내용이 당사국간에 합의에 따른 내용이 아니라면 그 보

246) 셴겐이행협약 제112조.

247) 셴겐이행협약 제113조 1항.

248) 셴겐이행협약 제64조.

249) 셴겐이행협약 제95조 2항; 아울러 피요청국은 SIS의 국내부서 자료에 그 보고와 관련되어 체포를 금지하는 메모가 그 자료가 삭제될 때까지 따라다닐 수도 있다. 만약 어느 당사국이 체포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편법에 의한 체포에 대한 특별이유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 메모는 그 보고가 첨부된 후에 24시간 이내에 삭제되어야 한다.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그 보고서에서 강조된 사실의 복잡성에 의해서 정당화될 때에는 24시간의 시간적 제약은 일주일로 연장될 수 있다. 셴겐이행협약 제95조 3항.

250) 셴겐이행협약 제106조 1항 및 제108조 1·2항.

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사국은 공동감독기관에게 그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동감독기관은 ‘경찰부분에서個人資料 사용을 규율하는 1987년 9월 17일 유럽장관위원회의 권고’(Recommendation No R(87) 15 of 17 September 1987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Regulating the Use of Personal Data in the Police Sector)를 고려하여 셴겐이행협약과 ‘1981년 1월 28일에 체결된個人資料 자동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이사회의 협약’ 및 기술지원부에 책임이 있는 당사국, 즉 프랑스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처리된다.²⁵²⁾

이미 보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한 당사국과 합의하면 다른 당사국은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참가할 수 있고, 삭제된 자료는 기술지원부에서 1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 동안 그 자료의 정확성과 합법성은 계속적으로 검토의 목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며,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완전히 삭제된다.²⁵³⁾

4) 데이터에 대한 접근, 검색 및 각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검색은 국경에서 조사하는 당국, 각 당사국에서 경찰 및 세관 조사를 수행하는 당국 등이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고, 당사국에 설치된 감독기관과 공동 감독기관도 각각 SIS의 국내부서와 기술지원부에 조사의 목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있다.²⁵⁴⁾ 국내부서의 자료는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으나 다른 당사국의 국내부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²⁵⁵⁾ 자료접근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으로 규율되며, SIS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관계당국의 목록은 집행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²⁵⁶⁾

각 당사국이 SIS 국내부서에 취해야 할 조치는²⁵⁷⁾ 첫째, 허가가 없는 자가 ① 개인자

251) 셴겐이행협약 제106조 2항.

252) 셴겐이행협약 제106조 제3항 및 제115조 1항.

253) 셴겐이행협약 제107조 및 113조 2항.

254) 셴겐이행협약 제101조 1항, 제114조 1항 및 제115조 2항.

255) 셴겐이행협약 제92조 2항.

256) 셴겐이행협약 제101조 1·2·4항.

257) 셴겐이행협약 제118조.

료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컴퓨터에 대한 접근 방지(기기 접근 체크), ② 자료매체(data media)의 읽기·복사·수정·삭제 방지(자료매체 통제), ③ 자료접근과 개인자료의 협의, 수정 또는 삭제 방지(자료 접근 통제) 및 ④ 자료자동처리시스템의 전송장치의 사용을 방지한다(사용의 통제).

둘째, 허가 받은 자가 ① 자동처리시스템의 사용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만 오직 접근 보장(접근의 통제), ② 개인자료가 자료전송장치에 의해서 전송되는 것을 체크하고 당국이 그것에 대한 입증(전송의 통제), ③ 개인자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자동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는지 귀납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 입력의 통제)의 가능성 보장 및 ④ 개인자료가 자료의 전송 및 자료매체에 전달하는 도중에 읽기, 복사, 수정 또는 삭제되는 것을 방지한다(자료전달의 통제).

셋째, 각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서비스(각종 조회 등)를 전송할 때 자료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는 공동감독기관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특별히 보안 조사할 자격이 있는 자를 SIS의 국내 부서에 지정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SIS의 기술지원부에 책임이 있는 프랑스는 위에서 언급된 필요한 조치를 기술지원부에 대하여 취해야 한다.

5) 데이터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 및 감독기관

보고당사국이 SIS에 있는 데이터의 정확성, 합법성 및 업그레이드 등에 책임이 있다.²⁵⁸⁾ 각 당사국은 SIS의 국내데이터파일의 사용으로 개인에게 야기한 손해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책임이 있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오류의 자료가 보고당사국에 의해서 포함된 경우에도 보고당사국의 국내법에 상응하여 책임이 있다.²⁵⁹⁾ 따라서 모든 사람은 감독기관에게 SIS에 있는 자료 및 그 사용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요청이 행해진 당사국의 국내법이 규율한다.²⁶⁰⁾ 만약 그 자료가 다른 당

258) 셴겐이행협약 제105조.

259) 셴겐이행협약 제116조 1항.

260) 셴겐이행협약 제114조 2항; 셴겐이행협약 제114조와 제115조는 회원국간 균등한 데이터보호 수준을 정하지 못하여 그 보호의 정도가 다양하다는 비판도 있다. Shiraz Mahmood,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n Inequitable Data Protection Regime", *International*

사국에 의해서 보고되었다면 그 조사는 그 당사국의 감독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수행된다. 또한 어느 누구도 자기에 관한 부정확한 자료를 수정하게 하거나 또는 법률적으로 부정확한 자료는 삭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자국의 국내법원 또는 관계 당국에게 그에 관한 정보의 수정, 삭제, 정보제공 또는 보상 등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²⁶¹⁾ 만약 제기된 소송의 상대방이 보고당사국이 아니고, 피요청국도 이 협약에 위반되게 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요청국은 보고당사국으로부터 지불될 총액으로 보상받는다.²⁶²⁾

SIS의 감독기관은 SIS의 국내부서를 감독하는 기관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기술지원부를 감독하는 공동감독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SIS의 국내부서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자료의 독립적 감독, 자료의 처리과정 및 그 사용에 있어서 관련된 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공동감독기관(joint supervisory authority)은 각 당사국 감독기관의 대표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당사국은 한 표의 투표권이 있다. 공동감독기관은 SIS활동 중에 제기되는 적용 또는 해석의 문제에 대한 조사, 당사국의 국내감독기관에 의한 독자적인 감독권 행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또는 SIS의 접근권 행사 중에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 및 그 문제점의 공동해결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제안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²⁶³⁾ 감독은 ‘경찰부분에서個人資料 사용을 규율하는 유럽장관위원회의 1987년 9월 17일의 권고’를 고려하여 셴겐이행협약과 ‘1981년 1월 28일에 체결된 개인정보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이사회의 협약’ 및 프랑스 국내법에 상응하여 수행된다.²⁶⁴⁾

(6) Schengen 경찰협력과 EU와의 관계

Schengen acquis와 EU와의 관계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Schengen

Journal of Refugee Law, Vol. 7, No. 2, 1995, p. 184.

261) 셴겐이행협약 제110조 및 제111조.

262) 셴겐이행협약 제116조 2항.

263) 셴겐이행협약 제115조 3항; 공동감독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국내감독기관이 그들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관에게 전달된다. 셴겐이행협약 제115조 4항.

264) 셴겐이행협약 제115조 1항.

acquis는 처음에 EU회원국 중 몇몇 국가만이 적용되었으나 현재(2001. 11)는 EU의 회원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쉐겐이행협약 제140조 1항에서도 EU회원국만이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Schengen acquis 유럽연합 체제로의 통합에 관한 의정서에서 Schengen acquis는 유럽연합조약의 제6부에 기초한 활동으로 간주하고, Schengen acquis에 따른 협력은 유럽연합의 제도적·법률적 체제 내로 편입된다.²⁶⁵⁾ 따라서 쉐겐이행협정에 의해서 설립된 집행위원회는 암스테르담조약이 발효되는 날자에 유럽이사회로 대체되고, 암스테르담조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행해진 결정은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에게 암스테르담조약이 발효(1999. 5. 1)된 즉시 효력이 있다.²⁶⁶⁾

셋째, 쉐겐이행협약의 규정도 EU협약과 양립할 수 있으면 적용되고, 양립할 수 없다면 적용되지 아니한다.²⁶⁷⁾ 즉 EU체제내에서 쉐겐이행협약도 존재하는 것이다.

넷째, ECJ는 법과 질서 및 역내 안전 보호에 관련된 조치 또는 결정에 관하여 관할권은 없다.²⁶⁸⁾ Schengen acquis의 각 규정에 대한 해석권도 ECJ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 같다.²⁶⁹⁾

(7) 제3국 및 국제조직체와의 관계

Schengen acquis에서 EU회원국이 아닌 제3국, 인터폴 및 UN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범죄정보의 공유에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²⁷⁰⁾ 다만 국경통제에 관하여 제3국과 협상을 개시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게 적절한 시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회원국의 사전동의가 없이는 국경통제를 간소화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⁷¹⁾

265) Schengen acquis가 유럽연합 체제로의 통합에 관한 의정서 제1조와 제2조.

266) Schengen acquis가 유럽연합 체제로의 통합에 관한 의정서 제2조; 영국은 2000년 6월 1일부로 Schengen acquis의 일부 규정만 효력이 있다.

267) 쉐겐이행협약 제134조.

268) Schengen acquis가 유럽연합 체제로의 통합에 관한 의정서 제2조 1항.

269) Malcolm Anderson, Monica den Boer, Peter Cullen, William C. Gilmore, Charles D. Raad & Neil Walker, *op. cit.*, p. 63 주 23 참조; Shiraz Mahmood, *op. cit.*, p. 183.

270) 쉐겐이행협약 제101조; Souheil El Zein, *op. cit.*, p. 21.

3.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의 비교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은 EU라는 지역기구의 회원국간에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형사사법공조체제로서 사법과 국내문제(justice and home affairs)에 속한다는 점, 국제경찰협력의 단계 중 대협력의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 EU이사회의 결정·결의·권고·선언 등이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 협력의 채널은 외교적인 경로가 아니라 실무당국간의 협력이라는 점, 컴퓨터망·전화·무전·fax 등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경찰협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범죄정보시스템이 있으므로 정보협력도 행하고 있다는 점, 양자의 데이터보호를 위해서 국내 및 공동감독기관이 있다는 점 등이 같으나 다음과 같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발전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유럽폴은 인터폴을 모델로 하여 Trevi Group이 마약관련 범죄 및 특수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회원국간의 정보교환 등을 위한 EDU를 창설한 후에 점차 그 관할범위를 확대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반면에 Schengen 경찰협력은 베네룩스 3국이 1962년에 체결한 베네룩스 3국간의 범죄인인도와 사법공조에 규정된 경찰의 추적권을 기초로 1985년 셴겐협정과 1990년 그 이행협약에서 역내국경통제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Schengen 경찰협력이 나타났고, EU회원국들이 순차적으로 가입하면서 Schengen acquis의 적용지역이 확대되었으며 결국에는 EU체제로 편입되게 된 것이다.

둘째, 법적 근거에 차이가 있다. 유럽폴은 1992년에 서명된 유럽연합조약 제6부 제 K.1조 9항을 근거로 1993년 6월 EDU설치에 관한 장관협정, 1995년 3월과 1996년 12월의 EDU의 관할권확대에 관한 공동조치, 1995년 7월의 유럽폴협약, 유럽연합조약을 개정한 암스테르담조약(제29조·제30조), 2000년 11월 유럽폴협약의 제2조와 그 부속서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및 기타 등이다. 반면에 Schengen 경찰협력은 1985년 셴겐협정, 1990년 그 이행협정, 신가입국의 가입의정서, Schengen acquis가 유럽연합 체제로의 통합에 관련된 의정서 및 기타 등이다.

셋째, 협력의 성격과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유럽폴은 본질적으로 인터폴과

271) 셴겐이행협약 제136조 1·2항.

같이 정보협력이 주된 임무이고, 암스테르담조약에서 특수한 범죄수사를 위해서 공동수사팀도 구성되어 있으나 다른 회원국의 형사관할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Schengen 경찰협력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추적, 범죄를 행할 개연성이 있는 자에 대한 감시권이다. 따라서 추적·감시권을 행사중에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서 그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대비해서 쉐겐이행협약에서 그 책임의 조건과 보상 또는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

넷째, 협력채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유럽폴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설치된 National Unit와 유럽폴 사무국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국 출신의 연락관과의 협력, 회원국의 National Unit간의 협력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Schengen 경찰협력은 쉐겐이행협약에서 지정된 중앙기관(central body)과 추적·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당국,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당국간의 직접적인 협력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조직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유럽폴은 운영위원회, 사무총장, 재정감독관 및 재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Schengen 경찰협력은 Schengen acquis에서 경찰협력에 관한 사항만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Schengen 경찰협력에서는 특별한 조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유럽이사회 및 SIS 등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연락관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은 같으나 법적 근거 및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유럽폴에서 연락관은 유럽폴과 연락관의 본국과의 경찰협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그 근거도 유럽폴협약에서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Schengen 경찰협력에서 연락관은 쉐겐이행협약 제47조를 근거조항으로 하여 양자협정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연락관은 독립적인 경찰활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교환, 경찰협력의 지원, 법률적 자문 역할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²⁷²⁾

일곱째, 비회원국 및 여타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유럽폴은 비회원국(제3국) 및 UN과 같은 EU기구가 아닌 기구와의 협력을 위해서 일정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협상권한을 유럽폴 사무총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반면에 Schengen 경찰협력은 EU회원국이 아닌 제3국 및 UN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같은 점을 도표로 그리면 <표 4>과 같다.

272) 쉐겐이행협약 제47조 참조.

<표 4>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과의 비교

사항	종류	유럽폴	Schengen 경찰협력
발전과정		마약관련 범죄에 관한 정보협력기구인 EDU가 관할범위를 확대하면서 유럽폴로 발전함	베네룩스 3국간의 경찰협력의 범위가 EU회원국의 가입확대로 EU체제로 편입됨
법적 근거		유럽연합조약, 장관협정, 공동조치, 유럽폴협약, 암스테르담조약, 유럽폴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셴겐협정, 그 이행협정, 신가입국의 가입의정서, Schengen acquis가 유럽연합체제로의 통합에 관한 의정서
협력의 성격과 그 내용		정보협력, 공동수사팀, 다른 회원국의 형사관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추적·감시, 다른 회원국의 형사관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침해시 그 책임과 보(배)상
협력채널		National Unit, 자국출신의 연락관과의 협력, National Unit간의 협력	Central body간의 협력, 추적·감시권을 행사하는 관할당국 및 긴급한 경우에 관할지방당국간의 협력
조직구성		운영위원회, 사무총장, 재정감독관, 재정위원회	유럽이사회, SIS
연락관제도의 법적 근거와 그 내용		유럽폴협약, 유럽폴과 연락관의 본국과의 경찰협력	셴겐이행협약상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협정의 형태, 정보교환, 경찰협력의 지원 및 법률적 자문역할
비회원국 및 여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비회원국 및 여러 국제기구와 협정 체결 가능, 협상권한 유럽폴사무총장에게 위임	비회원 및 UN과의 경찰협력을 위한 규정 없음

* 필자가 연구·분석하여 작성함

II. 동남아시아 - ASEANAPOL

1. 연혁 및 성립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ASEAN은 식민지로부터의 독립,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베트남전쟁, 캄보디아 내전 등 국제·국내적으로 지극히 불안정한 지역이었다. 1967년 8월 8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이 주축이 되어 방콕선언으로

탄생한 ASEAN도 이 지역에서의 지역적 평화와 안보가 주된 관심사항이었고, 부차적으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진보라고 볼 수 있다. ASEANAPOL이 구성된 1981년에도 일부 몇몇 국가는 국제·국내적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따라서 아세안 10개국 중 단지 5개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및 필리핀)만이 참여하였다.

2001년 5월 23-25일에 라오스 Vientiane에서 제21차 ASEANAPOL 총회가 개최되었지만 현재까지 상설 사무총국이 없이 국제경찰협력에 대하여 협의하는 ASEANAPOL의 연혁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ASEANAPOL에 가입하는 국가가 확대되었다. 즉 1984년 1월 7일 브루나이 다루살람(Bornei Darussalam), 베트남 1995년 7월 28일, 라오스 1997년 7월 23일, 미얀마 1997년 7월 23일, 마지막으로 캄보디아가 1999년 4월 30일에 가입함으로써 ASEAN의 모든 국가가 회원국이다.

둘째, 1996년 5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전산망을 통해서 범죄정보 및 형사범에 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일차적으로 구축하였고, 가능한 빠른 시일이내에 다른 회원국들에게로 확대하기로 하여 현재는 모든 국가의 경찰당국에게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다.

셋째, ASEAN에서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대처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그에 대한 협력기관으로 ASEANAPOL을 언급하면서 1997년 12월 20일에 국제보통범죄에 관한 아세안선언(ASEAN Declaration on Transnational Crime), 1998년 7월 25일 마약 추방을 위한 아세안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for A Drug-free Asean), 1999년 6월 23일 국제보통범죄에 관한 제2차 아세안장관급 회담의 공동성명서 등이 발표되었다.

ASEANANPOL의 성립배경은 ASEAN에 있어서 국제보통범죄, 예를 들면, 부녀자 인신매매, 쿤사의 조직범죄집단에 의한 마약 밀거래 등의 예방과 진압이라고 볼 수 있다.

2. 목 적

ASEANAPOL은 회원국간의 협력을 통하여 법과 질서의 고양, 법집행 및 평화와 질서의 유지에 있어서 발전과 전문화의 촉진, 범죄의 예방과 통제, 질서유지, 범죄행위자와

피해자간에 정의의 확립 등 경찰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과 기술 발전의 증진, 법집행 및 형사사법제도의 측면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대중의 이해와 공동체 이익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 법적 지위

ASEANAPOL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기 위하여 정부간기구의 특징적 요소로 분석하면, ASEANAPOL은 ① 국가간 합의로 탄생하였지만 설립조약이 없다는 점, ② 회원자격은 ASEAN 소속의 국가라는 점, ③ 국제법상 법인격을 향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점, ④ 상설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각국이 지불한 분담금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⑤ 설립조약과 상설 사무국이 없으므로 ASEANAPOL 회원국간의 분쟁해결을 위해서 ICJ에게 권고적 의견 요청권도 없고, EU와 같이 지역재판소도 없기 때문에 지역재판소에 선결적 부탁도 할 수 없다는 점,²⁷³⁾ ⑥ ASEANAPOL이 국제기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UN과의 관계를 위한 제휴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 ⑦ 외교적인 특권과 면제권을 부여할 본부와 그의 직원 등도 없다는 점 등이 있다.

반면에 비정부간기구의 특징적 요소로 살펴보면, ① ASEANAPOL은 ASEAN 회원국의 경찰총수간의 모임이고 공적 성격도 띠고 있으므로 私人 또는 團體간의 합의로 체결된 定款과 같은 자체규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볼 수 없다는 점, ② 회원국은 국가이고, 국가의 대표이므로 私人 또는 국내법상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상설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국내법상 법인격 유무를 판단할 수 없고, ④ 운영비도 없다는 점, ⑤ ICJ에 권고적 의견 요청권도 없고, ⑥ UN헌장 제71조를 근거로 UN과 약정을 체결하여

273) 다만, 1996년 11월 20일에 체결된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Settlement Mechanism)는 ASEAN 국가간에 체결된 총 47개의 협정, 의정서, 교환각서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협의, 주선, 화해, 중개, 패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976년 2월 24일에 체결되고 2차례 개정된 동남아시아에서 예양·협력의 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제17조에서 UN헌장 제33조 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중재재판, 사법재판)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SEAN 회원국간에 ICJ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訴權은 당연히 있다.

일정한 지위를 향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점, ⑦ 상설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상설 사무국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특권과 면제권을 부여할 수도 없다는 점 등이 있다.

따라서 ASEANAPOL은 정부간기구 또는 비정부간기구도 아니고 단지 ASEAN 회원국 경찰총수간의 정치적 성격의 연례적인 “회의체” 또는 “협의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4. 조직 및 기타

ASEANANPOL은 1981년에 구성되어 2001년까지 제21회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상설 기구가 없으므로 조직이라는 것은 없고, 단지 회원국과 그 회의에 참여한 각국의 경찰총수만이 있다. 연례적인 회의의 결과도 언론보도문과 공동성명서 형식으로 발표되고 있으므로 정치적 성격을 지닌 회의 또는 협의체로 볼 수 있으므로 ASEANAPOL의 임무, 관할범죄, 활동내용,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어떠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대한 기여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회원국간의 통신은 인터폴의 NCB를 통해서 행하고 있다.

제3절 국가간 협력 메카니즘

I.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을 활용하는 경우

양자 또는 다자조약으로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은 외교채널에 의하여 사법공조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여러 기관을 경유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러움, 신속한 사법공조의 필요성 등 여러 목적으로 인터폴의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 예로 미국과 이탈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 캐나다와 프랑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3조 1항,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b),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한 인터폴의 활용은 단지 외교채널에 의한 소요기간의 단축, 절차상

번거로움의 회피, 신속한 사범공조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은 범죄인인도 조약과 체결 당사국의 국내법의 범주로 제한된다.

II.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약을 체결하여 국가간 경찰협력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는 다음의 조약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 조약은 ① 영국과 독일의 경찰당국간에 형사문제 상호지원의 합의를 규율하는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constituting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providing for reciproc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Police Authoritie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이하 영·독 교환각서),²⁷⁴⁾ ②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역에서 경찰간의 협력에 관한 프랑스와 독일간의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ncerning Co-operation between Police Services in the Franco-German Frontier Area: 이하 프·독 협정)²⁷⁵⁾ 등이다.

1. 영·독 교환각서

영·독 교환각서는 전문과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도 “양국의 NCB는 가능한 한 형사문제에 대해서 상호 공조한다” 라는 의례적 표현과 “형사문제에 대한 공조에서 정치적·종교적·인종적 문제 및 국가의 핵심적 이익을 해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²⁷⁶⁾ 기본적으로 양국의 경찰협력은 국제법에 의하여 구속력이 있는 외국정부의 선언 및 국내법에 의하여 보증되는 상호주의

274) 1961년 5월 2일에 발효되었고, 영국에 의해서 1961년 11월 20일에 UN사무국에 등록되었다.

275) 1978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고, 1979년 3월 13일에 프랑스에 의해서 UN사무국에 등록되었다.

276) 영·독 교환각서 제1조 및 제2조.

에 바탕을 둔 협력이다.²⁷⁷⁾

2. 프·독 협정

(1) 목적과 기본원칙

국경지대에서 국제적 성격의 범죄의 진압 및 양국의 경찰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이고,²⁷⁸⁾ 경찰협력의 기본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즉 현 협정과 관련된 양국의 법률에 상응하여 인터폴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국제경찰협력의 결함을 보충한다는 의미이다.²⁷⁹⁾ 예를 들면,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설치된 NCB간의 협력체제인데, 프랑스와 독일은 긴급한 조치를 수행할 목적으로 관련 경찰기관간에 직접적으로 경찰뉴스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²⁸⁰⁾

(2) 내 용

경찰협력의 대상은 양국의 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또는 경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주권, 안보 공공질서, 기타 기본적 이익에 관련되거나 또는 정치적·군사적 범죄에 대해서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경찰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²⁸¹⁾ 양 국경지역의 경찰당국은 원칙적으로 NCB, 즉 프랑스의 Strasbourg 지방경찰이 독일의 NCB, 독일의 Landeskriminalämter이 프랑스의 NCB를²⁸²⁾ 통하여 경찰협력이 이행되지만 긴급한 경우에 각국의 NCB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관계 경찰당국간에 직접적으로 경찰뉴스와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경찰당국간에 교환된 경찰뉴스와 정보, 행해진 업무, 지방경찰당국자간에 개최된 회의 및 수행된 기술적 지원 등은 즉각적으로 각 당사국의 NCB에 통지하여야 한다.²⁸³⁾

277) 영·독 교환각서 전문 참조.

278) 프·독 협정 전문.

279) 프·독 협정 제1조 참조.

280) 프·독 협정 제6조 참조.

281) 프·독 협정 제3조, 제4조.

282) 프·독 협정 제9조 2항.

283) 프·독 협정 제9조.

양국의 경찰협력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찰관은 모든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에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 또 양국의 인접 지역간에는 자문·지원의 목적으로 경찰을 파견하여 상호 기술적 지원도 가능하며, 파견된 경찰은 파견국의 상부기관의 동의 및 다른 당사자의 동의하에 그의 임무를 수행한다.²⁸⁴⁾ 양국의 내무장관은 경찰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대표자(독일의 경우 연방의 공공안전국의 국장)를 임명하며, 그 논의의 결과는 내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²⁸⁵⁾

(3) 기 타

기밀적 성격의 정보는 특별한 조건을 부과하여 타 당사국에게 전달될 수 있고, 타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서 이를 존중하고²⁸⁶⁾ 동 협정은 어느 때나 폐기할 수 있으며, 그의 효력은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 타방 당사자에게 협정의 폐기에 관한 통지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종료한다.²⁸⁷⁾

Ⅲ. 신사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있어서 국제경찰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찰당국의 총수간에 신사협정을 체결하여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를 시도한 경우를 국제경찰협력의 근거로 본다면 다음의 예가 있다.²⁸⁸⁾ 즉 1996년 11월 5일, 2000년 9월 19일 및 2001년

284) 프·독 협정 제8조.

285) 프·독 협정 제10조.

286) 프·독 협정 제5조.

287) 프·독 협정 제13조 2항.

288) 대한민국이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등과 체결한 합의서, 협의문 및 약정서 등이 신사협정인 이유는 첫째, 국내법적인 측면에서 경찰청장이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의 체결권한이 헌법 및 경찰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UN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서 UN사무국에 등록해야 하는 그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UN사무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사실상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즉 중국 및 일본과는 분쟁해결에 관련된 규정 자체가 없다. 러시아와의 약정서도 제13조에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하였는데, 만약 발생된 분쟁을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ICJ에 의한 사법적 해결방법을 원

3월 29일에 각각 서명된 ① 대한민국 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公安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한·중 합의서), ② 대한민국 경찰청과 일본국 경찰청간의 경찰업무 협력에 관한 협의회문(이하 한·일 협의회문) 및 ③ 대한민국 경찰청과 러시아연방 내무부간의 협력에 관한 약정서(이하 한·러 약정서) 등이다.

1. 한·중 합의서

(1) 목적과 기본원칙

양국의 경찰협력의 목적은 경찰·공안분야에서의 우호협력을 진일보 증진시키기 위함이고, 경찰협력의 기본원칙은 독립, 주권, 영토보존, 국가안전의 상호존중 및 평등호혜와 상호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²⁸⁹⁾

(2) 내 용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서 양 당국의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환, 국제수사 공조 등과 같은 경찰협력이 행해지고, 그의 구체적인 관할범죄는 무기, 탄약, 폭발물, 가연성물질, 독극물 및 방사성물질의 불법제조·수입 및 거래,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의 불법거래, 부녀·아동의 매매 및 약취, 조직범죄, 테러행위, 밀수범죄, 통화·여권 및 양도성 유가증권의 위조 및 거래, 사기 및 경제사범, 출입국 관련사범 및 국경범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²⁹⁰⁾

국제법상 국제적 성격을 띠는 범죄의 처리 및 조사는 국내법의 범위내에서 관련된 국

용할 수 없다. 넷째, 일본 및 러시아의 국내법상 이들 국가의 경찰청장이 과연 조약의 체결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확인한 결과公安부 대표(경찰청장)는 조약의 체결권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 합의서 등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한·중·일·러의 경찰청장이 각각 그들 국가의 조약체결권자인 국가원수 또는 외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그 합의서 등을 체결하였는지 또 체결한 이후에 국내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예를 들면, 한·일 협의회문의 경우에 국회의 동의 또는 비준은 제외하더라도 관보에 고시라도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289) 한·중 협의회문 전문 참조.

290) 한·중 합의서 전문 및 제1조.

제조약, 인터폴 헌장 및 일반규칙,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원칙에 상응하여 경찰협력이 이행된다.²⁹¹⁾

(3) 권리의무

제공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비밀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사전 동의없이 제공받은 정보의 누설금지 의무가 있다.²⁹²⁾ 아울러, 각종 불법 및 범죄활동을 억제하고 소탕하기 위한 조치의 제정 및 시행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 경찰관련 과학기술의 교류, 경찰장비의 공동개발 등에 있어서 상호이익에 기초한 협력 및 경찰업무 수행을 통하여 얻은 경험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의무와 그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²⁹³⁾

(4) 기 타

협력창구는 양 당사자의 외사업무부서 또는 NCB이고, 비용은 파견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국내 체류기간의 숙식비 및 교통비는 접수국이 부담하며, 서면으로 합의서의 종료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있다.

2. 한·일 협의문

(1) 목적과 기본원칙

양국 경찰간의 관계를 한층 강화·발전시키고자 함이 목적이고, 주권의 상호존중 및 호혜평등의 기초 위에서 협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²⁹⁴⁾

(2) 내 용

291) 한·중 합의서 전문 및 제3조.

292) 한·중 합의서 제2조 가.

293) 한·중 합의서 제2조 가, 제4조 및 제5조.

294) 한·일 협의문 전문.

국내법상 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의해서 인정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고, 그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범죄에 대하여 정보교환 및 수사상 협력, 경찰관련 법령, 총기, 약물범죄 등에 대한 대책, 물증 감정 및 기타 쌍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교환 및 경험 교류 등이다.²⁹⁵⁾ 이외에 국제법상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협력할 수 있다.²⁹⁶⁾

(3) 기 타

양 경찰당국은 당사자 경비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협력하고, 연락창구로 대한민국은 외사관리관실을 담당부서로 하고, 일본은 국제부를 담당 부서로 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NCB를 통하여 협력을 강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⁷⁾

3. 한·러 약정서

(1) 목 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면서 범죄 예방과 단속, 공공질서 유지에 관련된 분야에서 국제협력 및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찰협력을 강화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2) 내 용

경찰협력의 내용은 ① 범죄활동과 관련된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의 교환, ② 형사기소나 형집행 도피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소재에 대한 정보의 교환, ③ 불법거래 신종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 사용재료와 제조기술 및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새로운 조사·확인기법에 관한 정보의 교환, ④ 차량, 총기류, 유가증권과 신분확인 서류 등 번호나 특별한 인식표시가 있는 품목에 대한 정보의 교환, ⑤ 인턴쉽, 협의체, 세미나 등을

295) 한·일 협의문 전문, 제1조 및 제2조.

296) 한·일 협의문 제1조.

297) 한·일 협의문 제3조, 제4조 및 제5조.

통한 전문기술의 교환, ⑥ 양당사자들의 활동과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문헌과 정보의 호혜적 교환 등이다.²⁹⁸⁾ 다만 형사문제에 있어서 범죄인인도와 상호 사법적 지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²⁹⁹⁾ 이외에 ① 경찰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공질서유지, ② 교통안전활동, ③ 사체, 자신의 신원을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와 어린이의 신원파악, ④ 과학적 조사활동, 데이터 시스템과 특수기술 및 장비의 개발, ⑤ 직원의 교육훈련과 전문기능 강화 및 ⑥ 스포츠와 문화교류의 확대 등이다.³⁰⁰⁾

관할범죄는 범죄의 예방, 진압 및 탐지에 관련된 분야로서 ① 인간의 생명과 신체, 자유와 명예 및 재산에 대한 폭력성 범죄, ② 테러행위, ③ 부패 및 조직범죄, ④ 무기, 탄약, 폭발물, 독극물 및 방사선 물질의 불법거래, ⑤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과 그 원재료의 불법 생산과 거래, ⑥ 범죄에 의한 부당이익의 합법화(돈세탁)을 포함한 경제범죄, ⑦ 화폐, 서류, 유가증권 및 양도성 증서의 위조와 유통, ⑧ 문화재 및 역사유물에 관한 범죄, ⑨ 화물운송 관련 범죄 등이다.³⁰¹⁾

(3) 협력 요청 및 거부

경찰협력의 요청 방식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가능하다.³⁰²⁾ 다만, 구두로 요청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수단(컴퓨터 등을 통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고, 협력 요청의 내용 및 진실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한 추가확인이 가능하다.³⁰³⁾ 경찰협력 요청에 포함된 사항은 ① 요청기관의 명칭과 피요청기관을 알 경우 그 명칭, ② 사건의 내용과 세부사항, ③ 요청의 목적과 근거, ④ 협력 요청사항 설명, ⑤ 기타 요청을 적절히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및 ⑥ 협력요청에 관련된 서류에 요청기관의 장 또는 차장의 서명 또는 직인 등이다.³⁰⁴⁾

298) 한·러 약정서 제3조 1항.

299) 한·러 약정서 제3조 2항.

300) 한·러 약정서 제2조 2항.

301) 한·러 약정서 제2조 1항.

302) 한·러 약정서 제5조 2항.

303) 한·러 약정서 제5조 2항.

304) 한·러 약정서 제5조 3·4항.

경찰협력의 실행에 있어서 당사국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기타 다른 중요한 이해관계에 해가 되거나 자국의 입법상 근본원칙(예를 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 국내법 또는 국제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경찰협력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될 수 있고, 협력요청의 전부 또는 부분적 거부에 관한 사유, 방해 또는 지체되는 상황, 협력요청에 대한 권한의의 사항 등은 서면으로 통보한다.³⁰⁵⁾ 가능하다면 협력 거부의 결정을 하기 전에 협력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서 요청 당사자와 협의하고, 피요청국에서 범죄기소나 기타 법집행 절차를 방해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협력 이행의 중지 또는 협의한 후에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서 이행할 수 있다.³⁰⁶⁾

(4) 기 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찰협력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본 약정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견 불일치는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³⁰⁷⁾ 연락창구로 대한민국은 경찰청의 외사관리관실과 러시아연방 내무부의 국제협력국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운영부서를 지정해서 직접 접촉할 수도 있다.³⁰⁸⁾

제4절 비교 및 평가

I. 비 교

1. 인터폴, 유럽폴, Schengen 경찰협력 및 ASEANAPOL간의 협력 비교

국제조직체간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폴은 ① 전세계적 조직망(179개국)으로 조직되었다는 점, ② 광범위 한 관할범죄를 경찰협력의 객체로 하고 있다는 점, ③ X.400과 같은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고, 좀더 신속하고, 현대적인 통신 및

305) 한·러 약정서 제6조 1·2·4항 및 제7조 1·2항 참조.

306) 한·러 약정서 제6조 3항 및 제7조 5항.

307) 한·러 약정서 제9조 및 제13조.

308) 한·러 약정서 제11조

수배제도를 위해서 Atlas Project가 수행중에 있다는 점, ④ 긴급체포를 요구한 적색 수배서를 포함하여 각종 수배서를 발행하여 각 회원국에게 배포하고 있다는 점, ⑤ 총재, 사무총장 및 집행위원회의 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비교적 균등한 지역적 분포, ⑥ 주권평등의 원칙에 의한 한 표의 투표권 및 일부 소수 국가에게 거부권의 불인정, ⑦ 각국의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① 인터폴 설립헌장 및 일반규칙에서 각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정도가 미약한 軟性法(soft law)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② 따라서 대단계의 협력이 아니라는 점, ③ 정부간국제기구도 아니고 비정부간기구도 아니므로 법적 지위가 애매하다는 점, ④ 테러집단에게 범죄정보유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데이터 보호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다.

둘째, 유럽폴은 ① 경찰협력의 단계에서 대단계의 협력이라는 점, ② 국제기구로서 법률적 체제가 완비되어 있다는 점, ③ 유럽폴과 각 회원국간의 정보교환 등은 본국에서 파견한 연락관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는 점, ④ 연락관이 본국과의 정보교환 및 통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속성이 있다는 점, ⑤ 철저한 데이터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⑥ 범죄수사를 위해서 공동수사팀도 구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반면에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① EU회원국간의 협력이므로 지역 국가간의 협력이라는 점, ② 유럽폴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요 범죄로 관할범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셋째, Schengen 경찰협력은 ① 경찰협력의 단계에서 대단계의 협력이라는 점, ②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추적·감시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 ③ 긴급한 경우에 지방관할당국에게 직접 경찰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④ SIS라는 정보통신망이 있다는 점, ⑤ 데이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EU연합 회원국간의 협력이므로 유럽폴과 같이 지역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ASEANAPOL은 경찰업무의 최고책임자간의 협의체이므로 중요 사안은 협의를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① ASEANAPOL의 설립에 대한 명시적인 국제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 ② 상설 사무총국이 없다는 점, ③ 중간단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④ 정치적 성격의 조직체라는 점, ⑤ ASEAN 회원국만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지역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도표로 그리면 <표 5>와 같다.

<표 5> 인터폴, 유럽폴, Schengen 경찰협력 및 ASEANAPOL간의 장·단점 비교

종류 \ 사항	장 점	단 점
인터폴	전세계적 조직망, 광범위한 관할범죄, 통신망, 수배제도, 회원국간의 평등성	연성법적 조직체, 법적 지위의 애매성, 중간단계의 협력, 데이터 보호에 관한 문제
유럽폴	대단계의 협력, 국제법적 체제 완비, 연락관에 의한 신속한 정보교환, 철저한 데이터보호제도, 공동수사팀	EU회원국간의 조직체(지역성), 주요 범죄에 한정된 관할범죄
Schengen 경찰협력	대단계의 협력,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서 추적·감시권, 긴급한 경우 직접 관할지방당국에게 경찰협력 요청 가능, 정보통신망, 철저한 데이터보호	EU회원국간의 조직체(지역성)
ASEANAPOL	경찰업무의 최고책임자간의 협의체	조직체의 법적 설립근거 미약, 상설사무총국이 없음, 중간 단계적 성격을 지닌 협력, 정치적 성격의 조직체, ASEAN 회원국간의 조직체(지역성)

* 필자가 연구·분석하여 작성함.

2. 국가간 협력 비교

국가간 경찰협력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을 활용하는 경우에 외교채널이 아닌 인터폴의 경로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협력 요청 및 그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 이미 국내법상 설치되어 있는 인터폴의 NCB를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다른 협력창구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따라서 소요된 기간이 외교경로에 의한 협력절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반면에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의 활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과 규정하지 아니한 조약이 있다는 점, 인터폴의 활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국제 경찰협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영국과 독일, 프랑스와 독일과 같이 경찰협력에 관한 독자적인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인터폴에 의한 경찰협력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긴급한 경우에 지방경찰당국간에 직접적으로 경찰뉴스와 정보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반면에 영국과 독일의 교환각서는 그 내용이 너무 간결하여 구체적으로 형사문제의 범주,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문제 및 국가의 핵심적 이익을 해치는 사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대한민국이 체결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합의서·약정서에서 경찰협력의 객체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는 점, 러시아와의 약정서는 긴급한 경우에 구도로도 경찰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반면에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軟性法이라는 점, 한·중 합의서와 한·일 협의문에서 분쟁해결문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한·일 협의문은 너무 간결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및 UN사무국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도표로 그리면 <표 6>와 같다.

<표 6> 국가간 경찰협력의 장·단점 비교

종류 \ 사항	장 점	단 점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터폴의 활용	인터폴의 NCB를 통하여 신속하고 간결한 협력이 가능함	인터폴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영·독 및 프·독이 체결한 조약	구속력이 있고, 긴급한 지방경찰당국간의 협력이 가능	영·독일은 너무 간결한 내용, 협력의 범주에 대한 해석의 문제 제기
한국을 중심으로 한 신사협정	중국·러시아와 관할범죄에 대하여 구체적 기술, 러시아와 긴급한 경우에 구도로도 협력요청 가능	軟性法, UN사무국에 등록하지 아니함, 한·일은 너무 간결함, 한·중과 한·일은 분쟁해결 방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필자가 연구·분석하여 작성함.

II. 평 가

본 장에서 국제기구 또는 조직체간 및 개별 국가간의 국제경찰협력을 연구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인터폴, 유럽폴, Schengen 경찰협력 및 ASEANAPOL 등 국제조직체간의 협력에서 ① 위의 조직체들은 본질적으로 각국의 경찰이 주체가 되어 효과적으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② 인터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통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③ 각국이 형사관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경찰이 타국의 영토에 막 진입한 범죄자에 대한 추적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에 관련된 국제조약의 체결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④ 따라서 형사관할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위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⑤ 협력의 채널이 경찰당국간의 협력이므로 협력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범무당국과 외무당국을 경유한 사범공조(대한민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신속성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⑥ 범죄정보의 교환 및 통신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와 그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국가에서나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⑦ 지역국가간의 경제적 발전정도, 지역 경제 통합의 정도, 문화적인 차이, 참여 국가의 수, 제도적인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이 조직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다.

둘째, 개별 국가간 경찰협력에서는 ① 국가간의 경제·정치적 협력 및 인적왕래가 활발한 인접 국가간에 상호주의에 기초한 협력이라는 점이다. ② 국가간 경찰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로 규정한 문서의 내용이 프·독 협정과 한·러 약정서를 제외하고는 매우 간결하다는 점이다. ③ 협력절차가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간의 실무협력이므로 범무 및 외무당국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④ 국가간 국제경찰협력의 객체에 해당하는 범죄는 정치적·종교적·인종적 및 국가의 핵심적 이익을 해치는 사항을 제외한, 즉 필자의 이론에 따르면 국제형사범죄를 제외한 국제보통범죄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⑤ 영국과 독일, 프랑스와 독일은 영·독 교환각서와 프·독 협정을 체결한 후에 각각 UN사무국에 등록을 하였는데 대한민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체결한 합의서, 약정서 및 협

의문 등은 UN사무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⑥ 다자협력과 달리 개별 국가간의 협력에서 범죄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역국가간에 국제경찰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EU와 같이 지역 국가간에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회원국간에는 국경에서 특별한 통제가 없이 인적·물적 자유왕래의 가능해야 한다. 셋째, 대단계의 경찰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가 이루어진 단계이어야 한다. 넷째, 회원국간에 범죄정보 및 범죄자에 대한 공동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채널이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 및 지방관할당국과도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간에는 3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첫째, 상호 인접하고 있어서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여야 하고, 둘째, 인접 국가간에 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협력채널이 경찰당국 대 경찰당국 및 지방관할당국과도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장 아·태폴 창설에 대한 기반 조성 및 기본 모델

제1절 아·태폴 창설의 필요성

I. 국제화·지구촌화에 따른 국제보통범죄 피해의 심각성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국제보통범죄의 범죄양상은 ① 국제화의 영향으로 국제조직범죄 집단의 활동무대가 외연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 ② 국제조직범죄집단의 범죄수법이 첨단화, 지능화, 국제화, 조직화, 전문화 및 기동성이 있다는 점, ③ 전통적인 폭탄, 인명살상, 요인 암살 등에 의한 테러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또는 인터넷시스템을 파괴하는 사이버범죄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 ④ 관광, 비즈니스, 유학, 취업 및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내·외국인의 입·출국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 ⑤ 다양한 국적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⑥ 국가간 경제발전의 격차가 심화됨으로 인하여 불법체류 및 밀입국사범이 증가한다는 점, ⑦ 해외도피사범과 같이 치고 도망가는 수법의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및 ⑧ 신용카드 범죄 등과 같이 신종범죄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³⁰⁹⁾

국제보통범죄에 대한 주요 피해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자료가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로 해외도피사범 현황에 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총 421명에 달하고, 그 모두가 인터폴에 의해서 수배중이다. 1999년 12월 당시에도 공조수사 중인 해외도피 사범이 506명에 달하였고, 경제사범이 그 전체의 86%인 449명으로 피해액은 10,318억원이라고 한다.³¹⁰⁾ 1992년 서울지방검찰청 조사에서도 해외도피사범의 수는 3,000명이 넘었고, 조사당시 미해결로 남아 있던 해외도피사범의 수도 925명으로 그 피해액수만 1조 3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309) 문규석,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국제보통범죄를 중심으로”, 『국제법협회논총』, 제9권(2000. 12), p. 177.

310) 경찰청, 『'99INTERPOL 서울총회 보고서』, 경찰청 인터폴 서울총회 사무국, 1999. 12, p. 34.

집계되었다.³¹¹⁾

둘째, 비엔나에 소재하고 있는 United Nation's Central European HQ는 전세계 주요 범죄조직의 수익은 1997년 1조 달러를 초과했다고 평가했고, Roy Penrose(Director General of Britain's National Crime Squad)는 1998년 G8 정상회담의 경찰관련 브리핑에서 범죄는 선진국에서 국내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의 2%, 개발도상국은 최고 14%의 비용에 달한다고 했다.³¹²⁾

셋째,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전세계 돈세탁 규모로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의 2-5%라고 말하고, 1996년의 경우 대략 5,900억에서 15,000억 달러로 스페인의 총생산량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³¹³⁾ 미국의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7500억 달러의 불법자금이 돈세탁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³¹⁴⁾

넷째, 인터폴은 전세계적으로 불법마약 거래량은 매년 4,000억 달러 가량으로 평가하고 있다.³¹⁵⁾ 인터폴에 의한 정보교환의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는 마약관련 범죄와 국제조직범죄관련 사건이 전체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폴도 마약관련 범죄 및 사건이 전체 58%에 해당한다.³¹⁶⁾ 대한민국도 2000년에 총 24명의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사범을 적발하였다.³¹⁷⁾

다섯째, 비엔나에 소재한 International Centre for Migration Policy Development는 불법이민이 연간 95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이라고 평가했다.³¹⁸⁾ 대한민국도

311) 조영준, “국외도피 형사범에 대한 검찰의 대처방안”, 『검찰』, 1995. 2, p. 150.

312) Fenton Bresler, "Inside Story: Interpol and the Changing Face of International Policing",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p. 11.

313) http://www.oecd.org/fatf/MLaundering_en.htm visited on 4 November 2001.

314) James R. Richards,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Cybercrime, and Money Laundering*(New York : CRC Press, 1999), p. 44.

315) MJ Palmer, "Strategic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Policing",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p. 77.

316) *Europol Annual Report for 1999*, p. 6.

317) 경찰청, 『경찰백서』, 2001, p. 318.

318) Robert C Fahlman, "Intelligence Led Policing and the Key Role of 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불법이민과는 성격이 약간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은 2000년말 총 188,95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9.6%가 증가했고, 이것은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39.2%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³¹⁹⁾

마지막으로, 도난미술품은 전체 예술품거래의 약 5%에 달하고 그 금액은 매년 약 20억에서 6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³²⁰⁾

II. 인터넷에 의한 국제보통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사이버상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범죄는 인터넷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전산망 침해행위(해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암호해독행위, 스팸메일로 인한 업무방해 등등)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음란물배포, 사이버사기, 마약거래, 돈세탁, 사이버성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등)로 크게 나눌 수 있다.³²¹⁾ 국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이버범죄는 인터넷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행위와 해킹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예는 1999년 4월, 2000년 5월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CIH와 'I Love You' 바이러스, 해킹의 경우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중앙컴퓨터에 침입하여 윈도우오피스 등 핵심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프로그램 구성내용)를 훔쳐간 사건,³²²⁾ 1994년 러시아 블라디미르 레빈(Vladimir Levin)이 성 피터스브르크(St. Peterburg)에서 미국 시티뱅크로부터 천만불을 불법적으로 여러 구좌에 이전시키려고 했으나 은행보안시스템이 차단됨으로 인하여 40만 달러만이 손실당한 사건,³²³⁾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미국 국방부 컴퓨터에 150여회나 침입한 사건³²⁴⁾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p. 46.

319) 경찰청, *supra note 317*, p. 310.

320) Jennifer Sultan, "Combating the Illicit Art Trade in the European Union: Europol's Role in the Recovering Stolen Artwork",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Vol. 18, No. 3, 1998, p. 759.

321) 심희기,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실태", 『수사연구』, 2000. 6, pp. 11-15 참조.

322) 중앙일보, 2000. 10. 28, p. 31; 중앙일보, 2000. 10. 30, p. 14.

323) Alexander E. Voiskounsky, Julia D. Babaeva and Olga V. Smyslova, "Attitudes towards computer hacking in Russia", in Douglas Thomas and Brian D. Loader(ed.), *Cybercrime: Law Enforcement, Security and Surveillance in the Information Age*(London & New

등이 있다.

사이버범죄의 심각성 및 대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컴퓨터바이러스와 해킹에 관련하여 안철수 바이러스연구소는 매크로, 트로이목마, 파일, 부트, 웜, 스크립트 및 부트/파일 등의 바이러스 종류를 모두 합하여 1999년 379개, 2000년 572개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한다.³²⁵⁾

둘째, 한국정보보호센터가 발표한 자료에서 금전적 피해 현황과 정부기관 등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기관별 해킹 피해현황(대학, 기업, 비영리, 연구소, 지역, 기타)은 1997년 총 64건, 1998년 158건, 1999년 572건, 2000년 1,943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³²⁶⁾

셋째,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의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피해규모는 1999년의 경우 신용사기로 4,249만 달러, 컴퓨터바이러스 527만 달러, 시스템파괴 289만 달러이고, 전체 총액으로 36,072만 달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³²⁷⁾

넷째,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총액이 2003년경에 100억달러에서 5000억달러 달한다는 자료와 2004년에 2조 7천억 달러 또는 7조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 및 유럽연합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조약안을 이미 작성하였다는 점 등은³²⁸⁾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을 이미 지적하였다고 생각한다.

York : Routledge, 2000), p. 67.

324) 동아일보, 1997. 5. 7, p. 11.

325) http://icic.sppo.go.kr/e_2.htm 참조(visited on 19 October 2001).

326) *Ibid.*

327) 중앙일보, 2000. 5. 17, p. 12.

328) Peter J Nevitt, "Information Sharing in the 21st Century - Can International Law Enforcers meet the Challenge?",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p. 65; Peter Grabosky, Russell G. Smith & Gillian Dempsey, *Electronic Theft: Unlawful Acquisition in Cyberspace*(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1; 문규석, 국제법상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국제보통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논문집, 제46권 제1호(통권 제89호), 2001. 6, pp. 79-108 참조.

Ⅲ. 인터폴 개혁의 한계성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폴은 전세계 179개국 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는 점, 광범위한 관할범죄가 경찰협력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점, 적색수배서를 포함한 각종 수배제도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제도화되었다는 점, 비교적 현대적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 집행위원이 균등하게 각 지역에서 골고루 선출된다는 점, 각국이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분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다는 점, 주권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투표제도가 있다는 점, 대외협력 창구로 NCB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그 NCB를 통해서 경찰당국간에 직접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 등은 인터폴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들이다.

반면에 인터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폴의 주된 비판 대상은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軟性法(soft law)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데이터 데이터보호의 문제가 있다는 점, UN 경제사회이사회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그렇다면 인터폴은 과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인터폴의 개혁은 인터폴헌장의 개정에 의한 제도적인 개혁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국제기구의 관성적 성격, 형사관할권에 대한 각국의 민감한 반응, 각 회원국의 법률문화, 법제도, 경찰제도의 차이점 및 EU는 유럽폴이 있으므로 인터폴의 개혁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이 주된 방해 요소로 인터폴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Ⅳ. 유럽폴 및 Schengen 경찰협력의 지역성

유럽연합의 회원국간에 시행되고 있는 국제경찰협력은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자는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국제조약과 각국의 국내법간에 조화가 이루어진 대협력의 단계라는 점, 실무적인 측면에서 신속한 협력을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있다는 점, 정보협력을 중시한 반면 데이터보호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는 점,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서 감시·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현재 가장 선진화된 국제경찰협력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던 바와같이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은 EU회원국간의 협력체제이고, EU의 회원국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도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국가가 가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V. 외교채널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의 비효율성의 보완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교채널에 의한 형사사법공조가 각국의 법무부와 외부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비효율성이 있다. 즉 소요기간의 장기화, 여러 기관을 경유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 국가간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이 적어도 동시에 있어야 하는데,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체결되어 있는데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와 반대인 경우에 제기되는 현실성이 없는 사법공조의 한계성, 양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수가 몇몇에 불과하다는 소수성, 실무적인 측면에서 외교채널에 의한 형사사법공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미미한 실적³²⁹⁾ 및 기타 등이다.³³⁰⁾ 따라서 외교채널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면서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329)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협의의 형사사법공조)에서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건수는 1996년 10건, 1997년 6건, 1998년 17건, 1999년 35건이고,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은 1996년 5건, 1997년 4건, 1998년 7건, 1999년 11건이다. 범죄인인도의 경우에 외국으로부터의 범죄인인도청구는 1996년과 1997년에는 한 건도 없고, 1998년 1건만이 있다.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도 1996년 2건과 1999년 5건만이 있을 뿐이다.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0, p. 231, 234.

330) 문규석, *supra note* 309, pp. 186-188 참조.

제2절 아·태폴 창설에 대한 기본적 전제

I. 아·태지역에서 대협력 단계의 국제경찰협력

아·태폴이 창설된다면 대협력 단계의 국제경찰협력이 기본적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다음과 같은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인터폴은 전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기는 하지만 중간 단계의 협력체제이다. 따라서 현재 인터폴에 의해서 중간단계의 국제경찰협력이 이행되고 있으므로 대협력 단계의 아·태폴이 아니면 굳이 아·태폴을 창설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국제경찰협력은 어느 특정 지역의 경제블럭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EU와 같이 각 회원국의 역내 국경이 철폐되고 회원국의 국민들이 아무런 통제없이 자유로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가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에서의 추적권과 감시권 및 정보협력이다.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에서의 추적권과 감시권 및 정보협력은 경찰협력에 관한 국제조약과 이에 연관된 국내법이 완비된 대협력의 단계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협력이므로 대협력의 단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유럽에서는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이 국제보통범죄에 대하여 충분히 예방 및 진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서는 그러한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경찰협력에 관한 시스템을 제도화한다면 EU의 유럽폴 및 Schengen 경찰협력과 같은 대협력의 단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黑社會·黑幫, 대만의 죽련방, 홍콩의 삼합회, 쿠사 마약조직, 미국과 러시아 마피아, 남미의 마약카르텔 등이 아·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범죄집단이다.³³¹⁾ 이들에 대한 예방 및 진압활동은 신속하고 간소한 협력절

331) 이들 조직범죄집단의 실태는 다음의 자료 참조. 국가정보원,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응』, 1999. 2, pp. 16-38 참조.

차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협력 단계의 국제경찰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제도적·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공조법 및 범죄인인도법에 규정된 외교채널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와 국제경찰협력을 비교해 볼 때 국제경찰협력이 효율성, 신속성, 절차의 간결성 등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³³²⁾ 따라서 외교채널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한다면 그 협력은 대협력 단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II. 국제법상 법인격 향유

정부간기구, 즉 국제기구는 조약에 의해서 구속력이 승인된 정부간기구를 의미한다.³³³⁾ 다시 말해서, 국제법하에 설립되고 그 자신의 의사에 따른 기관이 적어도 하나 이상이 창설되어 있는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협력의 형태로서 국제법상 법인격자를 말한다. 여기서 법인격은 정부간기구가 국제법상 주체이고, 국제법상 권리를 향유하고 그 의무를 부담하며 국제소송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³³⁴⁾ 따라서 아·태폴이 창설되어 법인격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태폴이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국제법상 조약체결권, 특권과 면제권 및 기타 등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내법상 회원국의 국내재판소에 대한 제소권, 계약체결권, 동산·부동산 취득, 사용 및 처분권 등이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III.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에 대한 구속력

국제경찰협력의 범주는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국가간의 사법공조의

332) 문규석, *supra note 16*, pp. 151-154 참조.

33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1항 (i) 및 국가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1항 (f)와 (i).

334) 문규석, *supra note 15*, pp. 51-56 참조.

일환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협력으로서 경찰당국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각국의 경찰제도가 국내법상 차이가 있고, 각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경찰의 역할이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봉사활동으로 본다면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활동은 모든 국가에서 모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활동이 국제적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경찰협력의 범주에 대해서 국가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해석도 다를 수 있으므로 개괄적인 범주는 아·태폴 현장에 규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세한 내용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이행할 수 있는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게 하여 각 회원국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그 이행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IV. 신속성

현재의 형사사법공조(협의의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인도)의 가장 큰 비난 중에 하나가 신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형사사법공조의 절차상 필요한 소요기간이 제트비행기에 의한 수송수단 및 초스피드의 통신수단의 시대가 아니라 마차나 증기선에 의한 시대와 같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³³⁵⁾ 따라서 각 회원국이 인터폴의 NCB와 같은 협력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에게 긴급한 경우에 fax, e-mail 및 당사국이 동의하면 구두로도 경찰협력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한 협력이어야 한다.³³⁶⁾

V. 협력절차의 간소화

협력절차는 인터폴, 유럽폴 및 Schengen 경찰협력에서 각국의 국내법으로 지정해 둔

335) Geoff Gilbert, *Transnational Fugitive Offenders in International Law: Extradition and Other Mechanisms*(The Hague/ Boston/ 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8), p. 1.

336) 한·러 약정서 제5조 2항, 2000년 12월에 채택된 국제조직범죄자에 대한 UN협약 제18조 4항 및 2001년 6월 18-22일에 European committee on Crime Problems(CDPC)에서 채택되고 2001년 6월 29일에 발표한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 초안 제25조 3항 참조.

NCB, National Unit, Central Body와 같은 기관을 지정하고서 그 지정된 기관간의 협력 및 긴급한 경우에 그 지정된 기관이 직접 지방관할당국에게 경찰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VI. 최첨단의 통신수단, 범죄정보시스템 및 수배제도

최첨단 통신망의 설치 목적은 각종 경찰정보, 수배자에 대한 추적과 체포, 장물의 수배, 국제조직범죄집단의 활동 및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한 긴급정보 등을 신속하게 교환하는 것이다. 이미 인터폴, 유럽폴 및 Schengen 경찰협력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국제경찰협력의 특징은 협력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각종 범죄정보 등을 최첨단의 통신수단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러한 통신망은 치고 도망가는 수법의 뺑소니 범죄 및 조직범죄집단의 기동성보다 더 우월해야 한다. 인터폴이 1934년에 무선통신망 구축, 1987년 자동전문전송설비(AMSS) 설치, X-400 및 현재 진행중인 Atlas Project 등도 모두 최첨단의 통신수단으로 신속하게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수배제도는 표면적으로 경찰관서 관할지역의 경계를 벗어난 도망자들을 체포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고안되었지만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범죄자의 체포 및 미래 범죄의 예방 등에 있어서 대단한 효과가 있다. 인터폴의 경우 도망자의 이름, 가명, 직업, 출생지와 생년월일, 외모의 특징묘사, 모국어, 지문 및 사진 등이 기록되고, 이 용지의 오른쪽 위 모퉁이의 여백에 적색을 포함한 다섯 가지 색상으로 가로 3.3cm, 세로 4cm 정도 크기의 4각 마크가 붙어 있는 개인수배서가 있다. 이외에 도난 미술품 등에 대한 장물수배서, 범죄수법수배서(modus operandi report) 회원국이 임시로 긴급한 경우에 발행하는 수배서 등이 있다.

Schengen 경찰협력과 관련된 셴겐정보통신망(SIS)에서도 사람에 대한 수배제도와 목적물에 대한 자료가 있다. 따라서 아·태폴도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최첨단의 통신기기의 설치, 사람에 대한 수배자 및 목적물에 대한 자료가 아·태폴 범죄정보통신망에 기재될 수 있어야 한다.

제3절 아·태폴 창설에 대한 유형적 모델

I. 미국의 FBI 모델

미국의 FBI와 같은 기능을 하는 아·태폴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첫째, 법적 기초는 Soft Law가 아니라 Hard Law로서 이에 관한 국제조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이 있어야 한다. 둘째,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무국은 국제법상 법인격을 지녀야 한다. 물론 사무국 자체와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원에 대하여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권이 부여되어 있다. 셋째, 범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데이터는 유럽폴과 센겐이행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넷째, 사무국과 각국의 경찰당국, 각국의 경찰당국간의 연락은 인터폴의 NCB, 유럽폴의 National Unit, Schengen 경찰협력의 Central Body와 같은 기관을 통해서 연락하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지방경찰당국과도 경찰협력이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인접 국가간에는 일정한 시간적·공간적 범위로 타국 경찰관에게 추적·감시권이 있어야 한다. 물론 추적·감시의 경우에 추적·감시의 객체에 해당하는 범죄, 추적·감시 방법(헬기, 보트, 자동차, 모터사이클), 체포권 행사여부, 추적·감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찰관이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문제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에서 중대한 범죄를 아·태폴이 직접 관할하고, 아·태폴의 요원이 직접 타국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사권의 행사가 가능한 범죄, 행사범위의 구체적 내용, 위반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2001. 11)의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이러한 유형의 국제경찰기구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유럽폴의 역할과 관련하여 논의된 적은 있다.³³⁷⁾

II.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이 결합된 모델

337) F. E. C. Gregory, "Police Cooperation and Intergr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Proposal, Problems, and Prospects", *Terrorism: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4, No. 3, 1991, pp. 152-153.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이 결합된 모델이 있다. 즉 미국의 FBI 모델에 관한 여섯 가지 사항중에서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타국에서의 수사권은 인정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다. 현재(2001. 11)의 국제사회의 가장 선진화된 경찰협력으로 현재 EU에서 실행되고 있다.

Ⅲ. 유럽폴과 인터폴의 모델

유럽폴과 인터폴의 모델이 있다. 양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유형의 국제경찰협력을 위한 조직체이지만 회원국의 자격, 지역적 범주, 국제법적 근거, 법적 지위, 국제경찰협력의 단계, 데이터보호의 수준, 국제수배서의 발행, UN, ICTY, ICTR 및 ICC 등을 비롯한 국제조직체와의 협력관계 및 기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FBI 모델에 관한 여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럽폴과 인터폴 모델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사항까지가 해당된다. 다만 유럽폴 모델은 사무국에서 지방 경찰당국에게 직접 경찰협력을 요청할 수 없다. 인터폴 모델도 지방경찰당국에게 직접 경찰협력을 요청할 수 없고, 설립조약이 연성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데이터보호도 유럽폴협약과 센겐이행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무국의 법인격도 설립현장에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사무국 소재지인 프랑스정부가 인터폴과의 본부협정을 통해서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측면에서 볼 때 Hard Law 유형의 유럽폴과 Soft Law 유형의 인터폴을 의미한다.

Ⅳ. ASEANAPOL의 모델

ASEANAPOL과 같은 유형의 모델이다. 즉 국제경찰협력을 위한 법적 기초는 Soft Law이고, 사무국도 없는 정치적인 성격의 협의체이면서 범죄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모델이다. 미국의 FBI 모델에 관한 여섯 가지 사항 중에서 충족될 수 있는 사항은 범죄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다만, 그 데이터보호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기초하고 있고, 경찰당국간의 협력도 인터폴의 NCB를 통해서 이행되고 있는 모델이다.

V. 아·태경제협력체와 비슷한 유형의 모델

아·태경제협력체와 비슷한 유형의 모델이다. 즉 법적 기초는 정치적인 선언과 같은 Soft Law이지만 ASEANAPOL과 달리 사무국과 회원국간에 범죄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미국의 FBI 모델에 관한 여섯 가지 사항 중에서 충족될 수 있는 사항은 범죄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점과 사무국이 있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데이터보호도 ASEANAPOL의 모델과 같이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기초하고 있고, 경찰당국간의 협력도 인터폴의 NCB를 통해서 이행되고 있다. 사무국은 인터폴과 마찬가지로 본부 소재지국인 싱가포르와 아·태경제협력체간에 체결된 본부협정³³⁸⁾에 의해서 법인격은 있으나 인터폴과 같은 설립현장이 없이 정치적인 선언에 의해서 조직된 모델이다. 위의 여섯 가지 모델을 비교하여 표로 작성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아·태폴 창설에 대한 유형적 모델의 비교표

종류 \ 사항	법적 기초	사무국 · 법인격	범죄정보데이터 베이스 · 데이터 보호의 정도	중앙기관 · 지방 경찰당국과의 직접 협력 여부	추적 · 감시권	타국 영토에서 수사권
FBI 모델	국제조약	둘다 있음	있음 · 강력한 보호	있음 · 가능함	있음	있음
유럽폴과 센젠 경찰협력이 결합된 모델	국제조약	둘다 있음	있음 · 강력한 보호	있음 · 가능함	있음	없음
유럽폴 모델	국제조약	둘다 있음	있음 · 강력한 보호	있음 · 불가능	없음	없음
인터폴 모델	연성법	결과적으로 둘다 있음	있음 · 연성법과 국내법에 의한 보호	있음 · 불가능	없음	없음
ASEANAPOL 모델	연성법	사무국이 없음	있음 · 국내법에 의한 보호	인터폴의 NCB가 대신 역할함 · 불가능	없음	없음
아·태경제협력체와 비슷한 유형의 모델	연성법	결과적으로 둘다 있음	있음 · 국내법에 의한 보호	인터폴의 NCB가 대신 역할함 · 불가능	없음	없음

* 필자가 연구 · 분석하여 작성함

338)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Singapore and the Secretariat of th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relating to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APEC Secretariat 제2조 참조.

제4절 아·태폴이 창설되기 위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

I. 국제경찰협력의 범주

아·태폴에 의한 대협력 단계의 국제경찰협력의 범주는 아·태폴 사무총국이 행해야 할 임무 또는 경찰협력의 내용, 회원국간의 협력, 회원국과 사무총국간의 협력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1. 사무총국의 임무

아·태폴 사무총국은 인터폴, 유럽폴 및 Schengen 경찰협력의 내용과 비슷하게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국제보통범죄에 대한 정보와 첩보의 수집, 조회, 분석할 수 있는 있어야 하고, 각 회원국에게 그 수집된 정보와 첩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수배자 및 범죄를 행한 혐의자 또는 공범자의 이름, 가명, 출생일, 출생지, 국적, 성별, 관련된 범죄조직, 신체적 특징, 모국어 및 기타 등 수집된 정보를 컴퓨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셋째, 수배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목적물에 관한 자료(예를 들면, 자동차, 모터사이클, 고미술품 및 기타)도 컴퓨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넷째, 국제조직범죄집단에 의한 범죄, 마약관련 범죄 및 기타 등 여러 국가가 관련된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관련된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수사팀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³³⁹⁾ 다섯째, 그의 국제보통범죄에 관련된 기타 협력 등이다.

2. 회원국간의 협력 관계

각 회원국간의 협력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에서 대외 협력기관, 즉 인터폴의 NCB, 유럽폴의 National Unit, Schengen 경찰협력의 Central Body와 같은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둘째, 회원국간의 경찰협력은 대

339) OJ C 357, 13/12/2000, pp. 7-8 참조.

외협력기관을 통해서 협력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방관할당국에게 직접 경찰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인접 국가간에는 추적권과 감시권이 인정할 수 있고, 그 공간적(육지, 공중, 강 및 바다), 시간적 범위(30분, 1시간 및 무제한) 및 방법(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헬기), 추적과 감시의 대상 범죄 및 그 추적자에 대한 체포권 여부 등에 대해서 각 회원국이 허용하는 범위를 선언하게 한다.³⁴⁰⁾ 그 이유는 모든 회원국의 법률문화, 법제도 및 경찰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감시와 추적권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및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회원국간의 통신수단은 전화, fax, e-mail 및 기타 편리한 통신수단으로 하게 하고,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사후에 문서로 확인하게 한다.

3. 회원국과 사무총국간의 협력 관계

사무총국과 회원국간의 협력관계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각 회원국은 국제보통범죄의 정보와 첩보를 컴퓨터망을 통해서 사무총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무총국이 운영하는 범죄정보시스템에 각 회원국의 대외협력기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각 회원국의 대외협력기관에서 범죄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수행되어 범죄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데이터 보호가 유럽폴 범죄정보시스템 및 센겐의 SIS 수준이 되어야 한다.

II. 조직구성

아·태폴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사무총국의 업무, 재정 및 데이터 보호 등을 감독할 수 있는 공동감독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무총국의 구체적인 조직구성은 참여 국가의 수, 관할범죄의 내용, 재정 및 기타 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소속 직원은 연락관과 일반직으로 구성하게 하고, 연락관은 회원국의 경찰을 파견하게 한다.

340) 센겐이행협약 제41조 2·3·4·9항 참조.

Ⅲ. 관할범죄

국제경찰협력의 대상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적게는 3개월,³⁴¹⁾ 많게는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또는 경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주권, 안보, 정치적 범죄 및 국가의 핵심적 이익을 해치는 사항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다. 따라서 아·태폴의 관할범죄는 인터폴, 유럽폴 및 ASEANAPOL과 같은 유형의 국제보통범죄, 즉 국제조직범죄, 마약관련 범죄, 국제테러, 돈세탁, 인신매매, 불법이민 관련 범죄, 불법적인 핵물질 거래, 臟器와 자동차 밀거래, 환경에 대한 범죄, 사이버범죄 및 기타 각국의 국내법상 쌍방가벌성이 성립되고 형량이 최소 3개월 이상인 범죄는 모두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느 국가의 대통령 또는 정치·군사지도자가 군대와 경찰에게 지시·명령 또는 그들의 묵인·방조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예를 들면,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범죄, 침략죄) 등은 사실상 관할할 수 없다. 그러나 인터폴과 같이 ICTY와 ICTR과 같은 국제형사임시재판소 또는 앞으로 설치될 ICC에서 발행한 영장, 수배서 및 소환장 등은 해당 국가에게 아·태폴이 설치한 대외창구를 통하여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Ⅳ. 재 정

아·태폴의 재정은 UN, 인터폴 및 유럽폴과 같이 각 회원국이 지출한 분담금과 기타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한다.³⁴²⁾ 각 회원국이 지출한 분담금은 각국의 경제적 능력, 즉 GNP에 따른 일정한 비율 또는 인터폴과 같은 Budget Unit를 설정하여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정도의 분담금을 지불하게 한다. 아울러 지출하고 있는 분담금은 매 3년마다 재평가하여 상향 또는 하향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기타 재원은 사

341) 1962년 6월 27일에 서명된 베네룩스 3국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범공조에 관한 조약 제2조 1항 참조.

342) UN헌장 제17조 2항, 인터폴 헌장 제38조, 제39조 및 일반규정 제51조, 유럽폴협약 제35조 2항 참조.

무총국이 수리한 증여, 유증, 보조금 및 기타 등을 말한다.

V. 회원국간 및 아·태폴 사무총국과 사무총국 소재지국간의 분쟁해결

경찰협력의 내용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의 문제, 그 불이행에 대한 문제, 추적권과 감시권의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 사무총국과 사무총국 소재지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문제 등은 일차적으로 회원국간 및 사무총국과 사무총국 소재지국간에 정치적 방법(교섭, 주선, 중재, 심사,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중재재판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ICJ가 임의적 또는 강제적 관할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VI. 아·태폴 사무총국 및 요원에 대한 특권과 면제권

아·태폴 사무총국과 사무총국에서 근무하는 요원에 대해서는 특권과 면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권과 면제의 내용은 사무총국의 건물 자체, 문서 및 통신에 대한 불가침권, 재산 및 자산 등은 압수, 몰수, 징발, 수용 또는 어떠한 형태의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제약으로부터의 면제권,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권, 자산, 수익금 및 기타 재산 등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권 및 사무총국의 요원에 대하여 외교관과 같은 특권과 면제권 등이다. 이러한 특권과 면제의 내용은 UN이 미국과 체결한 본부협정,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서 사무총장과 직원 등에게 부여한 특권과 면제 및 프랑스가 인터폴 사무총국과 체결한 인터폴 본부와 인터폴의 특권과 면제에 관하여 인터폴과 프랑스정부와의 협정(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and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Regarding Interpol's Headquarters and It's Privileges and Immunities in France: 이하 본부협정) 및 유럽폴 협약에서 부여하고 있는 특권과 면제의 내용과 비슷하다.³⁴³⁾

343) 본부협정 전문,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 제18조 및 제19조 및 유럽폴협약 제41조 참조.

VII. 소재지 문제

아·태폴의 소재지는 회원국간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아·태경제협력체의 본부가 있는 싱가포르에 설치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 이유는 아·태경제협력체의 사무국이 있다는 점, 영어권이라는 점, 동남아 국가들이 선호할 것이라는 점 등이 있다. 둘째, 아·태폴에서 업무상 언어는 영어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영어권의 국가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미국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셋째,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서울의 근교에 본부를 설치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 국제기구의 본부가 현재 하나도 없으므로 하나 정도 있어야 한다는 점, 사실상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점, 아·태폴 본부가 설치된 이후에 아·태폴 관련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

VIII. 기 타

기타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회원국의 투표권의 수가 있다.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하나는 주권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각국이 동일하게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EU와 같이 가중다수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각국의 인구 수를 비례하여 각국의 투표권의 수에 차등을 두고, 몇몇 다수표를 갖는 국가가 단합하여 어느 사안이든지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일정한 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2/3이상이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아니한 사안은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과반수 이상이면 결정하도록 하고, 헌장의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이상이어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사무총장의 임기, 사무총장의 재임 여부, 집행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구성에 대한 지역적 배려의 문제가 있다. 인터폴 헌장 제15조와 제16조가 모델이 될 수 있다.

넷째, 아·태폴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국 및 일정기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한 제재의 문제가 있다. UN헌장 제19

조와 인터폴 일반규정 제52조와 같이 일정기간동안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회원국에 대하여 투표권의 행사를 중지하는 것도 하나의 모델이다.

다섯째, 인터폴 헌장은 UN사무국에 등록하지 않았으나 아·태폴의 설립 헌장은 UN 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의 문제가 있다. ICJ는 아·태폴의 회원국간 또는 사무국과 사무국 소재지국간에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분쟁해결을 위해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아·태폴 헌장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UN사무국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개최하도록 하고,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이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제5절 평 가

아·태폴이 창설될 수 있을까? 창설된다면 그 때가 언제이고 어떠한 유형적 모델을 취하게 될까? 아·태폴의 창설 및 그 모델과 관련하여 하나씩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아·태폴이 창설될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대협력의 단계를 이행하는 아·태폴로 창설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체가 EU와 같은 지역경제블럭화를 형성하고, 회원국간에는 국경에서 특별한 통제가 없이 인적·물적 자유왕래가 가능하며, 대협력 단계의 경찰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아·태경제협력체는 EU와 같은 지역경제블럭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회원국의 국민이 여권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회원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현실도 아니다. 더군다나 아·태경제협력체는 사무국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해도 그 협력이 국제법에 기초한 경제협력체가 아니라 일부 회원국간의 양자적 관계 또는 각국이 선언한 선언에 의해서 형성된 관계이므로 정치적 성격의 협력체이고 EU와 같은 조직체는 결코 아니다.³⁴⁴⁾ 그러므로 대협력 단계의 국제경찰

344) 아·태경제협력체는 비공식적인 대화그룹(informal dialogue group)으로 1989년에 창설되었고, 1993년에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설치하였다고 해도 국제기구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EC 또는 EU와 같은 국제기구는 아니다. Philippe Sands and Pierre Klein, *Bowett's Law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London: Sweet & Maxwell, 2001), pp. 233-234 참조; 아·태경제

협력을 이행할 수 있는 아·태폴의 창설은 아·태경제협력체가 EU 또는 EU와 비슷한 유형의 지역경제블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형성될 때 그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아·태폴이 자연스럽게 창설될 수 있다.

둘째, 아·태폴이 창설된다면 어떠한 유형적 모델을 취하게 될까? 필자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6가지의 모델이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 미국의 FBI 모델,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이 결합된 모델 및 유럽폴 모델은 대협력 단계의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역경제블럭화의 형성에 대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협력 단계의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할 수 있는 아·태폴의 탄생은 아·태경제협력체가 EU와 같은 지역경제블럭의 형성 여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2001. 11)의 아·태경제협력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아·태폴이 창설될 수 있는 모델은 인터폴 모델과 ASEANAPOL의 모델 및 아·태경제협력체와 비슷한 유형의 모델로 제한된다.

셋째, 10년, 20년 또는 30년 후에라도 아·태폴이 미국의 FBI모델,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이 결합된 모델 및 유럽폴 모델을 취하게 된다면 본장 제2절과 제4절에서 언급한 “아·태폴 창설에 대한 기본적 전제”를 기초로 ‘아·태폴이 창설되기 위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 모두에 대해서 구체적인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FBI모델이라면 이에 첨가하여 아·태폴의 요원이 타국에서 수사권의 행사범위, 방법, 이에 관련된 권한 행사 등에 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적인 합의를 필요로 한다.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이 결합된 모델이라면 인접국가간에 추적·감시권의 행사 등에 관련된 선언 또는 조약의 체결 등이 있어야 한다. 인터폴이 모델이라면 중간단계의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하는 국제조직체이므로 국제경찰협력의 이행에 대한 범주가 각국의 국내법으로 제한되고, 아·태폴의 설립 자체도 Soft Law에 근거하여 설립될 수 있으므로 본장 제2절의 “아·태폴 창설에 대한 기본적 전제”를 기초로 하지만 관할범죄, 회원국간의 분쟁해결, 설립헌장의 등록문제 등은 사실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또한 중간단계의 국제경찰협력을 전세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인터폴이 있는데 굳이 인터폴과 같은 유형의 아·태폴이 창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어렵다.

협력체에 관한 자료는 다음의 website 참조. <http://www.apecsec.org.sg>.

넷째, 아·태폴이 ASEANAPOL의 모델 및 아·태경제협력체와 비슷한 유형의 모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면 본장 제2절에서 언급한 기본적 전제가 모두 필요하지도 않고 제4절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없이 간결한 국제적 합의(선언)로 가능하다. 그러나 ASEANAPOL과 같은 아·태폴 또는 설립현장도 없이 사무국이 있는 아·태경제협력체와 비슷한 유형의 아·태폴은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터폴 보다 한 수 아래의 조직체가 될 수 밖에 없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태경제협력체의 현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유럽폴과 같은 모델은 불가능하지만 아·태폴이 창설하여야 한다면 유럽폴 모델로 창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에는 차선책으로 유럽폴 모델로 하는 아·태폴의 창설을 대비한 준비작업으로 아·태경제협력체의 회원국간에 각국의 사법제도, 경찰제도, 법률문화 및 기타 등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과 본장 제4절에서 언급한 사항 등에 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아·태경제협력체의 사무국에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부서를 설치한 아·태경제협력체와 비슷한 유형의 모델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5장 아·태폴 창설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및 문제점

제1절 과 제

I. 국제적 측면

1. 아·태경제협력체의 발전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태경제협력체는 비공식적인 대화그룹으로 1989년에 창설되었다. 1993년 2월 12일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설치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무국은 국제법(국제기구법)에 기초하여 창설된 것이 아니라 제4회 장관급 모임에서 참여 국가들이 합의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2001년 10월 17-18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제13회 장관급회의를 마치고 그 결과가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로 발표되었지만 그 성명서는 연성법적인 성격을 지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태경제협력체가 EU와 같이 지역경제블럭화를 형성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해야 아·태폴이 창설될 수 있으므로 아·태경제협력체의 발전이라는 과제가 있다.

2. 인터폴의 개혁에 대한 연구

인터폴이 대협력의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할 수 있다면 굳이 유럽폴을 모델로 한 아·태폴을 창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터폴의 개혁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그 연구에 따라서 인터폴이 개혁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 인터폴이 개혁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약 개혁을 하게 한다면 크게 두 가지의 작업이 요청된다.

첫째, 적어도 유럽폴을 모델로 하여 인터폴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이 개정된 헌장은 크게 여섯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인터폴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인정하는 국제조약의 형태로서 각 회원국이 서명 또는 비준하여야 한다. ② 국제경찰협력의 강력한 이행을 위해서 국제보통범죄에 관련된

사항은 그 협력의 이행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국제형사범죄는 현재와 같이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대통령 또는 군사지도자가 군대와 경찰과 같은 국가조직에게 지시·명령하여 국제형사범죄를 자행하게 하거나 또는 그들의 묵인·방조하에 조직적·체계적으로 자행된 범죄는 비록 그 잔인성에 있어서 일반 보통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 할지라도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함으로써 그 범죄자를 처벌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③ 데이터보호를 위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보호 수준이 되어야 한다. 즉 범죄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두 가지 형태로 제한하는 것이다. 하나는 각 회원국에서 파견한 연락관이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직접 필요한 정보를 연락관의 본국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각국의 NCB에서 직접 접근이 허용된 자를 지정하여 그 지정된 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된 자의 명부는 사무총국에 등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사무총국은 범죄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④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와 같은 수배서의 발행조건에 대하여 사무총국에서 기본적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수배자와 동등한 효력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인터폴의 법인격을 명문화하고, 각 회원국에서도 그 법인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⑥ 현재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원에 대해서 프랑스정부가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를 개정된 현장에서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프랑스정부는 이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둘째, UN경제사회이사회와 체결한 현재의 특별약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정부간기구와 정부간기구가 체결한 조약이어야 한다. 즉 현재의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비정부간기구의 category I이 아니라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

3. 국제경찰협력 범주에 대한 국제적 합의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다자 및 양자조약의 내용을 살펴볼 때 국제경찰협력의 범주는 국제보통범죄에 대한 정보협력, 인접 국가간에 일정한 공간적, 시간적 범위로 타국영토에서의 감시권·추적권, 추적자에 대한 체포권, 범죄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설치·

접근·관리·보호, 경찰협력의 채널, 요청된 협력에 대한 구속성 및 기타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국제경찰협력의 범주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고, EU회원국들도 국가마다 감시권과 추적권을 인정하고 있는 시간적·공간적 범위 및 추적자에 대한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럽폴의 모델을 기초로 한 아·태폴의 창설이라면 국제경찰협력의 범주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문제가 있다.³⁴⁵⁾

4. 국제경찰협력의 국제적 이행

국가간에 국제경찰협력의 범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고 그 합의가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로 되었다면 그것은 국제조약이다. 즉 단일의 문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 문서에 의해서 구현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또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는 국제조약이다.³⁴⁶⁾ 이러한 국제조약은 일정한 체결절차(교섭 및 조약안의 채택, 서명, 비준된 조약문안의 교환 및 UN사무국에 등록)와 성립요건(국가, 조약체결권자가 체결, 대표자간에 하자가 없는 합의의 성립, 내용의 적법 및 이행 가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아·태폴의 설립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경찰협력의 범주에 대한 구속력은 아·태폴 설립 조약이 국제법상 조약의 체결절차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국내법상 그 이행을 뒷받침해 주는 국내법의 제정 또는 그 조약에 관한 각국의 동의 또는 비준과 같은 법률행위를 필요로 한다.

II. 국내적 측면

1. 국제경찰협력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문제 - 관련 법률의 제·개정

유럽폴 모델로 하는 아·태폴의 설립과 관련하여 국제경찰협력의 국내적 이행, 즉 관

345) 1999년 11월 8-12일 제68차 인터폴 총회(서울)에서 채택된 Model Police Co-operation Agreement 참조; 인터폴 결의 AGN/68/Res/5 참조.

34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1항 (a).

런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예를 들고자 한다. 하나는 인터폴에 의한 적색수배서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는 수배서의 발행을 인터폴 사무총국에게 요청한 국가가 그 수배된 자를 기소하거나 또는 형을 복역하게 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에게 긴급 체포를 요청하는 일종의 국제 영장을 의미한다.³⁴⁷⁾ 그 수배서에는 이름, 가명, 출생지와 출생일, 육체적 특징묘사, 지문, 사진 등이 기록되어 범죄자의 인적사항을 설명해 줌과 동시에 체포된 적색수배자는 수배서를 발행한 국가에게 인도되거나 또는 강제송환될 수 있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형사법 관련 어느 법조문에도 적색수배자를 긴급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³⁴⁸⁾

다른 하나는 경찰청장의 권한 중에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의 체결권에 관한 문제이다. 즉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 중국, 일본 및 러시아 경찰청장과 체결한 합의서·협약문·약정서 등이 과연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가? 헌법 뿐만 아니라 경찰관련 법령 어느 조항에서도 경찰청장이 외국과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조약체결권이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경찰청장이 다른 국가의 경찰청장과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아·태폴에 의해서 이행될 국제경찰협력을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여 국제경찰협력의 국내적 이행에 관련된 국내법의 제·개정에 대한 과제가 있다.³⁴⁹⁾

2. 국제보통범죄 관련 전문가의 양성·채용 및 보직 순환제 예외 검토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국제경찰협력의 장애요소의 하나인 언어(영어)의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실무를 포함하여 국제법과 국제경찰협력에 대한 기본 지식, 국제회의 또는 국제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 상대국의 대표와 협상 능력 및 파티에서 필요

347) 인터폴 총회 결의 Resolution No AGN/66/Res/7 참조.

348) 형사소송법 200조, 200조의 2·3·4·5 참조.

349)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는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자료조회,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확인 및 그 조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강제송환은 사실상 편법이라고 볼 수 있다.

로 하는 매너까지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문가의 양성은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의 연수와 훈련이 필요하고 인터폴 협력관 및 주재관으로서 해외 파견근무와 같은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요원에 대해서는 순환근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기간동안 국제경찰협력과 관련이 없는 일반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채용도 중요하지만 양성 또는 채용된 전문가에 대한 관리의 차원에서 순환근무제의 예외에 관련된 행정적 배려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국제형사법 및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강좌 개설

국제형사법은 국제범죄(국제보통범죄와 국제형사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학문으로 국내 형사법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 국제법의 한 분야이다. 그 내용은 국제형사법에 관한 기본 사항(의의, 성격, 형사관할권 및 기타), 국제범죄의 개념, 형사사법공조(협의의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형사소추의 이송,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국제경찰협력, 남북한 형사문제, 각종 국제범죄(국제조직범죄, 국제테러, 마약관련 범죄, 돈세탁, cybercrime,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및 기타) 국제재판소(ICTY, ICTR 및 ICC)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에서도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영미는 물론이고 일본도 이미 1991년에 국제형사법에 관한 기본 교과서도 발간되었고,³⁵⁰⁾ 강좌도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형사법에 관한 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제경찰협력도 경찰관련 학과에서 강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국제범죄자에 대한 집행력행사의 방법 중에 국제경찰협력에 의한 방법이 있다는 점, 현재의 국제현실을 고려할 때 인터폴만이 국제경찰협력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 즉 유럽폴, Schengen 경찰협력, ASEANAPOL, SARPCCO 등이 있다는 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지역경제블럭이 형성될 때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국제기구가 창설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점 및 연락관에 의한 국가간 경찰협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350) 山本草二, 『國際刑事法』, 三省堂, 1991.

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강좌의 내용은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기본 이론, 인터폴, 유럽폴, Schengen 경찰협력, ASEANAPOL, SARPCCO, 미국 등이 포함된 북·남미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협력 및 기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2절 문제점

I. 아·태폴의 지역적 범주의 문제

어느 지역의 어느 국가가 아·태폴에 가입할 수 있는가? 아·태폴의 지역적 범주 또는 아·태폴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련된 기본적 조건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아·태폴이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가가 가입할 수 있는 지역적 성격을 지닌 경찰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이고, 이 기구는 지역경제블럭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태경제협력체와 관련하여 아·태경제협력체에 가입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연안의 국가는 모두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³⁵¹⁾ 다른 하나는 아·태폴의 설립조약이 폐쇄조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조약으로 하여 아·태경제협력체에 가입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연안의 국가는 언제든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II. 아·태폴과 UN 및 타 기구와의 관계상의 문제

1. UN과의 관계

아·태폴과 UN과의 관계는 국가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UN헌장 제57조, 제63조, 제70조에 규정된 UN 전문기구(special agency)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UN사무국과 상호 이익이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정보

351) 1989년 12개국에 의하여 창설된 아·태경제협력체는 현재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르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파푸아 뉴기니아, 태국, 페루, 필리핀, 호주 및 홍콩 차이나가 회원국이다.

와 자료의 교환,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공동이익의 문제에 대한 협의·공동 연구, 실질적인 계획에 대한 기술협력, 양 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서면성명서·임시 안전 제출 및 기타 상호 이익을 위한 제휴협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폴과 유로폴도 UN과 일정할 관계를 맺고 있다.

2. 국제사법재판소와의 관계

정부간기구는 그 기구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UN총회의 허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UN헌장 제 96조 2항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아·태폴은 아·태폴 설립헌장의 해석, 국제경찰협력의 범주에 대한 사무총국과 회원국, 회원국과 회원국 및 아·태폴 사무총국과 아·태폴 사무총국의 소재지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정치적 해결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아·태폴이 발생된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ICJ에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인터폴 및 유로폴과의 관계

인터폴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전세계적인 국제경찰협력을 위한 조직체이다. 반면에 유로폴은 EU연합의 회원이라는 특정한 국가만이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지역적 성격을 지닌 국제경찰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아·태폴이 설립되었다면 아·태폴도 유로폴과 같은 지역적 성격을 지닌 국제경찰협력을 위한 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아·태지역 이외의 국제보통범죄에 관한 정보와 첩보 및 기타 국제경찰협력을 위해서 인터폴 및 유로폴과 일정한 제휴협력관계를 가지는 것이 각각의 설립목적과도 합치된다고 본다. 제휴협력관계의 내용은 인터폴이 유로폴과 체결한 협정의 내용이 그 모델이라고 생각한다.³⁵²⁾

352)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Interpol and Europol 참조. <http://www.interpol.int/Public/ICPO/LegalMaterials/cooperation/agreements/Europol2001.asp> visited on 8 November 2001.

4. ASEANAPOL과의 관계

ASEANAPOL은 1981년에 ASEAN 회원국간의 국제경찰협력을 위하여 조직되었지만 2001년 10월 현재 상설사무국은 없고, 범죄정보데이터베이스는 설치되어 있다. 필자는 ASEANAPOL이 실질적으로 경찰협력이 행해지고 있는지, 행해지고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는 것 같고, 또 설사 있다고 해도 그 자료를 문의할 수 있는 사무국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히 실망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ASEANAPOL은 경찰총수간의 친목단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현재는 법적으로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고, 관련된 문서도 정치적 성격의 선언 또는 공동성명서로 軟性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ASEANPOL을 개혁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가 가입하는 것 보다는 아·태폴로 흡수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Ⅲ. 국제경찰협력 이행의 법적 의무화의 한계성

사범공조의 일환으로 경찰당국간에 행해지고 있는 국제경찰협력은 외교채널에 의한 형사사범공조와 마찬가지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이다. 이러한 국제경찰협력은 각국의 법률문화, 경찰제도 및 외교채널과 다른 경찰당국간의 채널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경찰과 검찰간의 역할 관계, 형사관할권에 대한 각국의 민감한 반응, 데이터보호의 수준에 대한 국가별 차이 및 기타 등의 요소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그 협력의 범주를 국제조약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그 이행에 대해서 구속력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근거는 인터폴이 협력의 범위를 국내법으로 제한하면서 그 이행에 대한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럽폴이 자국에서 파견한 연락관을 통해서 경찰협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요청된 협력이 정보협력인 경우에 그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이행할 수 있는 것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및 각국의 법률문화와 경찰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경찰협력의 범주에 대해서 일률적인 범위를 규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으므로 그 이행에 대한 법적 의무화를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6장 결 론

21세기 국제사회의 현실은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지구촌시대·정보화시대이고, 지역국가간에는 각국이 고유한 경제제도의 하나로 여기고 있었던 화폐마저도 단일화 시킬 정도로 지역경제블럭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역기능으로 국제보통범죄가 나타날 수 있고, 그의 예방과 진압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성질의 문제이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보통범죄의 양상이 국제화의 영향으로 범죄행위지가 외연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 국제조직범죄집단의 범죄 수법이 첨단화, 전문화, 국제화, 조직화가 되었다는 점,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범죄가 가능하다는 점, 여권만 있으면 상당히 많은 국가를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으므로 치고 도망가는 수법의 범죄행위가 가능하다는 점,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가 출현할 수 있다는 점 및 기타 등이다. 따라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요청된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사법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채널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그 하나는 각국의 법무당국과 외무당국의 채널을 이용한 형사사법공조이고, 다른 하나는 각국의 경찰당국 및 인터폴과 같은 국제조직체 등이 관련된 국제경찰협력이다. 양자는 모두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간 사법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같으나 그 의미, 주체, 객체, 절차, 소요기간 및 법적 근거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인 아·태폴이 어떠한 모델로 창설될 수 있을까? 아·태폴의 창설은 아·태경제협력체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의 아·태협력체는 EU의 전단계인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EC(European Community)의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유럽폴 모델로 한 대협력 단계의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하는 아·태폴의 창설에 대한 논의 자체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EU와 같은 지역경제블럭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지역경제블럭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가 이

루어진 대협력 단계의 국제경찰협력을 이행할 수 있는 아·태폴 설립 조약을 체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각 회원국의 경찰당국을 긴장 상태로 몰고갈 정도로 국경에서 특별한 통제없이 사람이 자유왕래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즉 지역국가간에 국제경찰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 중에서 기본적인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태경제협력체의 연성법적 구조, 아·태경제협력체의 회원국간에 쉽게 그 간격을 좁힐 수 없는 경제적 수준의 차이, 역사적·문화적 다양성 및 유럽과 비교해 볼 때 광범위한 지리적 분포 또는 지리적 인접성의 결함이라는 현재의 아·태경제협력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 FBI 모델은 제외하더라도 유럽폴과 Schengen 경찰협력이 결합된 모델 및 유럽폴 모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태폴 창설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유럽폴을 모델로 하는 아·태폴 창설을 대비한 준비작업으로 아·태경제협력체의 회원국간에 각국의 사법제도, 경찰제도, 법률문화 및 기타 등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과 ‘아·태폴이 창설되기 위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연구의 목적으로 아·태폴 창설을 위한 준비위원회, 포럼 또는 아·태경제협력체의 사무국에 아·태폴 창설을 위하여 국제경찰협력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태경제협력체가 현재의 Soft Law에 기초한 조직체에서 Hard Law의 조직체 또는 Hard Law에 기초하여 EU와 같은 지역경제블럭으로 탈바꿈하고자 할 때 아·태폴 창설을 위한 준비위원회 또는 포럼에서 연구한 사항을 기초로 유럽폴 모델로 한 아·태폴이 창설되도록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경찰협력의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경찰협력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적인 이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사경찰론의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논의되었던 국제경찰협력은 국제법(국제형사법)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둘째,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지위가 검찰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과 관계없이 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은 나름대로의 특점과 유용성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긴급체포 등과 관련하여 인터폴에 관련된 채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³⁵³⁾ 따라서 앞으로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할 때 인터폴의 경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인터폴이 발행한 적색수배서가 대한민국에서 과연 체포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는가? 현행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법을 고찰한 결과 사실상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연구 및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이 요구된다.

넷째, 대한민국이 외국 경찰당국과 체결한 합의서 등이 과연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신사협정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경찰청장에게 국제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국제경찰협력에 한정하여 조약의 체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국제경찰협력에 대한 실무가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해도 경찰당국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제는 경찰당국이 외무당국의 도움없이도 독자적으로 국제경찰협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업무는 실무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언어, 국제법·국제경찰협력에 관련된 지식, 협상 능력 및 기타 등을 필요로 한다. 즉 generalist가 아니라 specialist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채용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관리의 측면에서 순환근무제의 예외에 대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53) 예를 들면, 캐나다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에서 “체약당사국은 긴급한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나 기타 수단을 통하여 인도청구된 자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규정은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 및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1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제10조 1항에서 “긴급인도구속은 법무부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직접 송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터폴의 경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규정은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0조 1항,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2조 1항,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1조 1항,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1조 1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1조 1항 및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1조 1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부 록

- 국제 수배서
- 인터폴 현장
- Schengen Implementation Convention(excerpts)
- Europol Convention

I. 국제 수배서

1. 적색 수배서

MILOSEVIC Slobodan

CONTROL No. A-518/7-1999

REQUESTED B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LOCATED IN THE HAGUE, NETHERLANDS)
FILE No.: 1999/29606
DATE OF PUBLICATION: 23rd July 1999



FUGITIVE WANTED FOR PROSECUTION

1. IDENTITY PARTICULARS

- 1.1 PRESENT FAMILY NAME: MILOSEVIC
- 1.2 FAMILY NAME AT BIRTH: MILOSEVIC
- 1.3 FORENAME: Slobodan
- 1.4 SEX: M
- 1.5 DATE AND PLACE OF BIRTH: 20th August 1941 - Pozarevac, Present-day Serbia
- 1.6 FATHER'S FAMILY NAME AND FORENAME: MILOSEVIC Svetozar
- 1.7 MOTHER'S FORENAME: Stanislava
- 1.8 IDENTITY CONFIRMED
- 1.9 NATIONALITY: SERBIAN (CONFIRMED)
- 1.10 IDENTITY DOCUMENTS: N/A
- 1.11 ALSO KNOWN AS: N/A
- 1.12 DESCRIPTION: N/A
- 1.13 DISTINGUISHING MARKS AND CHARACTERISTICS: N/A
- 1.14 OCCUPATION: Presid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 1.15 LANGUAGES SPOKEN: Serbo-Croat, English
- 1.16 REGIONS/COUNTRIES LIKELY TO BE VISITED: N/A
- 1.17 ADDITIONAL INFORMATION: MILOSEVIC obtained a law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Belgrade, Former Yugoslavia, in 1964 and was President of the Beogradska Banka in the Former Yugoslavia until 1983.

2. JUDICIAL INFORMATION

- 2.1 SUMMARY OF FACTS OF THE CAS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Kosovo:
Between 1st January 1999 and 22nd May 1999, MILOSEVIC, MILUTINOVIC, SAINOVIC, OJDANIC and STOJILJKOVIC planned, instigated, ordered, committed or otherwise aided and abetted a campaign of terror and violence directed at Kosovo Albanian civilians living in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CONFIDENTIAL INTENDED ONLY FOR POLICE AND JUDICIAL AUTHORITIES

This campaign was executed by forces of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and Serbia acting at the direction, with the encouragement, or with the support of MILOSEVIC, MILUTINOVIC, SAINOVIC, OJDANIC and STOJILJKOVIC, and resulted in the forced deportation of 740,000 Kosovo Albanian civilians, and the mass killings of over 400 men, women and children.

- 2.2 ACCOMPLICES:
 MILUTINOVIC Milan, born on 19th December 1942, subject of red notice File No. 1999/29612, Control No. A-519/7-1999;
 SAINOVIC Nikola, born on 7th December 1948, subject of red notice File No. 1999/29613, Control No. A-520/7-1999;
 OJDANIC Dragoljub, born on 1st June 1941, subject of red notice File No. 1999/29615, Control No. A-521/7-1999;
 STOJILJKOVIC Vljako, subject of red notice File No. 1999/29617, Control No. A-522/7-1999.
- 2.3 CHARGE: Crimes against humanity, violations of the laws or customs of war, deportation, murder and persecutions
- 2.4 LAW COVERING THE OFFENC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7 of 25th May 1993, Articles 3, 5, 19(2) and 29 of the Statute and Rules 54 to 61 of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 2.5 MAXIMUM PENALTY POSSIBLE: Life imprisonment
- 2.6 TIME-LIMIT FOR PROSECUTION OR EXPIRY DATE OF ARREST WARRANT: None
- 2.7 ARREST WARRANT: No number (case No. IT-99-37-I), issued on 24th May 1999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located in The Hague, Netherlands)
 Name of signatory: David Hunt, Judg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COPY OF ARREST WARRANT AVAILABLE AT THE GENERAL SECRETARIAT IN THE
 LANGUAGE USED BY THE REQUESTING COUNTRY: YES

3. **ACTION TO BE TAKEN IF TRAC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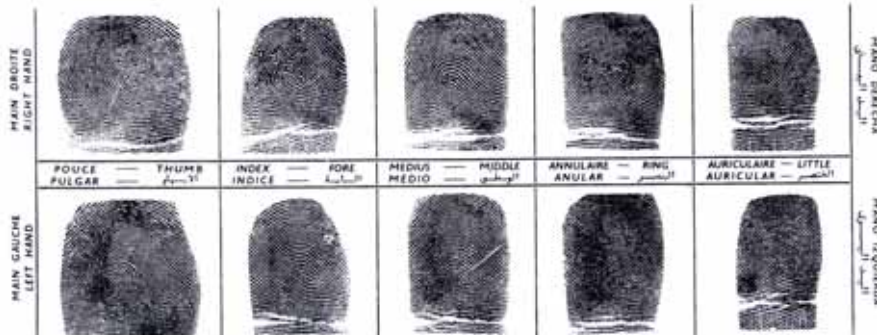
- 3.1 IF FOUND, PLEASE ARREST AND DETAIN PENDING TRANSFER TO THE TRIBUNAL AS SET OUT IN THE WARRANT OF ARREST, PURSUANT TO RULE 57 OF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IMMEDIATELY INFORM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THE HAGUE (Reference INV 04538/ja/JR/mf of 18th June 1999) AND THE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THAT THE FUGITIVE HAS BEEN FOUND.

2. 청색 수배서

FRANCO Guy Maurice
B-70/12-2000



FRANCO Guy Maurice B-70/12-2000



PHOTOGRAPHED ON 19TH OCTOBER 1994 IN AIX-EN-PROVENCE, FRANCE
FINGERPRINTED ON 17TH JUNE 1991 IN CAVAILLON, FRANCE

PRESENT FAMILY NAME: FRANCO

FORENAMES: Guy Maurice SEX: M

DATE AND PLACE OF BIRTH: 23rd October 1948 - Bonnieux, Vaucluse, France

FATHER'S FAMILY NAME AND FORENAME: FRANCO Henri

MOTHER'S MAIDEN NAME AND FORENAME: PANZA Berthe

IDENTITY CONFIRMED - NATIONALITY: FRENCH (CONFIRMED)

DESCRIPTION: Height 176 cm, slim build, brown eyes.

DISTINGUISHING MARKS AND CHARACTERISTICS: Several tattoos (see photographs), emaciated face.

LANGUAGE SPOKEN: French.

ADDITIONAL INFORMATION: FRANCE: Recorded for receiving stolen property with aggravating circumstances and criminal conspiracy. He is currently implicated in a drugs case.

ACCOMPLICE: FINE Robert, born on 27th September 1950, subject of blue notice File No. 2000/57776, Control No. B-71/12-2000.

File No. 2000/57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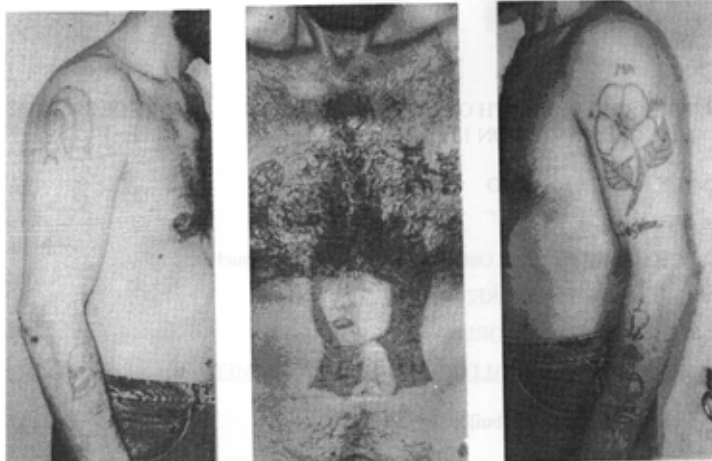
Control No. B-70/12-2000

CONFIDENTIAL INTENDED ONLY FOR POLICE AND JUDICIAL AUTHORITIES

SUMMARY OF FACTS OF THE CASE: FRANCE, Gard, Roquemaure: On 20th December 2000, FRANCO and FINE shot at police officers when they were about to be stopped and questioned. One police officer was killed and a second officer was seriously wounded. FRANCO and FINE escaped in a Peugeot 605 car, registration No. 7585 WF 30.

PURPOSE OF NOTICE: To locate and trace only. Please send any information available to INTERPOL FRANCE (Reference DCPJ/SDAC/OCRBJ 213/00 of 21st December 2000), and the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B-70/12-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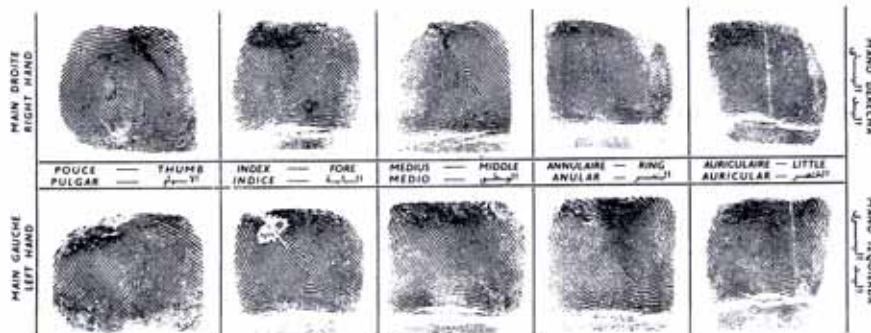


3. 녹색 수배서

WINTERHALDER Edward Warren
C-35/6-2000



WINTERHALDER Edward Warren C-35/6-2000



CAUTION: THIS PERSON IS CONSIDERED TO BE DANGEROUS

PRESENT FAMILY NAME: WINTERHALDER

FORENAMES: Edward Warren **SEX:** M

DATE AND PLACE OF BIRTH: 12th June 1955 - Connecticut, United States

IDENTITY CONFIRMED - NATIONALITY: UNITED STATES CITIZEN (CONFIRMED)

DESCRIPTION: Height 170 cm, weight 67 - 68 kg, brown hair, blue eyes.

ALSO KNOWN AS: WINTERHALDER Edward Lee.

COUNTRIES LIKELY TO BE VISITED: Germany, Mexico.

ADDITIONAL INFORMATION: UNITED STATES: WINTERHALDER has a criminal record for resisting arrest, theft and possession of stolen vehicles, carrying a concealed weapon and firearm, forging a United States treasury check, possession of a fictitious driving licence, concealing stolen property.

CRIMINAL ACTIVITIES AND MODUS OPERANDI: WINTERHALDER is President of the Tulsa, Oklahoma, chapter of the Bandidos motorcycle club. The Bandidos chapters are organized crime groups which are heavily involved in drug trafficking. This constitutes their main source of income. They rely on violence and intimidation to prevent their members from being prosecuted for criminal acts.

File No. 2000/24860

Control No. C-35/6-2000

CONFIDENTIAL INTENDED ONLY FOR POLICE AND JUDICIAL AUTHORITIES

Their illegal activities include murder, importation and distribution of drugs, rape, assault, firearms offences, extortion, intimidation of potential witnesses, theft from military depots, bombings, and motorcycle and vehicle theft.

Initially, the Bandidos were simply rowdy and violent motorcycle enthusiasts at war with society. Now they form a highly sophisticated criminal organization and constitute one of the largest outlaw motorcycle gangs in the world with chapters in at least 8 countries. There are over 25 chapters of the Bandidos motorcycle club in the United States.

PURPOSE OF NOTICE: To give law enforcement agencies in member countries information about someone who has committed, or is likely to commit, offences affecting several countries.

In order that this notice may be kept up to date, please send any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is person to INTERPOL WASHINGTON (Reference 20000201532/SXB of June 2000) and the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C-35/6-2000

4. 황색 수배서



PHOTOGRAPHED (LEFT)

PRESENT FAMILY NAME: VAN ZIJL FORENAMES: Catharina Ida Lambertus SEX: F
DATE AND PLACE OF BIRTH: 3rd May 1935 - the Hague, Netherlands

FATHER'S FAMILY NAMES AND FORENAMES: VAN ZIJL Wilhelmus Johannes
MOTHER'S MAIDEN NAME AND FORENAMES: SCHAFFHAUSEN Catharina Mathilda

NATIONALITY: NETHERLANDS CITIZEN

DESCRIPTION: Height 165 cm, weight 58 kg, brown hair, brown eyes.

DISTINGUISHING MARKS AND CHARACTERISTICS: Has had a facelift.

ALSO KNOWN AS: Kirty or Kitty.

OCCUPATION: Yoga teacher.

COUNTRY LIKELY TO BE VISITED: India.

LANGUAGES SPOKEN: Dutch, French, English, German, Spanish.

CLOTHING: Classic type.

MARITAL STATUS: Divorced.

CIRCUMSTANCES OF DISAPPEARANCE: In 1992, VAN ZIJL and her daughter HOOGENRAAD Marjolein, went to India to search for SCHOEN Carina Maria. Nothing has been heard from VAN ZIJL or her daughter since then. SCHOEN had gone to India on 22nd January 1987 "to join Sai Baba". She stayed in Bombay, Kashmir and Bangalore. She kept in touch with her family in the Netherlands until 16th February 1987. She was last said to be staying in north Pakistan. Nothing has been heard from her since that time.

ADDITIONAL INFORMATION: SCHOEN Carina Maria, born on 23rd October 1935, is the subject of yellow notice File No. 34960/96, Control No. F-125/10-1996 (see middle photograph); HOOGENRAAD Marjolein, born on 18th October 1968, is the subject of yellow notice File No. 34964/96, Control No. F-127/10-1996 (see photograph on right).

PURPOSE OF NOTICE: Issued at the request of the Netherlands authorities in order to locate this person. If traced, please ask if her address may be disclosed. Please send any information available to INTERPOL THE HAGUE (Reference 7.223.0/96.1881(9655139) of 13th August 1996) and the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File No. 34962/96

Control No. F-126/10-1996

CONFIDENTIAL INTENDED ONLY FOR POLICE AND JUDICIAL AUTHORITIES

5. 흑색 수배서

- CADAVRE A IDENTIFIER - CADAVER POR IDENTIFICAR D-83/10-1998
 - CORPSE TO BE IDENTIFIED جثة يراد تبين هوية صاحبها



NETHERLANDS: On 18th September 1996, the body of a man was found in the waters of the Houtmankade in Amsterdam. The cause of death is unknown.

DESCRIPTION: (see photograph)

White male, aged between 20 and 35 years, height 178 cm, light brown hair, goatee beard, brown eyes, circumcised, piercing in right eyebrow, tattoo of a rabbit head and a "joint" on left upper arm and shoulder (see photograph).

TEETH: Irregular; no dental treatment or fillings; upper corner teeth overlap the front teeth.

CLOTHING: Grey/beige naval sweater, size 48, make "Challenger"; white/beige T-shirt with buttons, size XL, a label marked "Guepard" on left sleeve; black and white check trousers with button fastening, size 28, make "TSI"; black canvas belt with copper buckle; blue and yellow check boxer shorts with a flower print, French origin, make "Marnal T3"; white socks with brown flower print; brown and green shoes, make "Railers".

REASON FOR NOTICE: Issued at the request of the Netherlands authorities for identification purposes. Please send any information available to INTERPOL THE HAGUE (Reference 5.41/96.12481 asn/mvl 9839885) of 8th October 1998) and the ICPO-Interpol General Secretariat.

File No. 1998/39421

Control No. D-83/10-1998

CONFIDENTIAL INTENDED ONLY FOR POLICE AND JUDICIAL AUTHORITIES

II. 인터폴 현장

일 반 조 항

제1조 “국제형사경찰위원회”로 호칭되던 본 기구는 차후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이라 칭하고 그 소재지는 “프랑스”로 한다.

제2조 본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각국의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형사경찰당국간에 최대한의 공조를 보장·증진시킨다.
- ② 보통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설립하고 발전시킨다.

제3조 본 기구가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띤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4조 각 국가는 그 기능이 본 기구의 활동범위에 합치되는 공식 경찰기관을 본 기구 회원국으로 대표될 수 있다. 본 기구 가입신청서는 관계 정부당국이 본 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기구 가입은 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기구 및 조직

제5조 국제형사경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총 회
- 집행위원회
- 사 무 총 국
- 국가중앙사무국
- 고 문

총 회

제6조 총회는 본 기구의 최고권한을 가진다. 총회는 본 기구 회원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된다.

제7조 각 회원국은 1명 또는 수 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다만 각국의 수석대표는 1명으로 관계 정부당국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각 회원국은 본 기구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다음의 인사들이 대표단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직 공무원
- ② 통상업무가 본 기구의 활동에 관계되는 공무원
- ③ 의제에 관련된 전문가

제8조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헌장에 규정된 임무의 수행
- ② 헌장 제2조에 규정된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과 일반적 조치사항의 결정
- ③ 사무총장이 작성한 차년도의 일반적 사무계획 검토 및 승인
-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칙의 제정
- ⑤ 헌장에 규정된 기능수행을 위한 인원선출
- ⑥ 본 기구가 취급하는 사항에 관련하여 결의안 채택 및 권고
- ⑦ 본 기구의 재정에 관한 정책결정
- ⑧ 타 기구와 체결하는 협정의 검토와 승인.

제9조 회원국은 본연의 업무에 위배되지 않는 한 총회의 결정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총회는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는 회기중 특수사항을 취급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는 회기의 최종회의시 차기총회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차기총회의 일자리는 사무총장과 협의후 개최국과 총재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총회에서 각국 대표는 1명에 한하여 투표권을 가진다.

제14조 헌장에 의하여 2/3 다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과반수로 의결한다.

집행위원회

제15조 ① 집행위원회는 총재, 3명의 부총재 및 집행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 위원 13명은 지리적 안배를 고려하여 소속국이 달라야 한다.

제16조 ① 총재와 3명의 부총재는 회원국 대표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재선거에는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만약 2차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단순 과반수에 의한다.

③ 총재와 부총재는 각각 다른 대륙에서 나와야 한다.

제17조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직후에 동일직위 또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에 재선될 수 없다. 총재선거에 이어, 제15조(2항) 또는 제16조(3항)에 적용될 수 없거나 상반될 경우에 제4부총재를 선출하여 4개 대륙의 대표가 총재단에 모두 참여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잠정기간 14명이 된다. 이 잠정기간은 제15조 및 제16조의 적용이 가능해지면 조속히 종료되어야 한다.

제18조 총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회의주재 및 토의진행
- ② 기구의 활동이 총회 및 집행위원회 결정에 일치되도록 보장
- ③ 가능한 한 사무총장과 직접 지속적인 접촉 유지

제19조 집행위원회의 위원 9명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기만료

직후에는 동일 직위에 재선될 수 없다.

제20조 집행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1회이상 회합하며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제21조 집행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 각 소속국의 대표자로서가 아니고, 기구의 대표자로서 행동하여야 한다.

제22조 집행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총회 결정사항의 집행을 감독한다.
- ② 총회 회의의 의제안을 작성한다.
- ③ 집행위원회가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또는 사업의 계획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 ④ 사무총장의 행정 및 업무를 감독한다.
- ⑤ 총회가 위임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23조 집행위원회의 위원중 사임 또는 사망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총회에서 다른 위원을 선출하되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은 누구나 기구에 대한 대표의 자격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위원직도 상실된다.

제24조 집행위원회 위원은 임기만료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의 임기종료시까지 그 직을 보유한다.

사 무 총 국

제25조 사무총국은 기구상설부서들로 구성된다.

제26조 사무총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시행한다.
- ② 보통범죄의 진압에 있어 국제 “센터”의 역할을 한다.
- ③ 기술 및 정보 “센터”의 역할을 한다.

- ④ 기구의 효율적인 행정을 보장한다.
- ⑤ 국가 및 국제기관과 접촉을 유지하며 다만 범죄자 수배에 관련된 문제는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하여 처리한다.
- ⑥ 유익하다고 간주되는 간행물을 발간한다.
- ⑦ 총회, 집행위원회 및 본 기구의 기타 기관의 회의에서 사무국 업무를 수행한다.
- ⑧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요하는 차년도 사업계획안을 작성한다.
- ⑨ 가능한 한 총재와 직접,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한다.

제27조 사무총국은 사무총장과 기구업무를 위임받은 기술 및 행정직원으로 구성된다.

제28조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임명하되,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재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이다. 그러나 임기중 정년에 달하였을 경우 임기 만료시까지 유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경찰분야의 유능한 인재중에서 선임한다. 특별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사무총장의 해임을 총회에서 건의할 수 있다.

제29조 사무총장은 총회 및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지시에 따라 직원을 채용, 감독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상설부서를 조직·감독한다. 사무총장은 기구업무에 관한 제안 또는 계획을 집행위원회 또는 총회에 제출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총회, 집행위원회 및 부속기관의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 임무수행에 있어 기구를 대표하는 것이며 특정국가를 대표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사무총장과 그 직원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기구이외의 여하한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무총장과 그 직원은 그들의 국제적 직무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기구회원은 사무총장과 그 직원의 업무가 국제적 성격임을 존중해야 하며, 그들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모든 회원은 사무총장과 그 직원의 임무수행을 돕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 가 중 앙 사 무 국

제31조 기구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원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요하며, 회원국은 본 기구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2조 전조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은 국가중앙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을 임명한다. 국가중앙사무국은 다음 기관과의 연락을 확보한다.

- ① 국내 각 부서
- ② 타국의 국가중앙사무국
- ③ 기구 사무총국

제33조 전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거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사무총국이 해당 국가와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다른 협력 방안을 결정한다.

고 문

제34조 기구는 과학적인 문제에 관하여 “고문”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5조 고문의 역할은 순수한 자문이어야 한다.

제36조 고문은 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고문의 임명은 총회의 통고에 있는 다음에 확정된다. 고문은 기구에 관계되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중에서 선임한다.

제37조 고문은 총회의 결정으로 해임할 수 있다.

예 산 과 재 원

제38조 기구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원국의 재정분담금
- ② 집행위원회에서 수리했거나 승인한 증여, 유증, 보조금, 교부금 및 기타 재원.

제39조 총회에서는 사무총장이 작성한 예산안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분담기준과 세출 한도액을 정한다.

제40조 기구예산안은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안은 총회가 수락한 연후에 집행된다. 총회가 예산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전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타 기구와의 관계

제41조 기구는 헌장이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국제기구들과 관계를 수립하고 협력한다. 이들 국제기구들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기구는 관계분야의 제반문제에 대하여 비정부간국제기구, 각국 정부 또는 비정부간 국내기구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집행위원회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구의 활동 및 능력의 범위 내에서 타 국제조직체로부터 또는 국제협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임무를 위임받을 수 있다.

헌장의 적용, 개정 및 해석

제42조 본 헌장은 회원 또는 집행위원회 발의로 개정할 수 있다. 헌장의 개정제외는 사무총장이 적어도 총회 상정 3개월 전에 기구회원국 전체에 통고하여야 한다. 헌장개정은 재적회원국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본 헌장의 불어, 영어, 스페인어판 등은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제44조 본 헌장의 적용은 일반규정과 부록을 통해서 총회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들 규정은 총회에서 2/3다수로 채택될 수 있다.

경 과 규 정

제45조 부록 I 에 기재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은 관계정부기관을 통하여 본 헌장을 수락할 수 없음을 선언하지 않는 한 본 기구의 회원국으로 간주한다. 이 수락 거부성명은 본 헌장 시행개시전 6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6조 최초의 선거에서 임기 1년의 부총재 1명을 추천으로 선출한다. 최초의 선거에서 임기 1년의 집행위원회 위원 2명과 임기 2년의 집행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으로 선출한다.

제47조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의 직원으로서 공적이 많고 다년간 근속한 자에게는 총회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에 상응하는 계급의 명예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제48조 국제형사경찰위원회의 재산은 모두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이전한다.

제49조 본 헌장에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기 구 : 국제형사경찰기구
- 헌 장 :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헌장
- 사무총장 :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사무총장
- 위 원 회 : 본 기구의 집행위원회
- 총 회 : 본 기구의 총회
- 회 원 국 : 본 헌장 제4조에 규정된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회원
- 대 표 : 본 헌장 제7조에 규정된 대표단에 속하는 대표
- 대표위원 : 본 헌장 제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위원회위원에 선출된 자

제50조 본 헌장은 195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록 I

헌장 제4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명단: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버마(미얀마), 캄보디아, 캐나다, 실론,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에이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연방공화국, 그리스, 과테말라,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레바논, 리베리아, 리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모나코, 네덜란드, 네덜란드안틸레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포르투갈, 사르,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수단,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태국, 터키,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유고슬라비아

* 본 인터폴헌장은 경찰청이 발행한 자료 중에서 일부분 수정한 것임: 경찰청, 『인터폴』, 경찰청 인터폴기획단, 1997, pp. 86-108 참조.

III. Schengen Implementation Convention(excerpts)

(CONVENTION from 19 June 1990 APPLYING THE SCHENGEN AGREEMENT OF 14 JUNE 1985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OF THE BENELUX ECONOMIC UNIO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FRENCH REPUBLIC, ON THE GRADUAL ABOLITION OF CHECKS AT THEIR COMMON BORDERS)

Title III Police and Security

Chapter I Police Cooperation

Article 39

1.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ensure that their police authorities shall, in compli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within the limits of their responsibilities, assist each other for the purposes of preventing and detecting criminal offences, insofar as national law does not stipulate that the request is to be made to the legal authorities and provided the request or the implementation thereof does not involve the application of coercive measures by the requested Contracting Party. Where the requested police authorities do not have jurisdiction to implement a request, they shall forward i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2. The writte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requested Contracting Party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used by the requesting Contracting Party as evidence of the criminal offence other than with the agreement of the relevant legal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Contracting Party.
3. Requests for assistan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the replies to such requests may be exchanged between the central bodies responsible in each Contracting Party for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Where the request

cannot be made in good time by the above procedure, it may be addressed by the police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Contracting Party directly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Party, which may reply directly. In such cases, the requesting police authority shall as soon as possible inform the central body responsible in the requested Contracting Party for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of its direct application.

4. In border regions, co-operation may be covered by arrangements between the responsible Ministers of the Contracting Parties.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clude more detailed present or future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with a common border.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of such agreements.

Article 40

1. Police officers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who, within the framework of a criminal investigation, are keeping under observation in their country, a person who is presumed to have taken part in a criminal offence to which extradition may apply, shall be authorized to continue their observation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where the latter has authorized cross-border observation in response to a request for assistance which has previously been submitted. Conditions may be attached to the authorization.

On request, the observation will be entrusted to officers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it is carried out.

The request, for assistance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must be sent to an authority designated by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having jurisdiction to grant or to forward the requested authorization.

2. Where, for particularly urgent reasons, prior authoriz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annot be requested, the officers conducting the

observation shall be authorized to continue beyond the border the observation of a person presumed to have committed offences listed in paragraph 7,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a) the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y designated under paragraph 5, in whose territory the observation is to be continued, must be notified immediately, during the observation, that the border has been crossed;
- (b) a request for assistance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nd outlining the grounds for crossing the border without prior authorization shall be submitted without delay.

Observation shall cease as soon as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it is taking place so requests, following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a) or the request referred to in (b) or where authorization has not been obtained five hours after the border was crossed.

3. The observ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carried out only under the following general conditions:
 - (a) The officers conducting the observation mus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with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y are operating; they must obey the instructions of the local responsible authorities.
 - (b) Except in the situa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the officers shall, during the observation, carry a document certifying that authorization has been granted.
 - (c) The officers conducting the observation must be able at all times to provide proof that they are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 (d) The officers conducting the observation may carry their service weapons during the observation save where specifically otherwise decided by the requested party; their use shall be prohibited save in cases of legitimate self-defence.

- (e) Entry into private homes and places not accessible to the public shall be prohibited.
 - (f) The officers conducting the observation may neither challenge nor arrest the person under observation.
 - (g) All operations shall be the subject of a report to the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y took place; the officers conducting the observation may be required to appear in person.
 - (h) The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y from which the observing officers have come shall, when reques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observation took place, assist the enquiry subsequent to the operation in which they took part, including legal proceedings.
4. The offic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 (a) as regards the Kingdom of Belgium: members of the "police judiciaire près les Parquets", the "gendarmerie" and the "police communale" as well as customs officers,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ppropriate bilateral agre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6, with respect to their powers regarding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traffic in arms and explosives, and the illicit carriage of toxic and dangerous waste;
 - (b) as regards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officers of the "Polizei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as well as, with respect only to illegal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nd arms traffic, officers of the "Zollfahndungsdienst" (customs investigation service) in their capacity as auxiliary officers of the public ministry;
 - (c) as regards the French Republic: officers and criminal police officers of the national police and national "gendarmerie" as well as customs officers,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ppropriate bilateral agreements referred

-
- to in paragraph 6, with respect to their powers regarding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traffic in arms and explosives, and the illicit carriage of toxic and dangerous waste;
- (d) as regards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officers of the "gendarmérie" and the police as well as customs officers,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ppropriate bilateral agre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6, with respect to their powers regarding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traffic in arms and explosives, and the illicit carriage of toxic and dangerous waste;
- (e) as regards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officers of the "Rijkspolitie" and the "Gemeentepolitie" as well as,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ppropriate bilateral agre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6, with respect to their powers regarding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traffic in arms and explosives and the illicit carriage of toxic and dangerous waste, officers of the fiscal information and research service responsible for entry and excise duties.
5. The authority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 (a) as regards the Kingdom of Belgium: the "Commissariat général de la Police judiciaire";
- (b) as regards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Bundeskriminalamt.";
- (c) as regards the French Republic: the "Direction centrale de la Police judiciaire";
- (d) as regards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the "Procureur général d'Etat";
- (e) as regards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he "Landelijk Officier van Justitie" responsible for cross-border observation.
6.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t bilateral level, extend the scope of this Article and adopt additional measures in implementation thereof.

7. The observ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may take place only for one of the following criminal offences:
- (a) assassination,
 - (b) murder,
 - (c) rape,
 - (d) arson,
 - (e) counterfeiting,
 - (f) armed robbery and receiving of stolen goods,
 - (g) extortion,
 - (h) kidnapping and hostage taking,
 - (i) traffic in human beings,
 - (j)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 (k) breach of the laws on arms and explosives,
 - (l) use of explosives,
 - (m) illicit carriage of toxic and dangerous waste.

Article 41

1. Officers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following, in their country, an individual apprehended in the act of committing one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or participating in one of those offences, shall be authorized to continue pursuit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prior authorization where given the particular urgency of the situation it was not possible to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y one of the means provided for in Article 44 prior to entry into that territory or where these authorities have been unable to reach the scene in time to take over the pursuit.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 person pursued has escaped from provisional custody or while serving a custodial sentence.

The pursuing officers shall, not later than when they cross the border, contac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pursuit is to take place. The pursuit will cease as soon as the Contracting Party on the territory of which the pursuit is taking place so requests. At the request of the pursuing officers, the competent local authorities shall challenge the pursued person so as to establish his identity or to arrest him.

2. The pursuit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one of the following procedures, defined by the declar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9:
 - (a) The pursuing officers shall not have the right to apprehend.
 - (b) If no request to cease the pursuit is made and if the competent local authorities are unable to intervene quickly enough, the pursuing officers may apprehend the person pursued until the officers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pursuit is taking place, who must be informed without delay, are able to establish his identity or arrest him.
3. Pursuit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in one of the following ways as defined by the declar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9:
 - (a) in an area or during a period as from the crossing of the border, to be established in the declaration;
 - (b) without limit in space or time.
4. In a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9,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define the offens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 accordance with one of the following procedures:
 - (a) The following offences:
 - assassination,
 - murder,
 - rape,
 - arson,

- counterfeiting,
- armed robbery and receiving of stolen goods,
- extortion,
- kidnapping and hostage taking,
- traffic in human beings,
-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 breach of the laws on arms and explosives,
- use of explosives,
- illicit carriage of toxic and dangerous waste.
- taking to flight after an accident which has resulted in death or serious injury.

(b) Extraditable offenses.

5. Pursuit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general conditions:

- (a) The pursuing officers mus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with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y are operating; they must obey the instructions of the competent local authorities.
- (b) Pursuit shall be solely over land borders.
- (c) Entry into private homes and places not accessible to the public shall be prohibited.
- (d) The pursuing officers shall be easily identifiable, either by their uniform or by means of an armband or by accessories fitted to their vehicle; the use of civilian clothes combined with the use of unmarked vehicles without the aforementioned identification is prohibited; the pursuing officers must at all times be able to prove that they are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 (e) The pursuing officers may carry their service weapons; their use shall be prohibited save in cases of legitimate self-defence.
- (f) Once the pursued person has been apprehended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2(b), for the purpose of bringing him before the competent local authorities he may be subjected only to a security search;

handcuffs may be used during his transfer; objects carried by the pursued person may be seized.

- (g) After each operation mentioned in paragraphs 1, 2 and 3, the pursuing officers shall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cal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y were operating and shall give an account of their mission; at the request of those authorities, they must remain at their disposal until the circumstances of their action have been adequately elucidated; this condition shall apply even where the pursuit has not resulted in the arrest of the pursued person.
 - (h) The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y from which the pursuing officers have come shall, when reques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pursuit took place assist the enquiry subsequent to the operation in which they took part, including legal proceedings.
6. A person who, following the ac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2, has been arrested by the competent local authorities may, whatever his nationality, be held for questioning. The relevant rules of national law shall apply by analogy.

If the person is not a national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he was arrested, he shall be released no later than six hours after his arrest, not including the hours between midnight and 9.00 in the morning, unless the competent local authorities have previously received a request for his provisional arrest for the purposes of extradition in any form whatever.

7. The officers referred to in the previous paragraphs shall be:
- (a) as regards the Kingdom of Belgium: members of the "police judiciaire près les Parquets", the "gendarmerie" and the "police communale" as well as customs officers,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ppropriate bilateral agre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0, with respect to their powers regarding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 traffic in arms and explosives, and the illicit carriage of toxic and dangerous waste;
- (b) as regards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officers of the "Polizei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as well as, with respect only to illegal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nd arms traffic, officers of the "Zollfahndungsdienst" (customs investigation service) in their capacity as auxiliary officers of the public ministry;
 - (c) as regards the French Republic: officers and criminal police officers of the national police and national "gendarmerie" as well as customs officers,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appropriate bilateral agre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0, with respect to their powers regarding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traffic in arms and explosives, and the illicit carriage of toxic and dangerous waste;
 - (d) as regards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officers of the "gendarmerie" and the police as well as customs officers,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appropriate bilateral agre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0, with respect to their powers regarding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traffic in arms and explosives, and the illicit carriage of toxic and dangerous waste;
 - (e) as regards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officers of the "Rijkspolitie" and the "Gemeentepolitie" as well as,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appropriate bilateral agre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0, with respect to their powers regarding the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traffic in arms and explosives and the illicit carriage of toxic and dangerous waste, officers of the fiscal information and research service responsible for entry and excise duties.
8. This Article shall be without prejudice, where the Contracting Parties are concerned, to Article 27 of the Benelux Treaty of 27 June 1962 on Extradi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s amended by the Protocol of 11 May 1974;
9. On signing this Convention,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make a

declaration in which it shall define, on the basis of paragraphs 2, 3 and 4 above,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pursuit in its territory for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with which it has a common border.

A Contracting Party may at any moment replace its declaration by another declaration, provided the latter does not, restrict the scope of the former.

Each declaration shall be made after consultations with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and with a view to obtaining equivalent arrangements on both sides of internal borders.

10. The Contracting Parties may, on a bilateral basis, extend the scope of paragraph 1 and adopt additional provisions in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Article 42

During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s 40 and 41, officers operating o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garded as officers of that Party with respect to offences committed against them or by them.

Article 43

1. Wher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0 and 41 of this Convention, officers of a Contracting Party are operating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damage caused by them during the course of their 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y are operating.
2.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damage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caused shall repair such damage under the conditions applicable to damage caused by its own officers.
3. The Contracting Party whose officers have caused damage to whomsoever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reimburse in full to the

latter any sums it has paid out to the victims or other entitled persons.

4. Without prejudice to the exercise of its rights vis-a-vis third parties and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3,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refrain, in the cas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from requesting reimbursement of the amount of the damages it has sustained from an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44

1.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account being taken of local circumstances and the technical possibilitie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set up, in particular in border areas, telephone, radio, and telex lines and other direct links to facilitate police and customs cooperation, in particular for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in good time for the purposes of cross-border observation and pursuit.
2. In addition to these short-term measures, they will in particular examine the following possibilities:
 - (a) the exchange of equipment or the assignment of liaison officials provided with appropriate radio equipment;
 - (b) the widening of the frequency bands used in border areas;
 - (c) the establishment of a common link for police and customs services operating in these same areas;
 - (d) co-ordination of their programmes for the procurement of communications equipment,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introduction of standardized compatible communications systems.

Article 45

1.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take the measures required to guarantee that:
 - (a) the managers of establishments providing lodging or their employees

ensure that aliens accommodated therein, including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as well as those of other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with the exception of accompanying spouses or minors or members of travel groups, personally complete and sign declaration forms and confirm their identity by the production of a valid identity document;

- (b) the declaration forms thus completed will be kept for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forwarded to them where such authorities deem thi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threats, for criminal proceedings or to ascertain what has happened to persons who have disappeared or who have been the victim of an accident, save where national law provides otherwise.
2. Paragraph 1 shall apply by analogy to persons staying in any accommodation provided by professional lessors, in particular tents, caravans and boats.

Article 46

1. In particular cases, each Contracting Party may, in compliance with its national legislation and without being asked, send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any information which may be of interest to it in helping prevent future crime and to prevent offences against or threats to public order and security.
2. Information shall be exchanged, without prejudice to the arrangements for co-operation in border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39(4), through a central body to be designated. In particularly urgent case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in the meaning of this Article may take place directly between the police authorities concerned, save where national provisions provide otherwise. The central body shall be informed of this as soon as possible.

Article 47

1.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nclude bilateral agreements providing for the secondment, for a specified or unspecified period, of liaison officers from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police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The secondment of liaison officers for a specified or unspecified period is intended to promote and to accelerate co-oper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particularly by providing assistance.
 - (a) in the form of the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fighting crime by means both of prevention and of punishment,
 - (b) in complying with requests for mutual police assistance and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 (c) for the purposes of missions carried out by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surveillance of external borders.
3. Liaison officers shall have the task of giving advice and assistance. They shall not be competent to take independent police action. They shall supply information and perform thei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given to them by the Contracting Party of origin and by the Contracting Party to which they are seconded. They shall make report regularly to the head of the police service to which they are seconded.
4.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gree withi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framework that liaison officers from a Contracting Party seconded to third States shall also represent the interests of one or more other Contracting Parties. Under such agreements, liaison officers seconded to third States shall supply information to other Contracting Parties when requested to do so or on their own initiative and shall, within the limits of their powers, perform duties on behalf of such Partie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form one another of their intentions as regards the secondment of liaison officers to third States.

....생략

TITLE IV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Chapter I Setting up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rticle 92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set up and maintain a joint information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consisting of a national section in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a technical support function.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shall enable the authorities designat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by means of an automated search procedure, to have access to reports on persons and objects for the purposes of border checks and controls and other police and customs checks carried out within the countr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in the case of the single category of report referred to in Article 96, for the purposes of issuing visas, the issue of residence permits and the administration of aliens in the contex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relating to the movement of persons.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set up and maintain, for its own account and at its own risk, its national se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the data file of which shall be made materially identical to the data files of the national sections of each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using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To ensure the rapid and effective transmission of data as referred to in paragraph 3,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bserve, when creating its national section, the protocols and procedures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jointly established for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Each national section's data file shall be available for the purposes of automated search in the territory of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It shall not be possible to search the data file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national sections.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set up and maintain jointly and with joint

liability for risks,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the responsibility for which shall be assumed by the French Republic;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shall be located in Strasbourg.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shall comprise a data file which ensures that the data files of the national sections are kept identical by the on-lin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The data file of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shall contain reports on persons and objects where these concern all the Contracting Parties. The data file of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shall contain no data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and in Article 113(2).

Chapter II Operation and utiliza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rticle 93

The purpose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to maintain public order and security, including State security, and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relating to the movement of persons, in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sing information transmitted by the system.

Article 94

1.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shall contain only the categories of data which are supplied by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are required for the purposes laid down in Articles 95 to 100. The Contracting Party providing a report shall determine whether the importance of the case warrants the inclusion of the report in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2. The categories of data shall be as follows:
 - (a) persons reported
 - (b) objects referred to in Article 100 and vehicles referred to in Article 99.

-
3. The items included in respect of persons, shall be no more than the following:
- (a) name and forename, any aliases possibly registered separately;
 - (b) any particular objective and permanent physical features;
 - (c) first letter of second forename;
 - (d) date and place of birth;
 - (e) sex;
 - (f) nationality;
 - (g) whether the persons concerned are armed;
 - (h) whether the persons concerned are violent;
 - (i) reason for the report;
 - (j) action to be taken.

Other references, in particular the data listed in Article 6, first sentence of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f 28 January 1981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shall not be authorized.

4. Insofar as a Contracting Party considers that a re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95, 97 or 99 is incompatible with its national law,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or essential national interests, it may subsequently add to the report in the data file of the national se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 note to the effect that the action referred to will not be taken in its territory in connection with the report. Consultations must be held in this connection with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If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does not withdraw the report it will continue to apply in full for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Article 95

1. Data relating to persons wanted for arrest for extradition purposes shall be included at the request of the judici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Contracting Party.

2. Prior to making a report,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shall check whether the arrest is authorized by the national law of the requested Contracting Parties. If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has doubts, it must consult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shall send the requested Contracting Parties together with the report, by the swiftest means, the following essenti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ase:

- (a) the authority which issued the request for arrest;
 - (b) whether there is an arrest warrant or a document having the same force, or an enforceable judgment;
 - (c) the nature and legal classification of the offence;
 - (d) a description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offence was committed, including the time, place and degree of participation in the offence by the person reported;
 - (e) as far as possible, the consequences of the offence.
3. A requested Contracting Party may add to the report in the file of the national se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 note prohibiting arrest in connection with the report, until such time as the note is deleted. The note shall be deleted no later than 24 hours after the report is included, unless the Contracting Party refuses to make the requested arrest on legal grounds or for special reasons of expediency. Where, in particularly exceptional cases, this is justified by the complexity of the facts underlying the report, the above time limit may be extended to one week. Without prejudice to a qualifying note or a decision to refuse arrest,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may make the arrest requested in the report.
 4. If, for particularly urgent reasons, a Contracting Party requests an immediate search, the Party requested shall examine whether it is able to withdraw its note. The Contracting Party requested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the action to be taken can be carried out without delay if the report is validated.

5. If the arrest cannot be made because an investigation has not been completed or owing to a refusal by the requested Contracting Party, the latter must regard the report as being a report for the purposes of communicating the place of residence of the person concerned.
6. The requested Contracting Parties shall carry out the action to be taken as requested in the report in compliance with extradition Conventions in force and with national law. They shall not be required to carry out the action requested where one of their nationals is involved, without prejudice to the possibility of making the arrest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rticle 96

1. Data relating to aliens who are reported for the purposes of being refused entry shall be included on the basis of a national report resulting from decisions taken, in compli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laid down by national legislation,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courts responsible.
2. Decisions may be based on a threat to public order or national security and safety which the presence of an alien in national territory may pose.

Such may in particular be the case with:
 - (a) an alien who has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carrying a custodial sentence of at least one year;
 - (b) an alien who, there are serious grounds for believing, has committed serious offences, including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71, or against whom there is genuine evidence of an intention to commit such offences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3. Decisions may also be based on the fact that the alien has been the subject of a deportation, removal or expulsion measure which has not been rescinded or suspended, including or accompanied by a prohibition on entry or, where appropriate, residence, based on non-compliance with national regulations on the entry or residence of aliens.

Article 97

Data relating to persons who have disappeared or to persons who, in the interests of their own protection or in order to prevent threats, need to be placed provisionally in a place of safety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y of the reporting Party, shall be included in order that the police authorities can communicate their whereabouts to the reporting Party or can remove the person to a place of safety for the purposes of preventing him from continuing his journey, if so authorized by national legislation. This shall apply in particular to minors and to persons who must be interned by decision of a competent authority. Communication of the inform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person who has disappeared, if of full age.

Article 98

1. Data relating to witnesses, to persons summoned to appear before the judicial authorities in connection with criminal proceedings in order to account for acts for which they are being prosecuted, or to persons who are to be notified of a criminal judgment or of a summons to appear in order to serve a custodial sentence, shall be included,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communicating their place of residence or domicile.
2. Information requested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reques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with the Conventions in force concerning mutual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99

1. Data relating to persons or vehicles shall be included, in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law of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for the purposes of discreet surveillance or specific check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2. Such a report may be made for the purposes of prosecuting criminal offences and for the prevention of threats to public safety:
 - (a) where there are real indications to suggest that the person concerned intends to commit or is committing numerous and extremely serious offences, or
 - (b) where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in particular on the basis of offences committed hitherto, gives reason to suppose that he will also commit extremely serious offences in future.
3. In addition, a report may be mad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t the request of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State security, where concrete evidence gives reason to suppose that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4 i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a serious threat by the person concerned or other serious threats to internal or external State security.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to consult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beforehand.
4. For the purposes of discreet surveillance, the following information may in whole or in part be collected and transmitted to the reporting authority when border checks or other police and customs checks are carried out within the country:
 - (a) the fact that the person reported or the vehicle reported has been found;
 - (b) the place, time or reason for the check;
 - (c) the route and destination of the journey;
 - (d) persons accompanying the person concerned or occupants of the vehicle;
 - (e) the vehicle used;
 - (f) objects carried;
 - (g)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person or the vehicle was found.

When such information is collected, steps must be taken to ensure that the discreet nature of the surveillance is not jeopardized.

5. In the context of the specific checks referred to in paragraph 1, persons, vehicles and objects carried may be search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3. If the specific check is not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it shall automatically be converted, for that Contracting Party, into discreet surveillance.
6. A requested Contracting Party may add to the report in the file of the national se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 note prohibiting, until the note is deleted, performance of the action to be taken pursuant to the report for the purposes of discreet surveillance or specific checks. The note must be deleted no later than 24 hours after the report has been included unless the Contracting Party refuses to take the action requested on legal grounds or for special reasons of expediency. Without prejudice to a qualifying note or a refusal decision,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may carry out the action requested in the report.

Article 100

1. Data relating to objects sought for the purposes of seizure or of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shall be included in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2. If a search brings to light the existence of a report on an item which has been found, the authority noticing the report shall contact the reporting authority in order to agree on the requisite measures. For this purpose, personal data may also be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The measures to be taken by the Contracting Party which found the object must comply with its national law.
3. The categories of object listed below shall be included:
 - (a) motor vehicles with a capacity in excess of 50cc which have been stolen, misappropriated or lost;

- (b) trailers and caravans with an unladen weight in excess of 750kg which have been stolen, misappropriated or lost;
- (c) firearms which have been stolen, misappropriated or lost;
- (d) blank documents which have been stolen, misappropriated or lost;
- (e) identification documents issued (passports, identity cards, driving licences) which have been stolen, misappropriated or lost;
- (f) bank notes (registered notes).

Article 101

1. Access to data included in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nd the right to search such data directly shall be reserved exclusively for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 (a) border checks;
 - (b) other police and customs checks carried out within the country, and the co-ordination of such checks.
2. In addition, access to data inclu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6 and the right to search such data directly may be exercised by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issuing visas, the centr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examining visa applications and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issuing residence permits and the administration of alie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movement of persons under this Convention. Access to data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 of each Contracting Party.
3. Users may only search data which ar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tasks.
4.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mmunicate to the Executive Committee a lis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which are authorized to search the data included in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directly. That list shall indicate for each authority the data which it may search, and for what purposes.

Chapter III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security of data under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rticle 102

1. The Contracting Parties may use the data provided for in Articles 95 to 100 only for the purposes laid down for each type of report referred to in those Articles.
2. Data may be duplicated only for technical purposes, provided that such duplication is necessary for direct searching by the authorities referred to in Article 101. Reports by other Contracting Parties may not be copied from the national se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in other national data files.
3. In connection with the types of report provided for in Articles 95 to 100 of this Convention, any derogation from paragraph 1 in order to change from one type of report to another must be justified by the need to prevent an imminent serious threat to public order and safety, for serious reasons of State security or for the purposes of preventing a serious offence. The prior authorization of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must obtain for this purpose.
4. Data may not be used for administrative purposes. By way of derogation, data inclu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6 may b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 of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only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01(2).
5. Any use of data which does not comply with paragraphs 1 to 4 shall be considered as a misuse in relation to the national law of each Contracting Party.

Article 103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at, on average, every tenth transmission

of personal data is recorded in the national se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by the data file managing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checking the admissibility of searching. The recording may be used only for this purpose and shall be deleted after six months.

Article 104

1. The law applying to reports shall be the national law of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unless more rigorous conditions are laid down in this Convention.
2. Insofar as this Convention does not lay down specific provisions, the law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pply to data included in the national se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3. Insofar as this Convention does not lay down specific provisions concerning performance of the action requested in the report, the national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requested which carries out the action shall apply. Insofar as this Convention lays down specific provisions concerning performance of the action requested in the report, responsibility for the action to be taken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 of the requested Contracting Party. If the action requested cannot be performed, the requested Contracting Party shall inform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without delay.

Article 105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up-to-dateness and lawfulness of the inclusion of data in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rticle 106

1. Only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shall be authorized to amend, supplement, correct or delete data which it has introduced.
2. I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which has not made the report has evidence to suggest that an item of data is legally or factually inaccurate, it shall advise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thereof as soon as possible; the latter must check the communication and, if necessary, correct or delete the item in question without delay.
3. If the Contracting Parties are unable to reach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y which did not generate the report shall submit the case to the joint supervisory authority referred to in Article 115(1) for its opinion.

Article 107

Where a person has already been the subject of a report in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 Contracting Party which introduces a further report shall come to an agreement on the inclusion of the reports with the Contracting Party which introduced the first report.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lso adopt general provisions to this end.

Article 108

1.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designate an authority which shall have central responsibility for the national se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2.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ake its reports via that authority.
3. The said authority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orrect operation of the national se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nd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4.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form one another, via the Depositary, of the authori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ticle 109

1. The right of any person to have access to data relating to him which are included in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shall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before which it invokes that right. If the national law so provides, the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y provided for in Article 114(1) shall decide whether information shall be communicated and by what procedures. A Contracting Party which has not made the report may communicate information concerning such data only if it has previously given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an opportunity to state its position.
2.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to the person concerned shall be refused if it may undermine the performance of the legal task specified in the report or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It shall be refused in any event during the period of reporting for the purposes of discreet surveillance.

Article 110

Any person may have factually inaccurate data relating to him corrected or have legally inaccurate data relating to him deleted.

Article 111

1. Any person may, in the territory of each Contracting Party, bring before the courts or the authority competent under national law an action to correct, delete or provide information or obtain compensation in connection with a report concerning him.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undertake amongst themselves to execute final decisions taken by the courts or author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6.

Article 112

1. Personal data included in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for the purposes of locating persons shall be kept only for the time required to achieve the purposes for which they were supplied. No later than three years after their inclusion, the need for their retention must be reviewed by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This period shall be one year in the case of reports referred to in Article 99.
2.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where appropriate, set shorter review periods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
3.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shall automatically inform the Contracting Parties of a scheduled deletion of data from the system, giving one month's notice.
4.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may, within the review period, decide to retain the report if its retention is necessary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 report was made. Any extension of the report must be communicated to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report extension.

Article 113

1. Data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112 shall be retained for a maximum of ten years, data relating to identity documents issued and to registered bank notes for a maximum of five years and those relating to motor vehicles, trailers and caravans for a maximum of three years.
2. Data deleted shall continue to be retained for one year in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During that period they may be consulted only for the purposes of subsequently checking their accuracy and the lawfulness of their inclusion. Afterwards they must be destroyed.

Article 114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designate a supervisory authority responsible, in compliance with national law, for carrying out independent supervision of the data file of the national se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nd for checking that the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data included in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re not in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person concerned. For this purpose the supervisory authority shall have access to the data file of the national se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2. Any person shall have the right to ask the supervisory authorities to check the data concerning him which are included in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nd the use which is made of such data. That right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to which the request is made. If the data have been included by another Contracting Party, the check shall be carried out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at Contracting Party's supervisory authority.

Article 115

1. A joint supervisory authority shall be set up, with responsibility for supervising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This authority shall consist of two representatives of each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one vote. Supervision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f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f 28 January 1981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aking into account Recommendation R (87) 15 of 17 September 1987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regulating the use of personal data in the police sector, an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responsible for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2. As regards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the joint supervisory authority shall have the task of checking tha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e properly implemented. For this purpose it shall have access to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3. The joint supervisory authority shall also be competent to examine any difficulties of application or interpretation which may arise during the opera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to study problems which may arise with the exercise of independent supervision by the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or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access to the system, and to draw up harmonized proposals for the purpose of finding joint solutions to problems.
4. Reports drawn up by the joint supervisory authority shall be forwarded to the authorities to which the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ies submit their reports.

Article 116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sponsible,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 for any injury caused to a person through the use of the national data file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This shall also be the case where the injury was caused by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where the latter included legally or factually inaccurate data.
2. If the Contracting Party against which an action is brought is not the reporting Contracting Party; the latter shall be required to reimburse, on request, sums paid out as compensation, unless the data were used by the requested Contracting Party in contravention of this Convention.

Article 117

1. With regard to the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which are transmitted pursuant to this Title,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not later

than when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make the national arrangements necessary to achieve a level of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t least equal to that resulting from the principles of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f 28 January 1981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in compliance with Recommendation R (87) 15 of 17 September 1987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regulating the use of personal data in the police sector.

2. The transmission of personal data provided for in this Title may take place only where the arrangement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provided for in paragraph 1 have entered into force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by the transmission.

Article 118

1.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undertake, in respect of the national se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to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 (a) prevent any unauthorized person from having access to installations used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hecks at the entrance to installations);
 - (b) prevent data media from being read, copied, modified or removed by unauthorized persons (control of data media);
 - (c) prevent the unauthorized entry of data into the file and any unauthorized consultation, modification or deletion of personal data included in the file (control of data entry);
 - (d) prevent automated data processing systems from being used by unauthorized persons by means of data transmission equipment (control of utilization);
 - (e) guarantee that, with respect to the use of an automated data processing system, authorized persons have access only to data for

- which they are responsible (control of access);
- (f) guarantee that it is possible to check and establish to which authorities personal data may be transmitted by data transmission equipment (control of transmission);
 - (g) guarantee that it is possible to check and establish a posteriori what personal data has been introduced into automated data processing systems, when and by whom (control of data introduction);
 - (h) prevent the unauthorized reading, copying, modification or deletion of personal data during the transmission of data and the transport of data media (control of transport).
2. Each Contracting Party must take special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data when it is being transmitted to services located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uch measures must be communicated to the joint supervisory authority.
 3. Each Contracting Party may designate for the processing of data in its national se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only specially qualified persons subject to security checks.
 4. The Contracting Party responsible for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shall take the measures laid down in paragraphs 1 to 3 in respect of the latter.

Chapter IV Apportionment of the costs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rticle 119

1. The costs of setting up and using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referred to in Article 92(3), including the cost of cabling for connecting the national sections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to the technical support function, shall be defrayed jointly by the Contracting Parties. Each Contracting Party's share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rate for each Contracting Party applied to the uniform basis of assessment of

value-added tax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1) (c) of the Decision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f 24 June 1988 on the system of the Communities' own resources.

2. The costs of setting up and using the national section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shall be borne by each Contracting Party individually.
...이하 생략

IV. Europol Convention

(CONVENTION BASED ON ARTICLE K.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POLICE OFFICE (EUROPOL CONVENTIO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REFERRING to the Council act of 26 of July 1995;

AWARE of the urgent problems arising from terrorism, unlawful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forms of international crime;

WHEREAS there is a need for progress in solidarit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particularly through an improvement in police cooperation between the Member States;

WHEREAS such progress should enable the protection of security and public order to be further improved;

WHEREAS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Police Office (Europol) was agreed in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f 7 February 1992;

IN VIEW of the decision of the European Council of 29 October 1993 that Europol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Netherlands and have its seat in The Hague;

MINDFUL of the common objective of improving polic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errorism, unlawful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forms of international crime through a constant, confidential and intensiv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Europol and Member States' national units;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forms of cooperation laid down in this Convention should not affect other forms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cooperation;

CONVINCED that in the field of police co-operation, particular attention must be paid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individuals, and in particular to the protection of their personal data;

WHEREAS the activities of Europol under this Convention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power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whereas Europol and the

Communities have a mutual interest, in the framework of the European Union, in establishing types of cooperation enabling each of them to perform their respective tasks as effectively as possible,

HAVE AGREED as follows:

TITLE I ESTABLISHMENT AND TASKS

Article 1 Establishment

1.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mber States", hereby establish a European Police Off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uropol".
2. Europol shall liaise with a single national unit in each Member State, to be established or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Article 2 Objective

1. The objective of Europol shall be, within the framework of cooperation between the Member States pursuant to Article K.1(9)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o improve, by means of the measures referred to in this Convention, the effectiveness and cooper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the Member States in preventing and combating terrorism, unlawful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forms of international crime where there are factual indications that an organized criminal structure is involved and two or more Member States are affected by the forms of crime in question in such a way as to require a common approach by the Member States owing to the scale, significance and consequences of the offences concerned.
2. In order to achieve progressively the objective mentioned in paragraph 1, Europol shall initially act to prevent and combat unlawful drug trafficking, trafficking in nuclear and radioactive substances, illegal immigrant

smuggling, trade in human beings and motor vehicle crime.

Within two years at the latest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Europol shall also deal with crimes committed or likely to be committed in the course of terrorist activities against life, limb, personal freedom or property.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may decide to instruct Europol to deal with such terrorist activities before that period has expired.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may decide to instruct Europol to deal with other forms of crime listed in the Annex to this Convention or specific manifestations thereof. Before acting, the Council shall instruct the Management Board to prepare its decision and in particular to set out the budgetary and staffing implications for Europol.

3. Europol's competence as regards a form of crime or specific manifestations thereof shall cover both:

- (1) illegal money-laundering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ese forms of crime or specific manifestations thereof;
- (2) related criminal offences.

The following shall be regarded as related and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Articles 8 and 10:

- criminal offences committed in order to procure the means for perpetrating acts within the sphere of competence of Europol,
- criminal offences committed in order to facilitate or carry out acts within the sphere of competence of Europol,
- criminal offences committed to ensure the impunity of acts within the sphere of competence of Europol.

4.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competent authorities" means all public bodies existing in the Member States which are responsible under

national law for preventing and combating criminal offences.

5.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 and 2, "unlawful drug trafficking" means the criminal offences listed in Article 3(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20 December 1988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nd in the provisions amending or replacing that Convention.

Article 3 Tasks

1. In the framework of its objective pursuant to Article 2(1), Europol shall have the following principal tasks:
 - (1)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 Member States;
 - (2) to obtain, collate and analys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 (3) to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without delay via the national units referred to in Article 4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m and of any connections identified between criminal offences;
 - (4) to aid investigations in the Member States by forwarding all relevant information to the national units;
 - (5) to maintain a computerized system of collected information containing data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 10 and 11.
2. In order to improve the cooper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the Member States through the national units with a view to fulfilling the objective set out in Article 2(1), Europol shall furthermore have the following additional tasks:
 - (1) to develop specialist knowledge of the investigative procedur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the Member States and to provide advice on investigations;
 - (2) to provide strategic intelligence to assist with and promote the efficient and effective use of the resources available at national level for operational activities;
 - (3) to prepare general situation reports.

-
3. In the context of its objective under Article 2(1) Europol may,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its staffing and the budgetary resources at its disposal and within the limits set by the Management Board, assist Member States through advice and research in the following areas:
 - (1) training of members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 (2) organization and equipment of those authorities;
 - (3) crime prevention methods;
 - (4) technical and forensic police methods and investigative procedures.

Article 4 National units

1. Each Member State shall establish or designate a national unit to carry out the tasks listed in this Article.
2. The national unit shall be the only liaison body between Europol and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Relationships between the national unit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be governed by 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the relevant national constitutional requirements.
3.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national units are able to fulfil their tasks and, in particular, have access to relevant national data.
4. It shall be the task of the national units to:
 - (1) supply Europol on their own initiative with th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necessary for it to carry out its tasks;
 - (2) respond to Europol's requests for information, intelligence and advice;
 - (3) keep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up to date;
 - (4) evaluat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for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ransmit this material to them;
 - (5) issue requests for advice, information, intelligence and analysis to Europol;
 - (6) supply Europol with information for storage in the computerized system;

- (7) ensure compliance with the law in every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mselves and Europol.
5. Without prejudice to the exercise of the responsibilities incumbent upon Member States as set out in Article K.2(2)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 national unit shall not be obliged in a particular case to supply th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provided for in paragraph 4, points 1, 2 and 6 and in Articles 7 and 10 if this would mean:
- (1) harming essential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r
 - (2) jeopardizing the success of a current investigation or the safety of individuals;
 - (3) involving information pertaining to organizations or specific intelligence activities in the field of State security.
6. The costs incurred by the national units for communications with Europol shall be borne by the Member States and, apart from the costs of connection, shall not be charged to Europol.
7. The Heads of national units shall meet as necessary to assist Europol by giving advice.

Article 5 Liaison officers

1. Each national unit shall second at least one liaison officer to Europol. The number of liaison officers who may be sent by Member States to Europol shall be laid down by unanimous decision of the Management Board; the decision may be altered at any time by unanimous decision of the Management Board. Except as otherwise stipulated in specific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liaison officers shall be subject to the national law of the seconding Member State.
2. The liaison officers shall be instructed by their national units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latter within Europol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 of the seconding Member State and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
- applicable to the administration of Europol.
3.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4(4) and (5), the liaison officers shall, within the framework of the objective laid down in Article 2(1), assist i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 national units which have seconded them and Europol, in particular by:
 - (1) providing Europol with information from the seconding national unit;
 - (2) forwarding information from Europol to the seconding national unit; and
 - (3) cooperating with the officials of Europol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giving advice as regards analysis of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seconding Member State.
 4. At the same time, the liaison officers shall assist i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from their national units and the coordination of the resulting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an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objective laid down in Article 2(1).
 5.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tasks under paragraph 3 above, the liaison officers shall have the right to consult the various files in accordance with the appropriate provisions specified in the relevant Articles.
 6. Article 2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ctivity of the liaison officers.
 7. Without prejudice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liaison officers in relation to Europol shall be determined unanimously by the Management Board.
 8. Liaison officers shall enjoy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task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9. Europol shall provide Member States free of charge with the necessary premises in the Europol building for the activity of their liaison officers. All other costs which arise in connection with seconding liaison officers

shall be borne by the seconding Member State; this shall also apply to the costs of equipment for liaison officers, to the extent that the Management Board does not unanimously recommend otherwise in a specific case when drawing up the budget of Europol.

Article 6 Computerized system of collected information

1. Europol shall maintain a computerized system of collected information consisting of the following components:
 - (1) an information system as referred to in Article 7 with a restricted and precisely defined content which allows rapid reference to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Member States and Europol;
 - (2) work files as referred to in Article 10 established for variable periods of time for the purposes of analysis and contain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 (3) an index system containing certain particulars from the analysis files referred to in point 2, in accordance with the arrangements laid down in Article 11.
2. The computerized system of collected information operated by Europol must under no circumstances be linked to other automated processing systems, except for the automated processing systems of the national units.

TITLE II INFORMATION SYSTEM

Article 7 Establishment of the information system

1. In order to perform its tasks, Europol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 computerized information system. The information system, into which Member States, represented by their national units and liaison officers, may directly input data in compliance with their national procedures, and into which Europol may directly input data supplied by third States and

third bodies and analysis data, shall be directly accessible for consultation by national units, liaison officers, the Director, the Deputy Directors and duly empowered Europol officials.

Direct access by the national units to the information system in respect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Article 8(1), point 2 shall be restricted solely to the details of identity listed in Article 8(2). If needed for a specific enquiry, the full range of data shall be accessible them via the liaison officers.

2. Europol shall:

- (1) have the task of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governing cooperation on and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 and
- (2) be responsible for the proper working of the information system in technical and operational respects. Europol shall in particular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s 21 and 25 regarding the information system are properly implemented.

3. The national unit in each Member State shall be responsible for communication with the information system. It shall, in particular, be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25 in respect of the data-processing equipment us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 in question, for the review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and, insofar as required under the laws, regulations, administrative provisions and procedures of that Member State, for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in other respects.

Article 8 Content of the information system

1. The information system may be used to store, modify and utilize only the data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Europol's tasks, with the exception of data concerning related criminal offences as referred to in the second subparagraph of Article 2(3). Data entered shall relate to:

- (1) persons who,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 of the Member State

concerned, ar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or having taken part in a criminal offence for which Europol is competent under Article 2 or who have been convicted of such an offence;

- (2) persons who there are serious grounds under national law for believing will commit criminal offences for which Europol is competent under Article 2.

2. Personal data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include only the following details:

- (1) surname, maiden name, given names and any alias or assumed name;
- (2) date and place of birth;
- (3) nationality;
- (4) sex; and
- (5) where necessary, other characteristics likely to assist in identification, including any specific objective physical characteristics not subject to change.

3. In addition to the data referred to in paragraph 2 and data on Europol or the inputting national unit, the information system may also be used to store, modify and utilize the following details concerning the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 (1) criminal offences, alleged crimes and when and where they were committed;
- (2) means which were or may be used to commit the crimes;
- (3) departments handling the case and their filing references;
- (4) suspected membership of a criminal organization;
- (5) convictions, where they relate to criminal offences for which Europol is competent under Article 2.

These data may also be input when they do not yet contain any references to persons. Where Europol inputs the data itself, as well as giving its filing reference it shall also indicate whether the data were provided by a third party or are the result of its own analyses.

4. Additional information held by Europol or national units concerning the groups of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be communicated to any national unit or Europol should either so request. National units shall do so in compliance with their national law.

Where the additional information concerns one or more related criminal offences as defined in the second subparagraph of Article 2(3), the data stored in the information system shall be marked accordingly to enable national units and Europol to exchange information on the related criminal offences.

5. If proceedings against the person concerned are dropped or if that person is acquitted, the data relating to either decision shall be deleted.

Article 9 Right of access to the information system

1. Only national units, liaison officers, and the Director, Deputy Directors or duly empowered Europol officials shall have the right to input data directly into the information system and retrieve it therefrom. Data may be retrieved where this i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Europol's tasks in a particular case; retrieval shall be effe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regulations, administrative provisions and procedures of the retrieving unit, subject to any additional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Convention.
2. Only the unit which entered the data may modify, correct or delete such data. Where a unit has reason to believe that data as referred to in Article 8(2) are incorrect or wishes to supplement them, it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inputting unit; the latter shall examine such notification without delay and if necessary modify, supplement, correct or delete the data immediately. Where the system contains data as referred to in Article 8(3) concerning a person, any unit may enter additional data as referred to in Article 8(3). Where there is an obvious contradiction between the data input, the units concerned shall consult each other and reach agreement. Where a unit intends to delete altogether data as referred to in Article 8(2)

which has input on a person and where data as referred to in Article 8(3) are held on the same person but input by other units, responsibility in terms of data protection legislation pursuant to Article 15(1) and the right to modify, supplement, correct and delete such data pursuant to Article 8(2) shall be transferred to the next unit to have entered data as referred to in Article 8(3) on that person. The unit intending to delete shall inform the unit to which responsibility in terms of data protection is transferred of its intention.

3. Responsibility for the permissibility of retrieval from, input into and modifications within the information system shall lie with the retrieving, inputting or modifying unit; it must be possible to identify that unit. Th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between national units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the Member States shall be governed by national law.

TITLE III WORK FILES FOR THE PURPOSES OF ANALYSIS

Article 10 Collection,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1. Where this is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 laid down in Article 2(1), Europol, in addition to data of a non-personal nature, may store, modify, and utilize in other files data on criminal offences for which Europol is competent under Article 2(2), including data on the related criminal offences provided for in the second subparagraph of Article 2(3) which are intended for specific analyses, and concerning:
 - (1) pers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8(1);
 - (2) persons who might be called on to testify in investig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offences under consideration or in subsequent criminal proceedings;
 - (3) persons who have been the victims of one of the offences under consideration or with regard to whom certain facts give reason for believing that they could be the victims of such an offence;

- (4) contacts and associates, and
- (5) persons who can provide information on the criminal offences under consideration.

The collection, storage and processing of the data listed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6 of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f 28 January 1981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shall not be permitted unless strictly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the file concerned and unless such data supplement other personal data already entered in that file. It shall be prohibited to select a particular group of persons solely on the basis of the data listed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6 of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f 28 January 1981 in breach of the aforementioned rules with regard to purpose.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shall adopt implementing rules for data files prepared by the Management Board containing additional detail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categories of personal data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nd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security of the data concerned and the internal supervision of their use.

2. Such files shall be opened for the purposes of analysis defined as the assembly, processing or utilization of data with the aim of helping a criminal investigation. Each analysis project shall entail the establishment of an analysis group closely associating the following participants in accordance with the tasks defined in Article 3(1) and (2) and Article 5(3):
 - (1) analysts and other Europol officials designated by the Europol Directorate: only analysts shall be authorized to enter data into and retrieve data from the file concerned;
 - (2) the liaison officers and/or experts of the Member States supplying the information or concerned by the analysis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6.

3. At the request of Europol or on their own initiative, national units shall, subject to Article 4(5), communicate to Europol all the information which it may require for the performance of its tasks under Article 3(1), point 2. The Member States shall communicate such data only where processing thereof for the purposes of preventing, analysing or combating offences is also authorized by their national law.

Depending on their degree of sensitivity, data from national units may be routed directly and by whatever means may be appropriate to the analysis groups, whether via the liaison officers concerned or not.

4. If, in addition to the data referred to in paragraph 3, it would seem justified for Europol to have other information for the performance of tasks under Article 3(1), point 2, Europol may request that:

- (1)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established under the Treaties establishing those Communities;
- (2) other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established in the framework of the European Union;
- (3) bodies which are based on 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 (4) third States;
- (5)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ir subordinate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 (6) other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which are based on 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States; and
- (7)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forward the relevant information to it by whatever means may be appropriate. It may also,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by the same means, accept information provided by those various bodies on their own initiative.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after consulting the Management Board, shall draw up the rules to be observed by Europol in

this respect.

5. Insofar as Europol is entitled under other Conventions to gain computerized access to data from other information systems, Europol may retrieve personal data by such means if this i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tasks pursuant to Article 3(1), point 2.
6. If an analysis is of a general nature and of a strategic type, all Member States, through liaison officers and/or experts, shall be fully associated in the findings thereof, in particular through the communication of reports drawn up by Europol.

If the analysis bears on specific cases not concerning all Member States and has a direct operational aim, representatives of the following Member States shall participate therein:

- (1) Member States which were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giving rise to the decision to open the analysis file, or those which are directly concerned by that information and Member States subsequently invited by the analysis group to take part in the analysis because they are also becoming concerned;
 - (2) Member States which learn from consulting the index system that they need to be informed and assert that need to know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paragraph 7.
7. The need to be informed may be claimed by authorized liaison officers. Each Member State shall nominate and authorize a limited number of such liaison officers. It shall forward the list thereof to the Management Board.

A liaison officer shall claim the need to be informed as defined in paragraph 6 by means of a written reasoned statement approved by the authority to which he is subordinate in his Member State and forwarded to all the participants in the analysis. He shall then be automatically associated in the analysis in progress.

If an objection is raised in the analysis group, automatic association shall

be deferred until completion of a conciliation procedure, which may comprise three stages as follows:

- (1) the participants in the analysis shall endeavour to reach agreement with the liaison officer claiming the need to be informed; they shall have no more than eight days for that purpose;
 - (2) if no agreement is reached, the heads of the national units concerned and the Directorate of Europol shall meet within three days;
 - (3) if the disagreement persists, the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concerned on the Management Board shall meet within eight days. If the Member State concerned does not waive its need to be informed, automatic association of that Member State shall be decided by consensus.
8. The Member State communicating an item of data to Europol shall be the sole judge of the degree of its sensitivity and variations thereof. Any dissemination or operational use of analysis data shall be decided on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cipants in the analysis. A Member State joining an analysis in progress may not, in particular, disseminate or use the data without the prior agreement of the Member States initially concerned.

Article 11 Index System

1. An index system shall be created by Europol for the data stored on the files referred to in Article 10(1).
2. The Director, Deputy Directors and duly empowered officials of Europol and liaison officers shall have the right to consult the index system. The index system shall be such that it is clear to the liaison officer consulting it, from the data being consulted, that the files referred to in Article 6(1), point 2 and Article 10(1) contain data concerning the seconding Member State.

Access by liaison officers shall be defined in such a way that it is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n item of information is stored, but that it is not possible to establish connections or further conclusions regarding the content of the files.

3. The detailed procedures for the design of the index system shall be defined by the Management Board acting unanimously.

Article 12 Order opening a data file

1. For every computerized data file containing personal data operated by Europol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ts tasks referred to in Article 10, Europol shall specify in an order opening the file, which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e Management Board:
 - (1) the file name;
 - (2) the purpose of the file;
 - (3) the groups of persons on whom data are stored;
 - (4) the nature of the data to be stored, and any of the data listed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6 of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f 28 January 1981 which are strictly necessary;
 - (5) the type of personal data used to open the file;
 - (6) the supply or input of the data to be stored;
 - (7)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ersonal data stored in the file may be communicated, to which recipients and under what procedure;
 - (8) the time limits for examination and duration of storage;
 - (9) the method of establishing the audit log.

The joint supervisory body provided for in Article 24 shall immediately be advised by the Director of Europol of the plan to order the opening of such a data file and shall receive the dossier so that it may address any comments it deems necessary to the Management Board.

2. If the urgency of the matter is such as to preclude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Management Board as required under paragraph 1, the Director, on

his own initiative or at the request of the Member States concerned, may be a reasoned decision, order the opening of a data file. At the same time he shall inform the members of the Management Board of his decision. The procedure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then be set in motion without delay and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TITLE IV COMMON PROVISIONS ON INFORMATION PROCESSING

Article 13 Duty to notify

Europol shall promptly notify the national units and also their liaison officers if the national units so request, of any information concerning their Member State and of connections identified between criminal offences for which Europol is competent under Article 2.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concerning other serious criminal offences, of which Europol becomes aware in the course of its duties, may also be communicated.

Article 14 Standard of data protection

1. By the tim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t the latest, each Member State shall, under its national legislation, take the necessary measure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data files in the framework of this Convention to ensure a standard of data protection which at least corresponds to the standard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f 28 January 1981, and, in doing so, shall take account of Recommendation No R (87) 15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f 17 September 1987 concerning the use of personal data in the police sector.
2. The communication of personal data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may not begin until the data protection rules laid down in paragraph 1 above have entered into force on the territory of each of the Member States involved in such communication.

3. In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Europol shall take account of the principles of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f 28 January 1981 and of Recommendation No R (87) 15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f 17 September 1987.

Europol shall also observe the principles in respect of non-automated data held in the form of data files, i.e. any structured set of personal data accessible in accordance with specific criteria.

Article 15 Responsibility in data protection matters

1. Subject to other provisions in this Convention, the responsibility for data stored at Europol, in particular as regards the legality of the collection, the transmission to Europol and the input of data, as well as their accuracy, their up-to-date nature and verification of the storage timelimits, shall lie with:
 - (1) the Member State which input or otherwise communicated the data;
 - (2) Europol in respect of data communicated to Europol by third parties or which result from analyses conducted by Europol.
2. In addition, subject to other provisions in this Convention, Europol shall be responsible for all data received by Europol and processed by it, whether such data be in the information system referred to in Article 8, in the data files opened for the purposes of analysis referred to in Article 10, or in the index system referred to in Article 11, or in the data files referred to in Article 14(3).
3. Europol shall store data in such a way that it can be established by which Member State or third party the data were transmitted or whether they are the result of an analysis by Europol.

Article 16 Provisions on the drawing up of reports

On average, Europol shall draw up reports for at least one in ten retrievals of personal data – and for each retrieval made within the information system referred to in Article 7 – in order to check whether they are permissible under law. The data contained in the reports shall only be used for that purpose by Europol and the supervisory bodies referred to in Articles 23 and 24 and shall be deleted after six months, unless the data are further required for ongoing control. The details shall be decided upon by the Management Board following consultation with the joint supervisory body.

Article 17 Rules on the use of data

1. Personal data retrieved from the information system, the index system or data files opened for the purposes of analysis and data communicated by any other appropriate means, may be transmitted or utilized only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in order to prevent and combat crimes falling within the competence of Europol and to combat other serious forms of crime.

The data refer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shall be utilized in compliance with the law of the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the authorities which utilized the data.

Europol may utilize the data referred to in paragraph 1 only for the performance of its tasks as referred to in Article 3.

2. If, in the case of certain data, the communicating Member State or the communicating third State or third body as referred to in Article 10(4) stipulates particular restrictions on use to which such data is subject in that Member State or by third parties, such restrictions shall also be complied with by the user of the data except in the specific case where national law lays down that the restrictions on use be waived for judicial authorities, legislative bodies or any other independent body set up under the law and made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4). In such cases, the data may only be used after prior consultation of the communicating Member State whose interests and opinions must be taken into account as far as possible.

3. Use of the data for other purposes or by authoritie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shall be possible only after prior consultation of the Member State which transmitted the data insofar as the national law of that Member State permits.

Article 18 Communication of data to third States and third bodies

1. Europol may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paragraph 4 communicate personal data which it holds to third states and third bod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0(4), where:
 - (1) this is necessary in individual cases for the purposes of preventing or combating criminal offences for which Europol is competent under Article 2;
 - (2) an adequate level of data protection is ensured in that State or that body; and
 - (3) this is permissible under the general rules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2.
2.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shall determine the general rules for the communication of personal data by Europol to the third States and third bod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0(4). The Management Board shall prepare the Council decision and consult the joint supervisory body referred to in Article 24.
3. The adequacy of the level of data protection afforded by third States and third bod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0(4) shall be assessed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ircumstances which play a part in the communication of personal data; in particular, the following shall be taken into account:

- (1) the nature of the data;
 - (2) the purpose for which the data is intended;
 - (3) the duration of the intended processing; and
 - (4) the general or specific provisions applying to the third States and third bod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0(4).
4. If the data referred to have been communicated to Europol by a Member State, Europol may communicate them to third States and third bodies only with the Member State's consent. The Member State may give its prior consent, in general or other terms, to such communication; that consent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If the data have not been communicated by a Member State, Europol shall satisfy itself that communication of those data is not liable to:

- (1) obstruct the proper performance of the tasks falling within a Member State's sphere of competence;
 - (2) jeopardize the security and public order of a Member State or otherwise prejudice its general welfare.
5. Europol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legality of the authorizing communication. Europol shall keep a record of communications of data and of the grounds for such communications. The communication of data shall be authorized only if the recipient gives an undertaking that the data will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communicated. This shall not apply to the communication of personal data required for a Europol inquiry.
6. Where the communic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concerns information subject to the requirement of confidentiality, it shall be permissible only insofar as an agreement on confidentiality exists between Europol and the recipient.

Article 19 Right of access

1. Any individual wishing to exercise his right of access to data relating to him which have been stored within Europol or to have such data checked may make a request to that effect free of charge to the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in any Member State he wishes, and that authority shall refer it to Europol without delay and inform the enquirer that Europol will reply to him directly.
2. The request must be fully dealt with by Europol within three months following its receipt by the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of the Member State concerned.
3. The right of any individual to have access to data relating to him or to have such data checked shall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Member State where the right is claimed,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provisions:

Where the law of the Member State applied to provides for a communication concerning data, such communication shall be refused if such refusal is necessary to:

- (1) enable Europol to fulfil its duties properly;
- (2) protect security and public order in the Member States or to prevent crime;
- (3) protect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ird parties,

considerations which it follows cannot be overridden by the interests of the person concerned by the communication of the information.

4. The right to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shall be exercis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s:
 - (1) as regards data entered within the information system defined in Article 8, a decision to communicate such data cannot be taken unless the Member State which entered the data and the Member States directly

concerned by communication of such data have first had the opportunity of stating their position, which may extend to a refusal to communicate the data. The data which may be communicated and the arrangements for communicating such data shall be indicated by the Member State which entered the data;

- (2) as regards data entered within the information system by Europol, the Member States directly concerned by communication of such data must first have had the opportunity of stating their position, which may extend to a refusal to communicate the data;
- (3) as regards data entered within the work files for the purposes of analysis as defined in Article 10, the communication of such data shall be conditional upon the consensus of Europol and the Member States participating in the analysi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0(2), and the consensus of the Member State(s) directly concerned by the communication of such data.

Should one or more Member State or Europol have objected to a communication concerning data, Europol shall notify the person concerned that it has carried out the checks, without giving any information which might reveal to him whether or not he is known.

5. The right to the checking of information shall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Where the national law applicable makes no provision for a communication concerning data or in the case of a simple request for a check, Europol,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authorities concerned, shall carry out the checks and notify the enquirer that it has done so without giving any information which might reveal to him whether or not he is known.

6. In its reply to a request for a check or for access to data, Europol shall inform the enquirer that he may appeal to the joint supervisory body if he is not satisfied with the decision. The latter may also refer the matter to the joint supervisory body if there has been no response to his request

within the timelimits laid down in its Article.

7. If the enquirer lodges and appeal to the joint supervisory body provided for in Article 24, the appeal shall be examined by that body.

Where the appeal relates to a communication concerning data entered by a Member State in the information system, the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take its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application was made. The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first consult the national supervisory body or the competent judicial body in the Member State which was the source of the data. Either national body shall make the necessary checks, in particular to establish whether the decision to refuse was take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3 and 4(1) of this Article. On confirmation of that, the decision, which may extend to a refusal to communicate any information, shall be taken by the joint supervisory body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supervisory body or competent judicial body.

Where the appeal relates to a communication concerning data entered by Europol in the information system or data stored in the work files for the purposes of analysis, the joint supervisory body, in the event of persistent objections from Europol or a Member State, may not overrule such objections unless by a majority of two-thirds of its members after having heard Europol or the Member State concerned. If there is no such majority, the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notify the enquirer that it has carried out the checks, without giving any information which might reveal to him whether or not he is known.

Where the appeal concerns the checking of data entered by a Member State in the information system, the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ensure that the necessary checks have been carried out correctly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supervisory body of the Member State which entered the data. The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notify the enquirer that it has carried out the checks, without giving any information which might

reveal to him whether or not he is known.

Where the appeal concerns the checking of data entered by Europol in the information system or of data stored in the work files for the purposes of analysis, the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ensure that the necessary checks have been carried out by Europol. The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notify the enquirer that it has carried out the checks, without giving any information which might reveal to him whether or not he is known.

8. The above provis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non-automated data held by Europol in the form of data files, i.e. any structured set of personal data accessible in accordance with specific criteria.

Article 20 Correction and deletion of data

1. If it emerges that data held by Europol which have been communicated to it by third States or third bodies or which are the result of its own analyses are incorrect or that their input or storage contravenes this Convention, Europol shall correct or delete such data.
2. If data that are incorrect or that contravene this Convention have been passed directly to Europol by Member States, they shall be obliged to correct or delete them in collaboration with Europol. If incorrect data are transmitted by another appropriate means or if the errors in the data supplied by Member States are due to faulty transmission or have been transmitted in breach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if they result from their being entered, taken over or stored in an incorrect manner or in breach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Europol, Europol shall be obliged to correct them or delete them in collaboration with the Member States concerned.
3. In the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the Member States which are recipients of the data shall be notified forthwith. The recipient Member States shall also correct or delete those data.

4. Any person shall have the right to ask Europol to correct or delete incorrect data concerning him.

Europol shall inform the enquirer that data concerning him have been corrected or deleted. If the enquirer is not satisfied with Europol's reply or if he has received no reply within three months, he may refer the matter to the joint supervisory body.

Article 21 Time limits for the storage and deletion of data files

1. Data in data files shall be held by Europol only for as long as i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tasks. The need for continued storage shall be reviewed no later than three years after the input of data. Review of data stored in the information system and its deletion shall be carried out by the inputting unit. Review of data stored in other Europol data files and their deletion shall be carried out by Europol. Europol shall automatically inform the Member States three months in advance of the expiry of the time limits for reviewing the storage of data.
2. During the review, the units referred to in the third and fourth sentences of paragraph 1 above may decide on continued storage of data until the next review if this is still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Europol's tasks. If no decision is taken on the continued storage of data, those data shall automatically be deleted.
3. Storage of personal data relating to individuals as referred to in point 1 of the first subparagraph of Article 10(1) may not exceed a total of three years. Each time limit shall begin to run afresh on the date on which an event leading to the storage of data relating to that individual occurs. The need for continued storage shall be reviewed annually and the review documented.
4. Where a Member State deletes from its national data files data communicated to Europol which are stored in other Europol data files, it shall inform

Europol accordingly. In such cases, Europol shall delete the data unless it has further interest in them, based on intelligence that is more extensive than that possessed by the communicating Member State. Europol shall inform the Member State concerned of the continued storage of such data.

5. Deletion shall not occur if it would damage the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which require protection. In such cases, the data may be us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Article 22 Correction and storage of data in paper files

1. If it emerges that an entire paper file or data included in that file held by Europol are no longer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Europol's tasks, or if the information concerned is overall in contravention of this Convention, the paper file or data concerned shall be destroyed. The paper file or data concerned must be marked as not for use until they have been effectively destroyed.

Destruction may not take place if there are grounds for assuming tha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would otherwise be prejudiced. In such cases, the paper file must bear the same note prohibiting all use.

2. If it emerges that data contained in the Europol paper files are incorrect, Europol shall be obliged to correct them.
3. Any person covered by a Europol paper file may claim the right vis-à-vis Europol to correction or destruction of paper files or the inclusion of a note. Article 20(4) and Article 24(2) and (7) shall be applicable.

Article 23 National supervisory body

1. Each Member State shall designate a national supervisory body, the task of which shall be to monitor independently, in accordance with its respective national law, the permissibility of the input, the retrieval and any

communication to Europol of personal data by the Member State concerned and to examine whether this violates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For this purpose, the supervisory body shall have access at the national unit or at the liaison officers' premises to the data entered by the Member State in the information system and in the index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national procedures.

For their supervisory purposes, national supervisory bodies shall have access to the offices and documents of their respective liaison officers at Europol.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national procedures, the national supervisory bodies shall supervise the activities of national units under Article 4(4) and the activities of liaison officers under Article 5(3), points 1 and 3 and Article 5(4) and (5), insofar as such activities are of relevance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2. Each individual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national supervisory body to ensure that the entry or communication of data concerning him to Europol in any form and the consultation of the data by the Member State concerned are lawful.

This right shall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 of the Member State to the national supervisory body of which the request is made.

Article 24 Joint supervisory body

1. An independent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be set up, which shall have the task of reviewing,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the activities of Europol in order to ensure that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are not violated by the storage,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the data held by Europol. In addition, the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monitor the permissibility of the transmission of data originating from Europol. The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two members or representatives (where appropriate assisted by alternates) of each of the national supervisory bodies guaranteed to be independent and having the necessary abilities, and appointed for five years by each Member State. Each delegation shall be entitled to one vote.

The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appoint a chairman from among its member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 members of the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not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other body.

2. Europol must assist the joint supervisory body in the performance of the latter's tasks. In doing so, it shall, in particular:
 - (1) supply the information it requests, give it access to all documents and paper files as well as access to the data stored in the system; and
 - (2) allow it free access at any time to all its premises;
 - (3) carry out the joint supervisory body's decisions on appeal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9(7) and 20(4).
3. The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also be competent for the examination of questions relating to implementation and interpretation in connection with Europol's activities as regards the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for the examination of questions relating to checks carried out independently by the national supervisory bodies of the Member States or relating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formation, as well as for drawing up harmonized proposals for common solutions to existing problems.
4. Each individual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joint supervisory body to ensure that the manner in which his personal data have been collected, stored, processed and utilized by Europol is lawful and accurate.
5. If the joint supervisory body notes any viol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the storage, processing or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it shall make any complaints it deems necessary to the Director of Europol and

shall request him to reply within a time limit to be determined by it. The Director shall keep the Management Board informed of the entire procedure. In the event of any difficulty, the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refer the matter to the Management Board.

6. The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draw up activity reports at regular interval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hese shall be forwarded to the Council; the Management Board shall first have the opportunity to deliver an opinion, which shall be attached to the reports.

The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decide whether or not to publish its activity report, and, if it decides to do so, determine how it should be published.

7. The joint supervisory body shall unanimously adopt its rules of procedure, which shall be submitted for the unanimous approval of the Council. It shall set up internally a committee comprising one qualified representative from each Member State with entitlement to a vote. The committee shall have the task of examining the appeals provided for in Articles 19(7) and 20(4) by all appropriate means. Should they so request the parties, assisted by their advisers if they so wish, shall be heard by the committee. The decisions taken in this context shall be final as regards all the parties concerned.
8. It may also set up one or more other committees.
9. It shall be consulted on that part of the budget which concerns it. Its opinion shall be annexed to the draft budget in question.
10. It shall be assisted by a secretariat, the tasks of which shall be defined in the rules of procedures.

Article 25 Data security

1. Europol shall take the necessary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Measures shall only be necessary where the effort they involve is proportionate to the objective they are designed to achieve in terms of protection.
2. In respect of automated data processing at Europol each Member State and Europol shall implement measures designed to:
 - (1) deny unauthorized persons access to data processing equipment used for processing personal data (equipment access control);
 - (2) prevent the unauthorized reading, copying, modification or removal of data media (data media control);
 - (3) prevent the unauthorized input of data and the unauthorized inspection, modification or deletion of stored personal data (storage control);
 - (4) prevent the use of automated data processing systems by unauthorized persons using data communication equipment (user control);
 - (5) ensure that persons authorized to use an automated data processing system only have access to the data covered by their access authorization (data access control);
 - (6) ensure that it is possible to verify and establish to which bodies personal data may be transmitted using data communication equipment (communication control);
 - (7) ensure that it is subsequently possible to verify and establish which personal data have been input into automated data or processing systems and when and by whom the data were input (input control);
 - (8) prevent unauthorized reading, copying, modification or deletion of personal data during transfers of personal data or during transportation of data media (transport control);
 - (9) ensure that installed systems may, in case of interruption, be immediately restored (recovery);
 - (10) ensure that the functions of the system perform without fault, that the appearance of faults in the functions is immediately reported (reliability) and that stored data cannot be corrupted by means of a malfunctioning of the system (integrity).

TITLE V LEGAL STATUS, ORGANIZATION AND FINANCIAL PROVISIONS***Article 26 Legal capacity***

1. Europol shall have legal personality.
2. Europol shall enjoy in each Member State the most extensive legal and contractual capacity available to legal persons under that State's law. Europol may in particular acquire and dispose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be a party to legal proceedings.
3. Europol shall be empowered to conclude a headquarters agreement with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nd to conclude with third States and third bod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0(4) the necessary confidentiality agreements pursuant to Article 18(6) as well as other arrangements in the framework of the rules laid down unanimously by the Council on the basis of this Convention and of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rticle 27 Organs of Europol

The organs of Europol shall be:

- (1) the Management Board;
- (2) the Director;
- (3) the Financial Controller;
- (4) the Financial Committee.

Article 28 Management Board

1. Europol shall have a Management Board. The Management Board:
 - (1) shall take part in the extension of Europol's objective (Article 2(2));
 - (2) shall define unanimously liaison officers' rights and obligations towards Europol (Article 5);
 - (3) shall decide unanimously on the number of liaison officers the Member

- States may send to Europol (Article 5);
- (4) shall prepare the implementing rules governing data files (Article 10);
 - (5) shall take part in the adoption of rules governing Europol's relations with third States and third bodies with the meaning of Article 10(4) (Articles 10, 18 and 42)
 - (6) shall unanimously decide on details concerning the design of the index system (Article 11);
 - (7) shall approve by a two-thirds majority orders opening data files (Article 12);
 - (8) may deliver opinions on the comments and reports of the joint supervisory body (Article 24);
 - (9) shall examine problems which the joint supervisory body brings to its attention (Article 24(5));
 - (10) shall decide on the details of the procedure for checking the legal character of retrievals in the information system (Article 16);
 - (11) shall take part in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he Director and Deputy Directors (Article 29);
 - (12) shall oversee the proper performance of the Director's duties (Articles 7 and 29);
 - (13) shall take part in the adoption of staff regulations (Article 30);
 - (14) shall take part in the preparation of agreements on confidentiality and the adoption of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Articles 18 and 31);
 - (15) shall take part in the drawing up of the budge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plan, the auditing and the discharge to be given to the Director (Articles 35 and 36);
 - (16) shall adopt unanimously the five-year financing plan (Article 35);
 - (17) shall appoint unanimously the financial controller and oversee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Article 35);
 - (18) shall take part in the adoption of the financial regulation (Article 35);
 - (19) shall unanimously approve the conclusion of the headquarters agreement (Article 37);

-
- (20) shall adopt unanimously the rules for the security clearance of Europol officials;
 - (21) shall act by a two-thirds majority in disputes between a Member State and Europol or between Member States concerning compensation paid under the liability for unauthorized or incorrect processing of data (Article 38);
 - (22) shall take part in any amendment of this Convention (Article 43);
 - (23)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other tasks assigned to it by the Council particularly in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2. The Management Board shall be composed of one representative of each Member State. Each member of the Management Board shall have one vote.
 3. Each member of the Management Board may be represented by an alternate member; in the absence of the full member, the alternate member may exercise his right to vote.
 4.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hall be invited to attend meetings of the Management Board with non-voting status. However, the Management Board may decide to meet without the Commission representative.
 5. The members or alternate members shall be entitled to be accompanied and advised by experts from their respective Member States at meetings of the Management Board.
 6. The Management Board shall be chair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Member State holding the Presidency of the Council.
 7. The Management Board shall unanimously adopt its rules of procedure.
 8. Abstentions shall not prevent the Management Board from adopting decisions which must be taken unanimously.
 9. The Management Board shall meet at least twice a year.

10. The Management Board shall adopt unanimously each year:

- (1) a general report on Europol's activities during the previous year;
- (2) a report on Europol's future activities taking into account Member States' operational requirements and budgetary and staffing implications for Europol.

These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the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rticle 29 Director

1. Europol shall be headed by a Director appointed by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fter obtaining the opinion of the Management Board, for a four-year period renewable once.
2. The Director shall be assisted by a number of Deputy Directors as determined by the Council and appointed for a four-year period renewable on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paragraph 1. Their tasks shall be defined in greater detail by the Director.
3. The Dire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 (1) performance of the tasks assigned to Europol;
 - (2) day-to-day administration;
 - (3) personnel management;
 - (4) proper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Management Board's decisions;
 - (5) preparing the draft budget, draft establishment plan and draft five-year financing plan and implementing Europol's budget;
 - (6) all other tasks assigned to him in this Convention or by the Management Board.
4. The Director shall be accountable to the Management Board in respect of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He shall attend its meetings.

5. The Director shall be Europol's legal representative.
6. The Director and the Deputy Directors may be dismissed by a decision of the Council, to b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Member States, after obtaining the opinion of the Management Board.
7.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the first term of office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shall be five years for the Director, four years for his immediate Deputy and three years for the second Deputy Director.

Article 30 Staff

1. The Director, Deputy Directors and the employees of Europol shall be guided in their actions by the objectives and tasks of Europol and shall not take or seek orders from any government, authority, organization or person outside Europol, save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onvention and without prejudice to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2. The Director shall be in charge of the Deputy Directors and employees of Europol. He shall engage and dismiss employees. In selecting employees, in addition to having regard to personal suitability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he shall take into account the need to ensure the adequate representation of nationals of all Member States and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European Union.
3. Detailed arrangements shall be laid down in staff regulations which the Council shall, after obtaining the opinion of the Management Board, adopt unanim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rticle 31 Confidentiality

1. Europol and the Member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information subject to the requirement of confidentiality which is obtained by or exchanged with Europol on the basis of this Convention. To this end the Council shall unanimously adopt appropriate rules on confidentiality prepared by the Management Board and submitted to the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2. Where Europol has entrusted persons with a sensitive activity, Member States shall undertake to arrange,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 of Europol, for security screening of their own nationals to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provisions and to provide each other with mutual assistance for the purpose. The relevant authority under national provisions shall inform Europol only of the results of the security screening, which shall be binding on Europol.
3. Each Member State and Europol may entrust with the processing of data at Europol, only those persons who have had special training and undergone security screening.

Article 32 Obligation of discretion and confidentiality

1. Europol organs, their members, the Deputy Directors, employees of Europol and liaison officers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and any expression of opinion which might be harmful to Europol or prejudice its activities.
2. Europol organs, their members, the Deputy Directors, employees of Europol and liaison officers, as well as any other person under a particular obligation of discretion or confidentiality, shall be bound not to disclose any facts or information which come to their knowledge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or the exercise of their activities to any unauthorized person or to the public. This shall not apply to facts or information too insignificant to require con-

fidentiality. The obligation of discretion and confidentiality shall apply even after leaving office or employment, or after termination of activities. The particular obligation laid down in the first sentence shall be notified by Europol, and a warning given of the legal consequences of any infringement; a written record shall be drawn up of such notification.

3. Europol organs, their members, the Deputy Directors, employees of Europol and liaison officers, as well as persons under the oblig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2, may not give evidence in or outside court or make any statements on any facts or information which come to their knowledge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or the exercise of their activities, without reference to the Director or, in the case of the Director himself, to the Management Board.

The Director or Management Board, depending on the case, shall approach the judicial body or any other competent body with a view to taking the necessary measures under the national law applicable to the body approached; such measures may either be to adjust the procedures for giving evidence in order to ensure the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 or provided that the national law concerned so permits, to refuse to make any communication concerning data insofar as is vital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Europol or of a Member State.

Where a Member State's legislation provides for the right to refuse to give evidence, persons asked to give evidence must obtain permission to do so. Permission shall be granted by the Director and, as regards evidence to be given by the Director, by the Management Board. Where a liaison officer is asked to give evidence concerning information he receives from Europol, such permission shall be given after the agreement of the Member State responsible for the officer concerned has been obtained.

Furthermore, if the possibility exists that the evidence may extend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which a Member State has communicated to Europol or which clearly involve a Member State, the position of that

Member State concerning the evidence must be sought before permission is given.

Permission to give evidence may be refused only insofar as this is necessary to protect overriding interests of Europol or of a Member State or States that need protection.

This obligation shall apply even after leaving office or employment or after termination of activities.

4. Each Member State shall treat any infringement of the obligation of discretion or confidentiality laid down in paragraphs 2 and 3 as a breach of the obligations imposed by its law on official or professional secrets or its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material.

Where appropriate, each Member State shall introduce, no later tha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the rules under national law or the provisions required to proceed against breaches of the obligations of discretion or confidentiality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3. It shall ensure that the rules and provisions concerned apply also to its own employees who have contact with Europol in the course of their work.

Article 33 Languages

1. Reports and all other papers and documentation placed before the Management Board shall be submitted in all official languages of the European Union; the working languages of the Management Board shall b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European Union.
2. The translations required for Europol's work shall be provided by the translation centre of the European Union institutions.

Article 34 Informing the European Parliament

1. The Council Presidency shall each year forward a special report to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work of Europol. The European Parliament shall be consulted should this Convention be amended in any way.

2. The Council Presidency or its representative appointed by the Presidency shall, with respect to the European Parliament, take into account the obligations of discretion and confidentiality.
3. The obligations laid down in this Articl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national parliaments, to Article K.6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o the general principles applicable to relations with the European Parliament pursuant to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rticle 35 Budget

1. Estimates shall be drawn up of all of Europol's income and expenditure including all costs of the joint supervisory body and of the secretariat set up by it under Article 22 for each financial year and these items entered in the budget; an establishment plan shall be appended to the budget. The financial year shall begin on 1 January and end on 31 December.

The income and expenditure shown in the budget shall be in balance.

A five-year financing plan shall be drawn up together with the budget.

2. The budget shall be financed from Member States' contributions and by other incidental income. Each Member State's financial contribu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its gross national product to the sum total of the gross national products of the Member States for the year preceding the year in which the budget is drawn up.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gross national product' shall mean gross national product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Council Directive 89/130/EEC, Euratom of 13 February 1989 on the harmonization of the compilation of gross national product at market prices.
3. By 31 March each year at the latest, the Director shall draw up the draft budget and draft establishment plan for the following financial year and

- shall submit them, after examination by the Financial Committee, to the Management Board together with the draft five-year financing plan.
4. The Management Board shall take a decision on the five-year financing plan. It shall act unanimously.
 5. After obtaining the opinion of the Management Board, the Council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dopt Europol's budget by 30 June of the year preceding the financial year at the latest. It shall act unanimously. The adoption of the budget by the Council shall entail the obligation for each Member State to make available promptly the financial contribution due from it.
 6. The Director shall implement the budget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regul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9.
 7. Monitoring of the commitment and disbursement of expenditure and of the establishment and collection of income shall be carried out by a financial controller from an official audit body of one of the Member States who shall be appointed by the Management Board, acting unanimously, and shall be accountable to it. The financial regulation may make provision for ex-post monitoring by the financial controller in the case of certain items of income or expenditure.
 8. The Financial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one budgetary representative from each Member State. Its task shall be to prepare for discussions on budgetary and financial matters.
 9. The Council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unanimously adopt the financial regulation, specifying in particular the detailed rules for drawing up, amending and implementing the budget and for monitoring its implementation as well as for the manner of payment of financial contributions by the Member States.

Article 36 Auditing

1. The accounts in respect of all income and expenditure entered in the budget together with the balance sheet showing Europol's assets and liabilities shall be subject to an annual audit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regulation. For this purpose the Director shall submit a report on the annual accounts by 31 May of the following year at the latest.
2. The audit shall be carried out by a joint audit committee composed of three members, appointed by the Court of Auditor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n a proposal from its President.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s shall be three years; these shall alternate in such a way that each year the member who has been on the audit committee for three years shall be replaced.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second sentence,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 that, after drawing lots:
 - is first, shall be two years,
 - is second, shall be three years,
 - is third, shall be four years,

in the initial composition of the joint audit committee after Europol has begun to operate.

Any costs arising from the audit shall be charged to the budget provided for in Article 35.

3. The joint audit committee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submit to the Council an audit report on the annual accounts; prior thereto the Director and Financial Controller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express an opinion on the audit report and the report shall be discussed by the Management Board.
4. The Europol Director shall provide the members of the joint audit committee with all information and every assistance which they require in

order to perform their task.

5. A decision on the discharge to be given to the Director in respect of budget implementation for the financial year in question shall be taken by the Council, after examination of the report on the annual accounts.
6. The detailed rules for performing audits shall be laid down in the Financial Regulation.

Article 37 Headquarters agreement

The necessary arrangements concerning the accommodation to be provided for Europol in the headquarters State and the facilities to be made available by that State as well as the particular rules applicable in the Europol headquarters State to members of Europol's organs, its Deputy Directors, employee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be laid down in a headquarters agreement between Europol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o be concluded after obtaining the unanimous approval of the Management Board.

TITLE VI LIABILITY AND LEGAL PROTECTION

Article 38 Liability for unauthorized or incorrect data processing

1. Each Member State shall be liable,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 for any damage caused to an individual as a result of legal or factual errors in data stored or processed at Europol. Only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event which gave rise to the damage occurred may be the subject of an action for compensation on the part of the injured party, who shall apply to the courts having jurisdiction under the national law of the Member State involved. A Member State may not plead that another Member State had transmitted inaccurate data in order to avoid its liability under its national legislation vis-à-vis an injured party.

2. If these legal or factual errors occurred as a result of data erroneously communicated or of failure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s laid down in this Convention on the part of one or more Member States or as a result of unauthorized or incorrect storage or processing by Europol, Europol or the other Member State in question shall be bound to repay, on request, the amounts paid as compensation unless the data were used by the Member State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damage was caused in breach of this Convention.
3. Any dispute between that Member State and Europol or another Member State over the principle or amount of the repayment must be referred to the Management Board, which shall settle the matter by a two-thirds majority.

Article 39 Other liability

1. Europol's contractual liability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in question.
2. In the case of non-contractual liability, Europol shall be obliged, independently of any liability under Article 38, to make good any damage caused through the fault of its organs, of its Deputy Directors or of its employee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sofar as it may be imputed to them and regardless of the different procedures for claiming damages which exist under the law of the Member States.
3. The injured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demand that Europol refrain from or drop any action.
4. The national courts of the Member States competent to deal with disputes involving Europol's liability a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Brussels Convention of 27 September 1968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e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as later amended by Accession Agreements.

Article 40 Settlement of disputes

1. Disputes between Member States on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hall in an initial stage be discussed by the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with the aim of finding a settlement.
2. When such disputes are not so settled within six months, the Member States who ar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decide, by agreement among themselves, the modalities according to which they shall be settled.
3. The provisions on appeals referred to in the rules relating to the conditions of employment applicable to temporary and auxiliary sta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uropol staff.

Article 41 Privileges and immunities

1. Europol, the members of its organs and the Deputy Directors and employees of Europol shall enjoy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task in accordance with a Protocol setting out the rules to be applied in all Member States.
2.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nd the other Member States shall agree in the same terms that liaison officers seconded from the other Member States as well as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enjoy those privileges and immunities necessary for the proper performance of the tasks of the liaison officers at Europol.
3. The Protocol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adopted by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approved by the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TITLE VII FINAL PROVISIONS

Article 42 Relations with third States and third bodies

1. Insofar as is relevant for the performance of the tasks described in Article 3, Europol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ird bod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0(4), points 1 to 3. The Management Board shall unanimously draw up rules governing such relations. This provis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10(4) and (5) and Article 18(2); exchanges of personal data shall take plac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itles II to IV of this Convention.
2. Insofar as is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tasks described in Article 3, Europol may also establish and maintain relations with third States and third bod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0 (4), points 4, 5, 6 and 7. Having obtained the opinion of the Management Board,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shall draw up rules governing the relations referred to in the first sentence. The third sentence of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rticle 43 Amendment of the Convention

1.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he Council, acting on a proposal from a Member State and, after consulting the Management Board, shall unanimously decide, within the framework of Article K.1(9)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any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which it shall recommend to the Member States for adop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2.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5(2) of this Convention.
3. However,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Title VI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may decide, on

the initiative of a Member State and after the Management Board has discussed the matter, to amplify, amend or supplement the definitions of forms of crime contained in the Annex. It may in addition decide to introduce new definitions of the forms of crime listed in the Annex.

4. The Secretary-General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shall notify all Member State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s.

Article 44 Reservations

Reservations shall not be permissible in respect of this Convention.

Article 45 Entry into force

1.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adoption by the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2. Member States shall notify the depositary of the completion of their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adopting this Convention.
3.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y of a three-month period after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by the Member State which, being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on the date of adoption by the Council of the act drawing up this Convention, is the last to fulfil that formality.
4.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2, Europol shall not take up its activities under this Convention until the last of the acts provided for in Articles 5(7), 10(1), 24(7), 30(3), 31(1), 35(9), 37 and 41(1) and (2) enters into force.
5. When Europol takes up its activities, the activities of the Europol Drugs Unit under the joint action concerning the Europol Drugs Unit of 10 March 1995 shall come to an end. At the same time, all equipment financed from the Europol Drugs Unit joint budget, developed or produced by the Europol

Drugs Unit or placed at its disposal free of charge by the headquarters State for its permanent use, together with that Unit's entire archives and independently administered data files shall become the property of Europol.

6. Once the Council has adopted the act drawing up this Convention, Member States, acting either individually or in common, shall take all preparatory measures under their national law which are necessary for the commencement of Europol activities.

Article 46 Accession by new Member States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that become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2. The text of this Convention in the language of the acceding State, drawn up by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shall be authentic.
3.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4.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with respect to any State that accedes to i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expiry of a three-month period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accession or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if it has not already entered into force at the time of expiry of the said period.

Article 47 Depositary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shall act as depositary of this Convention.
2. The depositary shall publish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he notifications, instruments or communications concerning this Convention.

參 考 文 獻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경찰청, 『국제성 범죄수사』, 외사관리관실, 1996.
- _____, 『인터폴』, 경찰청 인터폴기획단, 1997.
- _____, 『경찰백서』, 1999.
- _____, 『'99INTERPOL 서울총회 보고서』, 경찰청 인터폴 서울총회 사무국, 1999. 12.
- _____, 『경찰백서』, 2001.
- 국가정보원,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1999. 2.
-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박영사, 1996.
- 김주덕, 『국제형법』, 도서출판 육서당, 1998.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0.
- 백진현·조균석,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이기현·임영철,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이병기·신의기, 『유럽의 형사사법공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이훈규·신의기, 『범죄인인도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이장희,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방안』, 치안연구소, 1997.

(2) 논 문

- 김석현, “국제법에 있어서 Soft Law”, 『국제법평론』, 1997-1(통권 제8호), 국제법출판사, 1997.
- 문규석, “국제환경법의 법원-Soft Law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12.
- _____, “인터폴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1999-II(통권 제12호), 삼우사, 2000. 2.

- _____,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연구(1) -인터폴을 중심으로-”, 『수사연구』, 2000. 10.
- _____,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연구(2) -인터폴을 중심으로-”, 『수사연구』, 2000. 11.
- _____,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국제보통범죄를 중심으로”, 『국제법협회논총』, 제9권, 2000. 12.
- _____, 국제법상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국제보통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1호(통권 제89호), 2001. 6
- 박한철,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 -독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중심으로-”, 『해외과건검사연구논문집』, 제6집(법무자료 제85집), 법무부, 1987.
- 백충현, “형사사건에 관한 국제사법공조”, 『현대국제법론』 (이한기 박사 화갑논문집), 박영사, 1978.
- 박희권, “국제관계에서의 신사협정”, 『고시계』, 1991. 9.
- 심희기,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실태”, 『수사연구』, 2000. 6.
- 조영준, “국외도피 형사범에 대한 검찰의 대처방안”, 『검찰』, 1995. 2.
- 최성호, “절실한 한국인터폴의 기능강화”, 『수사연구』, 1990. 1.

2. 외국문헌

(1) 단행본

- Anderson, M., *Poling the world: Interpol and Politic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Oxford : Clarendon Press, 1989).
- Anderson, M, and M. Den Boer(ed.), *Policing Across National Boundaries*(London & New York : Pinter Publishers, 1994).
- Anderson, M., M. Den Boer, P. Cullen, W. Gilmore, and N. Walker, *Policing the European Union*(Oxford : Clearendon press, 1995).
- Bantekas, I., S. Nash, and M. Mackarel, *International Criminal Law*(London · Sydney :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2001).
- Benyon, J, L. Turnbull, A. Wills, R. Woodward, and A. Beck,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An Investigation*(Leicester : University of Leicester Centre for the Study of Public order, 1995).

- Bresler, F., *Interpol*(London : Sinclair-Stevenson, 1992).
- Bunyan, T., *The Europol Convention*(London : A Statewatch publication, 1995).
- Fooner, M., *Interpol: Issues in World Crime an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New York & London : Plenum Press, 1989).
- Gilbert, G., *Aspects of Extradition Law*(Dordrecht/Boston/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 _____, *Transnational Fugitive Offenders in International Law: Extradition and Other Mechanisms*(The Hague/ Boston/ 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8).
- Grabosky, P., R. G. Smith, and G. Dempsey, *Electronic Theft: Unlawful Acquisition in Cyberspace*(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Harris, L., and C. Murray,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London, Sweet Maxwell, 2000).
- Hebenton B., and T. Thomas, *Policing Europe: Co-operation, Conflict and Control*(London : St. Martin's Press, 1995).
- Joubert, C., and H. Bevers, *Schengen Investigated: A Comparative Interpretation of the Schengen Provisions on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in the Light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The Hague · London · Boston :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 Koenig, D. J., and D. K. Das(ed.),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 World Perspective*(Lanham · Boulder · New York · Oxford : Lexington Books, 2001).
- Richards, J. R.,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Cybercrime, and Money Laundering*(New York : CRC Press, 1999).
- Sands, P., and Klein, P., *Bowett's Law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London: Sweet & Maxwell, 2001)
- Santiago, M., *Europol and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Criminology Studies, Vol. 11(Lewiston · Queenston · Lampeter : The Edwin Mellen Press, 200).

- Schermers., H. G., and N. M. Blokker,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3rd, ed., (The Hague/London/Boston : Martinus Nijhof Publishers, 1995).
- Sunga, L. S., *The Emerging system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Developments in Codification and Implementation*-(The Hague/London/Boston :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 Thomas, D., and B. D. Loader(ed.), *Cybercrime: Law Enforcement, Security and Surveillance in the Information Age*(London & New York : Routledge, 2000).
- Tullett, T., *Inside Interpol*(New York : Walker and Company, 1965).
- 山本草二, 『國際刑事法』, 三省堂, 1991.

(2) 논문

- Benyon, J., L. Turnbull, A. Wills, and R. Woodward, "Understanding police cooperation in Europe: setting a framework for analysis", in Anderson, M., & M. D. Boer(ed.), *Policing Across National Boundaries*(London & New York : Pinter Publishers, 1994).
- Benyon, J., "The Politics of Police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Vol. 24, No. 4, December 1996.
- Boer., M. D., "Police Cooperation in the TEU: Tiger in A Trojan Horse?", *Common Market Law Review*, Vol. 32, 1995
- Bresler, F., "Inside Story: Interpol and the Changing Face of International Policing",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 Das., D. K., and P. C. Kratcoski,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 World Perspective", in Koenig, D.l J., and D. K. Das(ed.),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 World Perspective*(Lanham · Boulder · New York · Oxford : Lexington Books, 2001).
- Fahlman, R. C., "Intelligence Led Policing and the Key Role of Criminal

- Intelligence Analysis: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 Fijnaut, C., "Policing Western Europe: Interpol, Trevi and Europol", *Police Studies: The International Review of Police Development*, Vol. 15, No. 3, Autumn 1992.
- Gregory, F. E. C., "Police Cooperation and Intergr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Proposal, Problems, and Prospects", *Terrorism: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4, No. 3, 1991.
- Mahmood, S.,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An Inequitable Data Protection Regime",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 7, No. 2, 1995, p. 184.
- Monaco, F. R., "Europol: The Culmination of the European Union's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Efforts",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9, No. 1, October 1995.
- Nevitt, P. J., "Information Sharing in the 21st Century –Can International Law Enforcers meet the Challenge?",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 Palmer, MJ, "Strategic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Policing",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 Sultan, J., "Combating the Illicit Art Trade in the European Union: Europol's Role in the Recovering Stolen Artwork",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Vol. 18, No. 3, 1998.
- Valleix, C., "Interpol",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Review*, Number 469/471, 1998.
- Voiskounsky, A. E., V., J. D. Babaeva, and O. V. Smyslova, "Attitudes towards computer hacking in Russia", in Thomas, D., and B. D. Loader(ed.), *Cybercrime: Law Enforcement, Security and Surveillance in the Information Age*(London & New York : Routledge, 2000).

Zein, S.I El., “Striving Towards Common Goals: Can European Organizations Works Together?”, *Interpol: 75 Years of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London : Kensington Publications Ltd, 1998).

3. 국제조약과 기타 국제문서

- 개인정보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이사회의 협약
- 경찰부분에서 개인정보 사용을 규율하는 1987년 9월 17일 유럽장관위원회의 권고
- 교통사범의 처벌에 관한 유럽협약
- 구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임시재판소 규정
- 국가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국제보통범죄에 관한 아세안선언
-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
- 국제형사재판소규정
- 국제형사판결의 유효성에 관한 유럽협약
- 대한민국 경찰청과 일본국 경찰청간의 경찰업무 협력에 관한 협의문
- 대한민국 경찰청과 러시아연방 내무부간의 협력에 관한 약정서
- 대한민국 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태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동남아시아에서 예방·협력의 조약

- 르완다국제형사임시재판소 규정
- 마약추방을 위한 아세안공동선언
- 미국과 이탈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범죄인인도조약에 관한 유럽협약
- 범죄자의 조건부 선고 또는 석방의 감독에 관한 유럽협약
- 베네룩스 3국간의 형사문제에 있어서 범죄인인도 및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
- 비정부간기구의 승인에 관한 유럽협약
-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
-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간의 범죄인인도 협약
- 세계인권선언
- Schengen acquis 유럽연합체제로의 통합에 관한 의정서
- 아·태경제협력체 사무국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싱가포르와 아·태경제협력체 간의 협정
- 암스테르담조약
- 영국과 독일의 경찰당국간에 형사문제 상호지원의 합의를 규율하는 교환각서
- 유럽공동체의 기구, 기관 및 유럽폴 소재지에 관한 의정서
- 유럽연합조약
- 유럽폴마약반설치에 관한 장관협정
- 유럽폴협약
-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인터폴간의 협력을 위한 특별약정
- 유엔과 인터폴간의 협력협정
- 유엔헌장
- 인터폴본부와 그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인터폴과 프랑스정부간의 협정
- 인터폴헌장 및 일반규정
- 1981년 1월 28일 개인자료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 보호에 관한 유럽이사회의 협약
- 1985년 셴겐협약
- 1990년 셴겐이행협약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캐나다와 프랑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역에서 경찰간의 협력에 관한 프랑스와 독일간의 협정

-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 형사소추이송에 관한 유럽협약

4. 유럽연합 관련 Official Journal

- OJ C 323, 30/11/1993, pp. 1-5.
- OJ C 299, 09/10/1996, pp. 2-4.
- OJ C 299, 09/10/1996, pp. 2-14.
- OJ C 221, 19/07/1997, p. 2.
- OJ C 025, 30/01/1999, pp. 1-16.
- OJ C 026, 30/01/1999, pp. 19-20.
- OJ C 026, 30/01/1999, pp. 23-81.
- OJ C 026, 30/01/1999, pp. 82-85
- OJ C 026, 30/01/1999, pp. 86-88
- OJ C 196, 13/07/1999, pp. 1-12.
- OJ C 106, 13/04/2000, pp. 1-2.
- OJ C 106, 13/04/2000, p. 3.
- OJ C 289, 12/10/2000, p. 8.
- OJ C 357, 13/12/2000, pp. 7-8.
- OJ C 358, 13/12/2000, pp. 2-7.
- OJ L 268, 19/10/1996, pp. 2-4.
- OJ L 131, 01/06/2000, pp. 43-47.
- OJ L 239, 22/09/2000, p. 407.
- OJ L 239, 22/09/2000, pp. 409-410.
- OJ L 239, 22/09/2000, pp. 411-416.
- OJ L 239, 22/09/2000, pp. 421-423.
- OJ L 239, 22/09/2000, p. 459.
- OJ L 271, 24/10/2000, pp. 1-3.
- OJ L 309, 09/12/2000, pp. 24-28

5. 인터폴 총회 및 UN총회 결의

Resolution No AGN/53/Res/6

Resolution No AGN/53/Res/7

Resolution No AGN/63/Res/9

Resolution No AGN/65/Res/11

Resolution No AGN/66/Res/7

Resolution No AGN/66/Res/10

Resolution No AGN/68/Res/5

Resolution No AGN/69/Res/11

Resolution No AG-2001-Res-02

UN 총회 A/Res/51/1

6. Website

<http://www.apecsec.org.sg/>

<http://www.asean.or.id/>

<http://www.cm.coe.int/>

<http://www.coe.int/>

<http://www.europol.eu.int/>

<http://icic.sppo.go.kr/>

<http://www.ili.co.uk/>

<http://www.interpol.int/>

<http://www.lawtel.co.uk/>

<http://www.lexis.com>

<http://www.mofat.go.kr>

<http://www.oecd.org/fatf>

<http://www.un.org/documents>

<http://www.un.org/English/treaty.asp>

<http://www.un.org/icc>

<http://www.un.org/icty>

<http://www.westlaw.com>

저자 약력

광주대동고, 외대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박사학위(국제법) 취득,
University of Washington 수학,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수료,
Lauterpacht Research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Cambridge 수학,

현재 :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외대강사,

주요 논문 :

국제법상 국제범죄자에 대한 집행력행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비교에 관한 연구,
ICTY에서 유고연방대통령에 대한 형벌의 집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제범죄 개념의 이론론적 분류에 관한 연구,
국제법상 인터폴의 지위에 관한 연구,
국제경찰협력에 관한 연구,
남북한 형사사건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국제법상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1-10

警察의 地域間 協力 및 아테폴 創設을 위한 基盤 造成 方案

2001년 12월 발행

2001년 12월 인쇄

발행인 : 이 근 표
발행처 : 치 안 연 구 소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연남리 88번지
인쇄처 : 대 한 문 화 사
(TEL : (02)2268-0458)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